

2008년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안)

2008.1

대한민국정부

# I. 변경되는 주요제도

## 1. 세제·금융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 선택 적용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3.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
4.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및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6.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7. 출산·입양 소득공제제도 신설
8.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
9.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강화
10. 경차 범위 확대
11. 등유세율 인하
12.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 시행
13. 소비자단체소송 진행

14.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확정
15.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16. 해외부동산 취득 절차규제 완화
17. 외환송금시 제출서류 간소화
18. 해외유학생 경비 사용절차 및 송금절차 개선
19. 해외이주비 송금절차 개선
20. 신BIS제도(Basel II) 시행
21. 연결공시제도의 시행
22. 전자금융거래 시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23. 채권 장외 호가집중 제도 시행
24. 채권 장외거래내역 공시제도 강화 시행

## 2. 산업·에너지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 천일염 식용제도 시행

3. 등유 및 부생연료유에 대한 판매부과금 폐지
4. 온라인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 구축·운영
5.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추진
6.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7.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제도 개선
8.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 간소화
9. 등록료 인하 및 감면대상 확대

### 3. 농림·해양

1. 농업경영체등록제 실시
2. 동물등록제,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제 등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3. 산지규제의 정확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국민에게 제공
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5.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공표명령제 도입
6. 수산물 이력제 도입 시행
7. 선외기 설치 소형선박의 등록제도 도입 시행

### 4. 교육

1.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 가능
2. 민간자격 등록제 시행
3.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 시행
4.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확대·강화

### 5. 보건·복지

1. 기준소득율액제도 시행
2.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제도 시행
3. 국민연금 급여율의 점진적 하향조정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제도 개편 시행
6.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7.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8.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확대 실시
9.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10.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
11.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관리 강화
12. 위생규격 중심으로 식품공전 개편

13.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품목허가 분리

14. 의약품 안전관리 책임자제도 도입

5.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6. 육아휴직제도 개선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 6. 환경

1. 국제기준(GHS)에 따른 새로운 화학물질 분류·표시제 시행
2. 경유차에 대한 EURO-4 배출허용기준 확대 시행
3.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및 포름알데히드 기준강화
4. 주유소 주유시설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5. 수질 원격감시체계(TMS:Tele-Monitoring System)제도 시행
6.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물놀이 등 행위제한
7.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통합·시행
8.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시행
9. 알칼리망간전지 등 전지류 분리수거 실시

## 7. 노동

1.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2. '08년 최저임금
3.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4.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

## 8. 건설·교통

1. “주택성능등급표시 대상”을 ‘1,000세대 이상으로 확대
2. 6층 이상 공동주택에 실내소음도 측정기준 마련
3. 주상복합건축물(150세대 이상)도 주택법에 의한 관리 시행
4. 주택청약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의 거주기간 요건”을 ‘1년 이상으로 개선
5.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
6.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의 규격 확대

## 9. 중소기업

1.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사업 시행
2. 개성공단 진출기업 지원사업 시행
3.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제도 시행
4.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5.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 6. 장애인기업 온라인 홍보관 운영

## 10. 행정·법무

1.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2. 개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3. 인터넷 본인 확인제 본격 시행
4. 「110」 서비스 시행
5. 불량품 신고센터 운영
6. 국민참여재판 제도 시행
7.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시행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시행
9.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시행
10. 전산정보처리를 통한 상업등기 업무 수행
11. 전자선하증권(e-B/L) 제도 시행
12. 외국인근로자 거주자격 취득 가능
13. 「소년법」 개정법률안 시행
14. 특정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제도 도입 시행

## 11. 국방·병무·보훈

1. 현역병등의 복무기간 연차적 단축
2. 유급지원병제 도입 시행
3. 군 전염병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4. 군 응급환자 지원센터 운영
5. 국립이천호국원 개원
6. 독립기념관 관람료 무료화 시행
7. 고엽제환자 지원 강화
8. 전직지원금 제도 시행
9.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본인의 질병명에 대한 비공개요청제도 마련
10. 해·공군병 모집일원화 시행

## II. 부처별 제도 및 법규 신·구 대비표

- |            |               |
|------------|---------------|
| 1. 재정경제부   | 15. 건설교통부     |
| 2. 교육인적자원부 | 16. 해양수산부     |
| 3. 과학기술부   | 17. 국가보훈처     |
| 4. 법무부     | 1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 5. 국방부     | 19. 금융감독위원회   |
| 6. 행정자치부   | 20. 국가청소년위원회  |
| 7. 문화관광부   | 21. 조달청       |
| 8. 농림부     | 22. 기상청       |
| 9. 산업자원부   | 23. 병무청       |
| 10. 정보통신부  | 24. 산림청       |
| 11. 보건복지부  | 25. 중소기업청     |
| 12. 환경부    | 26. 특허청       |
| 13. 노동부    | 27. 식품의약품안전청  |
| 14. 여성가족부  |               |

# I . 변경되는 주요제도

## ① 세제·금융

###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 선택 적용(국회심의중)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 02-2150-9131)

- '08년 1월 1일부터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액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의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일부 보완되어 시행될 예정이므로 대기업의 경우에도 증가분방식<sup>1)</sup>과 당기분방식<sup>2)</sup>에 따라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증가분방식 : [당해연도 지출한 R&D비용 - 직전 4년간 지출한 R&D 비용의 평균액] × 40%(대학등에 위탁비용은 50%)를 공제하는 방식

2) 당기분방식 : 당해연도 지출한 R&D비용 × 최대 6%(3% + 매출액 대비 R&D 비율의 1/2)를 공제하는 방식

- 대기업에 대해서도 R&D비용 세액공제시 당기분방식을 도입하여 R&D투자가 둔화되거나 정체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으므로 기업의 R&D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국회심의중)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 02-2150-9132)

- '08년 1월부터 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 세액감면을 통해 사회적기업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장애인·노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보육·보건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는 2010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운영성과를 보면서 지속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3.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국회심의중)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 02-2150-9142)

- 현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성실사업자의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도 허용하여 과표양 성화에 따른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의료비와 교육비를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POS·ERP 도입사업자
- 복식장부를 비치·기장 및 신고
- 사업용계좌를 개설 및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2/3 이상을 사용할 것
-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보다 10%를 초과하여 신고할 것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교부 및 수취의무위반 등의 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성실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2009년까지 시행하고 시행성과를 보아 제도를 항구화

하거나 공제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4.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및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국회심의중)**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 02-2150-9142)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기부금으로 지급하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15%(2010년 부터는 20%)로 확대됩니다.
-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를 유지합니다.
-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현행 제도를 20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이 지출한 금액도 거주자가 기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의 확대는 양성평등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와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 기부의 중요성을 교육 시킨다는 의미를 감안한 것입니다.

## 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국회심의중)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 소득세제과

(☎ 02-2150-9141)

- '08년 1월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각 구간별로 최고 20%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 현 행                 |     | 변 경                 |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1,000만원이하           | 8%  | 1,200만원이하           | 8%  |
| 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 | 17% |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 17% |
| 4,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 | 26% |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 26% |
| 8,000만원초과           | 35% | 8,800만원초과           | 35% |

- \* 최저구간은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조정  
(20%-15%-10%)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 6.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국회심의중)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 소득세제과

(☎ 02-2150-9141)

- '08년 1월부터 방과후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 등도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학교급식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로 자녀교육비 부담이 감소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제도도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7. 출산·입양 소득공제제도

신설(국회심의중)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 소득세제과

(☎ 02-2150-9141)

- 2008.1.1일부터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경우 출생·입양한 당해연도에 한하여 해당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동 제도는 근로자와 자영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동 제도 시행으로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연도에 자녀육아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동제도 신설로 자녀의 출산 또는 입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8.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국회심의중)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제국 재산세제과

(☎ 02-2150-9212)

-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현재 3억원인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액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9.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강화(국회심의중)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제국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9233)

- '08년 1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방안이 시행되면 면세유 부정유통 규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어민이 면세유를 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현재 감면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 40%로 인상하고, 면세유 공급중단 사유에 농기계를 허위신고 한 경우를 추가하며, 공급중단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였습니다.
- 주유소 등이 면세유 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매집하는 경우에 가산세율을 현재 10%에서 40%로 인상하고, 부정유통에 개입한 주유소 등은 향후 3년간 면세유 취급이 정지됩니다.
- 농·수협이 고의로 면세유류구입권을 잘못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현재 10%에서 40%로 인상하고, 기타 관리부실의 경우에는 20%로 인상되어 앞으로는 면세유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 10. 경차 범위 확대(국회심의중)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제국 소비세제과  
(☎ 02-2150-9242)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배기량 800시시 이하에서 1,000시시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경차 이용이 활성화되어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1. 등유세율 인하(국회심의중)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제국 소비세제과  
(☎ 02-2150-9243)

- 농어촌 및 서민 난방용 유류인 등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2.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 시행

재정경제부 근로장려세제추진기획단  
(☎ 02-2150-9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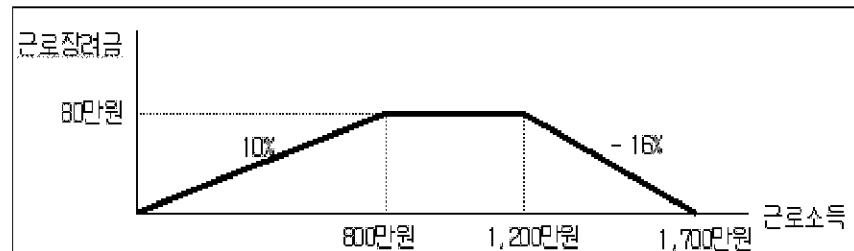
- '08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일한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세제도를 이용한 새로운 복지제도입니다.
- 첫번째 근로장려금은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09년 5월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09년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 ▶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
- ▶ 당해연도 가구(부부)의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
- ▶ 무주택이고,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

- 연간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 800만원 미만 → 근로소득 × 10%
- 800~1,200만원 → 80만원
- 1,200~1,700만원 →  $(1,700\text{만원} - \text{근로소득}) \times 16\%$

## 13. 소비자단체소송 시행(국회심의중)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소비자정책과

(☎ 02-2150-2161)

- '08.1.1일부터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위법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이 실시됩니다.
- 종전 소액다수 피해의 경우의 소비자가 소를 제기할 실익이 적고, 사업자에 비해 제품이나 소송 절차에 대한 지식이 적어 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 소비자단체소송의 도입으로 개별 소비자에 비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단체가 피해소비자들을 대신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법행위 중지·예방, 품질·안전성 향상, 리콜 활성화 등 공정

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 소비자단체소송 개요 >

- 개념 : 법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위법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
- 소제기 가능 단체
  - ① 소비자단체 : 정관의 주된 목적이 소비자의 권익 증진이고 회원수가 1천명이 넘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후 3년이 지난 단체
  - ② 사업자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무역협회
  - ③ 비영리민간단체 :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고, 정관에 소비자의 권리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으며,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이며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 단체소송의 대상
  - ① 위해방지 기준을 위반한 경우(소비자기본법 제8조)
  - ②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소비자기본법 제10조)
  - ③ 광고기준을 위반한 경우(소비자기본법 제11조)
  - ④ 지정·고시된 위반행위를 한 경우(소비자기본법 제12조)
  - ⑤ 개인정보보호기준을 위반한 경우(소비자기본법 제15조)

## 14.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확정(07.8.17)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총괄팀  
(☎ 02-2150-9933)

- 경제자유구역 출범이후 지난 4년간 제도구축·기반시설 조성에 주력하였다면 현재는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단계에서 본격적 외자유치단계로 진입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07.8.17 제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R&D업종을 추가하는 등 조세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략적 유치가 필요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하여 인센티브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세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외국대학이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토지·건물의 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등 초기 운영비를 최장 5년까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특별공급주택 대상자를 국제기구 종사자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활용, 입주자격·임대보증금·임대료 등의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 15.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중소서민금융과  
(☎ 02-2150-9651)

- '08년 1/4분기에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저소득층 창업·취업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 등 복지사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휴면예금관리재단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휴면 예금을 자율적으로 출연받아 마이크로크레딧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지난 8.3일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08.2.4일 시행)됨으로써 법률상 설립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재단이 지원하는 복지사업은 저소득층 창업·취업 지원, 교육·의료비 지원, 신용회복 지원, 보험계약 체결 지원 등이며(아래 참조), 보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 휴면예금관리재단법상 복지사업의 개요 >**

- 저소득층의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저소득층의 교육비 또는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등

## 16. 해외부동산 취득 절차규제 완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

(☎ 02-2150-2541)

- '07.12월부터 해외부동산 취득이 용이해질 예정입니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부동산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에는 신고위반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이 불가하였으나, 미화 1만불 이내에서는 신고 전 지급을 허용하여 적법한 해외부동산 취득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 \* 이 경우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정식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또한, 계약 성사 이전에도 예비신고 후, 청약금 등을 매입예정액 10% 이내(최대 10만불)에서 사전송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와 아울러 '08년 중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현재 미화 3백만불)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 17. 외환송금시 제출서류 간소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

(☎ 02-2150-2541)

- '08.1.1일부터 은행에서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그간 거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연간 5만 불 범위 내에서(건당 1천불 이상만 합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한편, '07.12월부터는 전년도 5천만불 이상 수출입 기업의 무역대금 송금시에 서류제출 없이도 무역대금을 지급·영수할 수 있도록 하

고 온라인 자료 거래증빙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 18. 해외유학생 경비 사용절차 및 송금절차 개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

(☎ 02-2150-2541)

- 해외유학생·체재자의 현지경비 송금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택사항으로 “유학생 계좌”를 통한 자율적인 송금절차를 마련해 두고는 있었으나,
- 동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경로로 국내자금을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국내 예금계좌와 연결된 신용·현금카드 등의 사용도 제한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유학생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내 신용·현금카드의 사용

을 합법화함으로써 유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 또한, 외국국적 자녀의 경우 제도상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한 “해외 유학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 금번 개정으로 외국국적의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유학생”으로 간주하여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19. 해외이주비 송금절차 개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

(☎ 02-2150-2541)

- 해외이주시 외교부에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하나,

- 실질적으로 이주에 해당되지만 이주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거나\* 이주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해외이주비 지급절차를 적용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은퇴비자, 투자비자 등을 발급받아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 그러나 금번 개정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사후에 이주확인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외이주비 송금절차를 준용하여 미리 송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 신BIS제도 (Basel II) 시행

금융감독원 신BIS실 (☎ 02-3786-8216)

- ’08년 1월부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를 새롭게 개편하여 은행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신BIS제도(Basel II)”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신BIS제도의 시행으로 은행의 영업특성과 리스크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된 은행 자기자본비율의 산정이 가능해지고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은행고객에 대해 종전보다 정교한 모형에 의해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신용등급이 해당 고객의 대출금리, 한도 등 대출조건 결정 시 주요 요소로 적용되어 신용도에 따른 금리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신BIS제도의 주요 특징 >

-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자본요구량을 차등 적용
- 리스크 관리수준이 높은 은행에 대해 내부모형에 의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허용
- 담보,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과 같은 신용위험경감 수단의 인정 범위를 확대
- 자산유동화를 이용한 자본회피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 미사용한도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규제 강화
- 운영리스크, 신용편중리스크, 유동성리스크, 금리리스크 등 관리대상 리스크의 확대
- 은행의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 관리 현황에 대한 시장공시 강화

## 21. 연결공시제도의 시행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기업공시총괄팀  
(☎ 02-3786-8426)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08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시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를 연결재무제표(감사인의 감사의견 포함) 기준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당해 법인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도 함께 제출
- 자산 2조원 미만인 상장법인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개별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후 90일이내에 제출하고,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은 동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2. 전자금융거래 시 보안등급별

### 이체한도 차등화

금감위 복합금융감독과(☎ 02-3771-5172) /  
금감원 복합금융감독실  
IT감독팀(☎ 02-3786-7158)

- '08년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의 전자금융거래 시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 할 예정입니다.
- 보안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차등화 폭은 이용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2등급은 현행(1등급)대비 40~50%, 3등급의 경우 10%(텔레뱅킹 개인은 20%)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 다만, 인터넷뱅킹의 이체규모가 크고 거래가 많은 법인은 1등급 보안 수준 의무화를 전제로 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참고1> 거래이용수단별 보안등급

| 거래이용수단                       | 보 안 등 급 |
|------------------------------|---------|
| OTP발생기+공인인증서                 |         |
| HSM 방식 공인인증서 + 보안카드          | 1 등 급   |
| 보안카드 + 공인인증서 + 2 channel 인증* |         |
| 보안카드 + 휴대폰SMS(거래내역통보)        | 2 등 급   |
| 보안카드                         | 3 등 급   |

\* 2 channel 인증 : 두개의 서로 다른 통신경로(예, 인터넷과 전화, 전화와 FAX)를 이용하여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

<참고2> 전자금융업무별 이체한도

| 구 분       |    | 이체한<br>도 | 현<br>행 | 개정 후  |     |     |
|-----------|----|----------|--------|-------|-----|-----|
|           |    |          |        | 보안 등급 | 1등급 | 2등급 |
| 인터넷<br>뱅킹 | 개인 | 1회       | 10     | 10    | 5   | 1   |
|           | 개인 | 1일       | 50     | 50    | 25  | 5   |
|           | 법인 | 1회       | 50     | 50    |     |     |
|           | 법인 | 1일       | 500    | 500   |     |     |
| 텔레<br>뱅킹  | 개인 | 1회       | 5      | 5     | 2   | 1   |
|           | 개인 | 1일       | 25     | 25    | 10  | 5   |
|           | 법인 | 1회       | 10     | 10    | 2   | 1   |
|           | 법인 | 1일       | 50     | 50    | 10  | 5   |

## 23. 채권 장외 호가집중 제도 시행

한국증권업협회 채권부 (☎ 02-2003-9206)

- '07년 12월부터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채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한 호가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 증권회사 등(은행, 종금 포함)과 채권매매전문 중개회사(IDB)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거래에 대한 호가정보를 협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채권정보센터 ([www.ksdabond.or.kr](http://www.ksdabond.or.kr))와 민간 정보벤더회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시하게 됩니다.
- 호가집중 제도의 시행으로 장외거래의 모든 호가가 집중·공시됨에 따라 가격발견기능이 증대되어 장외시장의 투명성 및 유동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정하게 형성된 시장금리가 채권발행의 기준

금리로 활용되어 발행시장에서의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채권장외호가가 실시간으로 공시됨에 따라 신규 참여자들 및 외국인들의 시장진입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채권 장외호가집중시스템 개요 >

- 접속방법 : 채권정보센터([www.ksdabond.or.kr](http://www.ksdabond.or.kr))에 접속하여 채권호가정보 클릭
- 공시대상 주요 내용
  - ① 채권장외거래호가 : 채권 종목별 시세, 채권 종류별 호가, 종목 현재가 등
  - ② 채권전문딜러호가 : 채권전문딜러호가, 전문딜러호가/체결 등
  - ③ 소액채권체결정보 : 소액채권 현재가, 건별 체결 추이, 종목별 체결 현황 등

## 24. 채권 장외거래내역 공시제도 강화 시행

한국증권업협회 채권부 (☎ 02-2003-9205)

- '07년 12월부터는 채권 장외거래내역 공시제도를 강화하여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한 거래내역을 15분 이내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증권회사 등(은행, 종금 포함)과 채권매매전문 중개회사(IDB)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거래에 대한 거래내역을 매매체결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채권정보센터([www.ksdabond.or.kr](http://www.ksdabond.or.kr))와 민간 정보벤더회사를 통해 즉시 공시하게 됩니다.
- 채권 장외거래내역 공시제도의 강화 시행으로 모든 채권 장외거래 내역이 준실시간으로 공시됨에 따라 장외시장의 사후적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채권 장외거래내역이 준실시간(15분 이내)으로 공시됨에 따라 채권 시세와 거래 상황 파악이 용이해져 채권 유통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채권 장외거래내역 공시제도 개요 >

- 접속방법 : 채권정보센터([www.ksdabond.or.kr](http://www.ksdabond.or.kr))에 접속하여 실시간체결정보 클릭
- 공시대상 주요 내용 : 장외에서 매매체결되는 모든 채권의 거래 내역
  - ① 채권종목
  - ② 수익률
  - ③ 단가
  - ④ 수량
  - ⑤ 매수매도 구분
  - ⑥ 매매성격

## 2 산업·에너지

###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산업자원부 미래생활산업본부 바이오나노팀

(☎ 02-2110-5664)

□ '08년 1월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표시 및 취급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란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기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함

\* 관계중앙행정기관 : 산업자원부(산업용), 과학기술부(시험연구용), 농림부(농업용, 임업용, 축산업용), 보건복지부(보건의료용), 환경부(환경정화용), 해양수산

부(해양용, 수산용)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시행령 별표1의 1~2 등급 연구시설의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3~4 등급 연구시설 중 환경위해성 연구시설의 경우는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인체위해성 연구시설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 천일염 식용제도 시행

산업자원부 미래생활산업본부 바이오나노팀  
(☎ 02-2110-7816)

- '08년 3월부터 염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공전 개정을 통해 천일염의 식용이 허용됩니다.
- 그간 식용이 금지되던 천일염의 식품기준을 마련하여 식용과 비식용으로 구분되며, 식용 천일염의 경우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체계적인 식품관리가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 천일염 개발 및 다양한 식품산업으로의 진출 등을 통해 천일염 산업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식용이 아닌 비식용(공업용) 천일염의 경우 현행과 같이 염관리법에서 계속 관리됩니다.

## 3. 등유 및 부생연료유에 대한

판매부과금 폐지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본부 석유산업팀  
(☎ 02-2110-5457)

- '08년 1월부터 등유 및 부생연료유 판매시 부과되는 판매부과금(등유 23원/ℓ, 부생연료유 17원/ℓ)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 등유 및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 폐지를 통해 소비자 가격 안정 및 고유가 시대에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판매부과금 개요 >

- 부과목적 :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 부과대상 및 금액 (석유정제업자, 수출입업자, 판매업자가 납부)
  - ① 등유 : 23원/ℓ
  - ② 고급휘발유 : 36원/ℓ
  - ③ 부탄 : 24.242원/kg
  - ④ 부생연료유 : 17원/ℓ

#### 4. 온라인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

##### 구축·운영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원자력통제팀

(☎ 02-2110-3697)

- '08년 1월부터 핵물질 및 원자력전용품목에 대한 수출입의 통제관리를 위해 구축된 온라인 원자력 수출입통제시스템([www.NEPS.go.kr](http://www.NEPS.go.kr))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이 구축·운영 됨으로써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원자력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사전판정), 수출입 허가(승인), 보고 등의 업무를 온라인 상에서 One-Stop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또한 관세청과의 실시간 수출입 정보 연계를 통해 불법 수출사례 방지 등 수출입통제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기업의 피해사례를 예방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나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 동 온라인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수출입 기업 등 사용자들의 편의성 및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 5.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추진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 원천기술개발과

(☎ 02-509-7753)

- '08.4월부터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NT, BT, IT 등 이종신기술간 결합을 통한 융합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High-Risk, High-Return형 미래유망 융합기술 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향후 10~15년 이내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30개 이상의 원천융합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건강, 안전, 에너지·환경 문제 등 미래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과학기술부는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고, 신진연구원의 50% 이상 참여 의무화, 성실실패 제도 도입 등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창조형·선도형 연구개발 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융합기술 개발에 필요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개요 및 특징 >

##### □ 사업개요

- 총 사업기간/총 연구비 : 2008~2020(12년) / 2,450억 원  
- 연구과제(1+3+3년) : 10억 원 내외/년

| 구 분      | '07 | '08  | '09   | '10   | '11   | '12   | '13~[후] | 합 계   |
|----------|-----|------|-------|-------|-------|-------|---------|-------|
| 연구단수(누적) | -   | 7(7) | 3(10) | 3(13) | 3(16) | 3(19) | 9(28)   | (28)  |
| 소요예산(억원) | -   | 100  | 150   | 200   | 250   | 300   | 1,450   | 2,450 |

##### □ 사업특징

- 연구자 스스로 연구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도록 선행기획연구 기회 제공
- 국내외 선행특허를 조사하여 특허맵을 작성하고 개발할 신기술에 대한 원천특허포트폴리오 제시
-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국가전략, 기술의 가치, 경제성 및 산업체의 수요자 관점에서 국가R&D전략 컨설팅 실시
- High-risk, High-return형 연구에 맞는 진취적 연구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실실패 인정
- 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진연구원의 50% 이상 참여 의무화

## 6.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통신이용제도팀 (☎ 02-750-1351)

- '08년 상반기부터는 시내전화를 사용하다가 인터넷전화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번호의 변경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현재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해지하고 인터넷전화번호(070)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하지만,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도 시내·외 구분 없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익이 높아지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 개요 >

#### □ 도입범위

-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번호이동과 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
  - ※ 단, 인터넷전화번호를 가지고 시내전화로 번호이동하는 경우 제외하며, 번호이동시에도 시내전화 통화권은 유지해야 함

#### □ 번호이동대상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

#### □ 도입시기

- '07년 하반기 지방대도시 위주로 시범서비스 실시 후 '08년 상반기 상용서비스

## 7.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제도 개선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기획단 전파방송정책팀

(☎ 02-750-2417)

- 현재 연초에만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전파 사용료 일시납부 제도를 '08. 1월부터는 연중 신청 ·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 전파사용료는 무선국 시설자에게 매분기 부과 · 징수하는 것으로, 당해년도의 전파사용료를 연초에 일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납부자가 일시납부를 하기 위하여는 1/4분기의 징수기간 중에만 신청해야 하고, 당해연도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토록 하고 있습니다.

- 기존의 일시납부 제도는 1/4분기 징수기간 중 신청분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어 이후 신청자 및 무선국 개설자에게는 다음연도부터 적용되므로 납부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 적용시기를 1/4분기로만 제한하던 것을 연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1년간의 전파사용료를 일시납부(10%를 감면)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의 연중 신청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납업무와 고객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전파사용료 :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관리비용의 충당과 전파 진흥을 위하여 부과하는 사용료

## 8.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 간소화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개인정보보호팀

(☎ 02-750-1273)

- '08년 7월부터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허가와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그동안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겸업하고자 할 경우 허가와 별도로 관할 체신청에 사업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 그러나 법 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시 위치기반서비스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허가와 신고 업무를 동시에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

#### □ 위치정보사업자 : 허가 대상

- ①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
- ② 허가 신청 서류 :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주주명부(설립법인의 경우에 한함)

#### □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 신고 대상

- ①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② 신고 서류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및 설치장소 확인 서류,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중명서류

## 9. 등록료 인하 및 감면대상 확대

특허청 고객서비스본부 고객서비스팀

(☎ 042-481-5255)

- '08년 1월부터 특허 및 실용신안의 제9년차 이내의 등록료를 11% 인하하고, 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특수임무수행자에게도 출원료 및 최초 3년분 등록료 등을 전액 면제 할 예정입니다.

-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료 등의 인하로 인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 권리자의 등록료 부담이 덜어지므로 권리자의 초기 사업화에 도움을 주고, 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특수임무수행자의 특허출원 관련 비용이 면제되므로 이들의 발명을 보호·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료 인하 내용 : 별표1,2 참조

[별표 1] 특 허 료 (제2조제2항제1호관련)

| 특허권설정등록일<br>부터의 연수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년 내지 제3년         | 매년 2만7천원에 청구<br>범위의 1항마다 1만8<br>천원을 가산한 금액 | 매년 1만7천원에 청구<br>범위의 1항마다 4천원<br>을 가산한 금액    |
| 제4년 내지 제6년         | 매년 6만원에 청구범<br>위의 1항마다 2만5천<br>원을 가산한 금액   | 매년 5만1천원에 청구<br>범위의 1항마다 2만3<br>천원을 가산한 금액  |
| 제7년 내지 제9년         | 매년 12만원에 청구범<br>위의 1항마다 4만원을<br>가산한 금액     | 매년 11만4천원에 청<br>구범위의 1항마다 3만<br>8천원을 가산한 금액 |
| 제10년 내지 제12년       | 매년 24만원에 청구범<br>위의 1항마다 5만5천<br>원을 가산한 금액  | 변동 없음                                       |
| 제13년 내지 제25년       | 매년 36만원에 청구범<br>위의 1항마다 5만5천<br>원을 가산한 금액  | 변동 없음                                       |

[별표 2] 실용신안등록료 (제3조제2항제1호관련)

| 실용신안권설정등<br>록일부터의 연수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년 내지 제3년           | 매년 2만원에 청구범<br>위의 1㏊마다 5천원을<br>가산한 금액    | 매년 1만7천원에<br>청구범위의 1㏊마다<br>4천원을 가산한<br>금액    |
| 제4년 내지 제6년           | 매년 4만원에 청구범<br>위의 1㏊마다 1만원을<br>가산한 금액    | 매년 3만6천원에<br>청구범위의 1㏊마다<br>9천원을 가산한<br>금액    |
| 제7년 내지 제9년           | 매년 8만원에 청구범<br>위의 1㏊마다 1만5천<br>원을 가산한 금액 | 매년 7만6천원에<br>청구범위의 1㏊마다<br>1만4천원을 가<br>산한 금액 |
| 제10년 내지 제12년         | 매년 16만원에 청구범<br>위의 1㏊마다 2만원을<br>가산한 금액   | 변동 없음  |
| 제13년 내지 제15년         | 매년 24만원에 청구범<br>위의 1㏊마다 2만원을<br>가산한 금액   | 변동 없음  |

### ③ 농림·해양

#### 1. 농업경영체등록제 실시

농림부 농업정책국 소득지원팀 (☎ 02-500-2116)

-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가별로 농지이용정보, 축  
산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농가를 하나  
의 경영체로 식별·관리하는 제도로 '07년 시범  
사업을 통해 제도보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  
여 '08년도부터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등록제를 통해 경영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농림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등록된 정보를 직불제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한편 추후 모든 농림사업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등록제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2. 동물등록제,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 등록제 등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농림부 축산정책국 가축방역과

(☎ 02-500-1933)

- 국민소득 수준 상승에 따른 반려동물 사육 증가에 대응하여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08.1.27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등록제(대상 : 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제 도입과 동물학대 방지 및 실험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은 ‘83.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에서 “애완동물” 대신 사용하기로 제안,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

### □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동물학대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2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동물보호에 관한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시장·군수가 등록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반려목

- 적으로 기르는 개가 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인식표를 부착시키도록 하였습니다.
- 반려동물 동반 외출시 인식표 부착, 안전장구 휴대 등 소유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시·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특정지역에서의 사육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 동물 운송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동물 운송시 적합한 사료를 공급하고, 상해를 방지하여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차량의 사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보호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 등 동물실험 시설에는 동물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동물실험은 억제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유기동물 발생 억제와 건전한 거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제를 실시하고, 14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물을 판매하도록 하는 등 동물판매업자·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지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 농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보호 감시관과 명예 감시관 위촉을 통해 민간 전문가 등의 동물학대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3. 산지규제의 정확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국민에게 제공

산림청 산지보전단 산지정책팀  
(☎ 042-481-4145)

- 1/25,000 축척의 지형도면 또는 필지별 내역으로 관리되고 있던 6개의 법령에 의한 16개의 산지규제 정보를 지적이 표시된 1/5,000 축척의 지형도면으로 전산화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또한 자료의 관리와 정비 시점 차이로 인하여 실제의 토지이용계획과 일치하지 않던 산지규제 정보는 산지관리정보시스템(FMIS)에서 실시간으로 정비한 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과 연계하여 온라인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청 산지부서에 산지의 정확한 필지별 규

제상태를 파악하고자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자기가 소유한 토지의 규제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해양수산부 해양정책본부 해양정책팀

(☎ 02-3674-6513)

- 내년 2월부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8620호, 시행일 2008.2.4)이 시행됩니다.
- 이 법률은 약 2,670여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체계가 환경부, 문화재청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 무인도서에 대한 보전·개발을 균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 전체 무인도서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용도지역제(zoning mechanism)” 등의 정책 수단 도입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 5.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공표명령제 도입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유통정책과  
(☎ 02-3674-6831)

- 수산물 수입 증가 등 식품환경 변화와 식품위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08년 1월부터 원산지표시 위반자에게 공표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 공표명령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표시위반물량 10톤 이상,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 5억이상(가공품 10억이상) 및 적발 전일 최근 1년동안 처분받은 횟수가 2회 이상 위반자에게 업체명, 업주명, 주소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주요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는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 장치로 작용하여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6. 수산물 이력제 도입 시행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  
(☎ 02-3674-6921)

-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가공되는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최종 수산물에 일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 해당 수산물의 정보를 역으로 추적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물이력제가 '08. 8월부터 시행됩니다.

- 소비자는 국내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김, 미역, 굴, 뱀장어, 넙치, 다시마, 갈치, 옥돔, 고등어, 삼치, 건오징어 등의 수산물이력제 상품에 대하여 매장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직접 생산·가공·유통 등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도 인터넷 ([www.fishtrace.go.kr](http://www.fishtrac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는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이력수산물 생산자는 차별화를 통해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7. 선외기 설치 소형선박의 등록제도 도입 시행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해사안전정책팀  
(☎ 02-3674-6314)

- 선박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관을 선체 밖에 설치한 선박(일명 선외기 모터보트)과 추진기관을 설치한 총톤수 5톤미만 범선 등 소형선박에 대해 인명안전 및 질서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내년 2월 4일부터 선박등록 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됩니다.
- 선박등록제도 도입으로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소형선박 저당법 적용으로 보험가입 등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4 교육

### 1.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 가능

교육인적자원부 평생직업교육지원국

전문대학정책과 (☎ 02-2100-6460)

- 2008학년도부터 전국 66개 전문대학 242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이는 2007년 7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2008학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과는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해짐에 따른 것입니다.

-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은 '전공심화과정과 동일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유관 분야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로,

- 학사학위는 전문대학 졸업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으며, 2년제 학과의 경우 2년, 3년제 학과는 1년 이상의 수업연한을 채우면 됩니다.

- 이 제도의 시행으로 학사학위 취득을 원하는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4년제 대학 편입 외에 전문대학에 개설된 전공심화과정 입학이라는 또 다른 기회를 갖게 되어 교육선택권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 2. 민간자격 등록제 시행

교육인적자원부 기반구축지원관 인력수급팀

(☎ 02-2100-6425)

- '08년 4월부터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자격관리·운영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정하는 등록관리기관에 해당 자격을 등록해야 하는 "민간자격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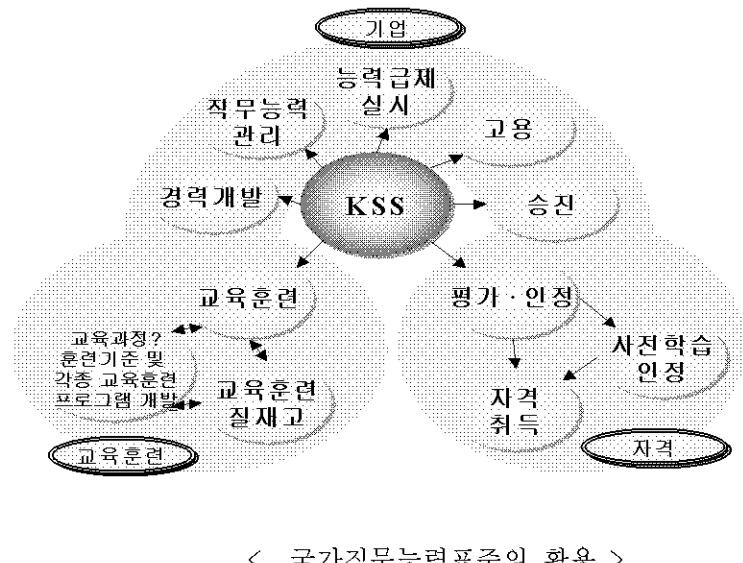
- 민간자격 등록제 시행을 통해 민간자격 금지분야 및 결격사유가 있는 민간자격기관이 양산·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간자격 취득에 관심 있는 국민에게 정확한 자격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한 단계 성숙된 자격제도의 틀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 시행

교육인적자원부 기반구축지원관 인력수급팀  
(☎ 02-2100-6425)

- 자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08년 4월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가 시행됩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은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력수요를 표준화하는 작업입니다.”

-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초로 ‘교육훈련과정’이 연계 개발됨으로써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적자원 양성이 가능해 집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으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산업계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계가 필요한 인력을 표준에 의해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훈련의 현장적합성 부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된 직무능력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관점에서는 경력개발, 직무능력관리, 능력급제 실시 등과 관련된 제도 관리운영에 활용될 수 있고 자격의 관점에서는 평가인정, 자격취득, 사전학습 인정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교육훈련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교육훈련기관의 각종 교육훈련 관련 기준 및 프로그램 마



련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앞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준으로 무형식교육훈련 결과 인정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결과를 평가 · 인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등 인적자원개발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 될 것입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통해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

력 제고, 교육훈련-자격제도간의 일관성 확보를 통한 효율성 증진, 모든 국민에게 직무능력개발과 전직에 대한 열린 기회의 제공, 같은 분야에서 서로 다른 직무기준을 사용하는데서 나타날 수 있는 교육 · 훈련과 재교육 · 훈련비용의 절감 등이 가능해집니다.

-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게 되고 국가인적자원 개발에 있어서 일관된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 4.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 등록 · 열람제도 확대 · 강화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보호팀

(☎ 02-2100-8643~7)

- '08년 2월부터 현행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 관리 및 지역주민에게 열람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 개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8.2.4 시행)에 의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10년간 사진, 상세주소 등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 장은 5년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 정보등록 대상기간 및 정보등록 대상자 확대 등 더욱 강화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 열

람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 · 관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 열람제도 개요 >

###### □ 등록기간 : 10년(형 집행 종료 후)

###### □ 등록대상

-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자 또는 법원에 의해 열람명령이 확정된 자
  - 성매수의 경우는 재범자이거나 대상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 등록정보

-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및 실제거주지 ④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사진 ⑥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 열람기간 : 5년(형 집행 종료 후)

###### □ 열람대상

- ① 13세 미만의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 ② 13세 미만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③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등

□ 열람정보

① 성명 ② 나이 ③ 주소 및 실제거주지 ④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 사진 ⑥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 열람권자

- ①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 ②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의 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장

## 5 보건·복지

### 1.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관실 연금정책팀 (☎  
02-500-5512)

□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 기준으로서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를 운용하여 왔으나, '08년 1월부터 등급체계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은 종전과 동일하게 최저 22만원, 최고 360만원으로 하되, 신고한 소득월액이 최저 기준소득월액보다 낮으면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최고 기준소득월액보다 높으면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 종전의 만원 단위인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가 천원 단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되며,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 이에 따라,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징수함으로써 소득계층 간 연금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관실 연금급여팀 (☎  
02-500-5531)

- '08년 1월부터 출산 및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딧(credit)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급액을 높일 예정입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최고 한도 50개월)하는 인센티브 부여로 출산을 장려하고, 노령연금액 및 연금수급기회를 증대시켜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등 적정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고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 한함)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산정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 < 크레딧(credit)제도 개요 >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수급권 및 적정 급여 보장을 위해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선진국은 육아, 가족수발, 군복무, 실업, 질병·장애, 교육·직업훈련 등의 사유를 인정하고 있음.

### 3. 국민연금 급여율의 종전적 하향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관실 연금정책팀

(☎ 02-500-5512)

-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통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08.1월부터 50%로 인하됩니다.
- 따라서 '08년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된 급여율이 적용되지만, 기준수급자 및 기준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급여율대로 연금을 지급하므로 기득권이 보장됩니다.  
※ 급여율은 '08년에 50%를 적용하고 2009년부터 매년 0.5%씩 낮추어 2028년에 도달 시 40%로 인하됨

###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 장애인정책팀 (☎

02-2110-6266)

- '08년 4월 11일부터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의 개념과 장애로 인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의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되 각 차별영역별 세부적인 확대

계획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련된 단계적 시행방안과 차별시정절차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제정한 시행령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 5.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도개편 시행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관 질병정책팀 (☎  
031-440-9117)

- '08.4.1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되어 환자가 본인 부담금 지불 없이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으로 청구하도록 지불체계가 개편·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08.1.1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집행업무가 질병관리본부(심혈관·희귀질환팀)으로 이관되어 전문적인 환자관리 및 연구수행 등 포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 현행 제도의 '선지급 후환불' 체계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이용불편이 의료비 지급 업무의 건강보험공단 위탁을 통해 개선되어 환자중심의 지원체계가 구축될 뿐만 아니라 자격관리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집행업무의 질병관리본부 이관을 통해 지원대상자 관리, 질병정보 관리 및 상담, 연구 등 집행전문조직으로써 수행하고,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조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도개편 개요 >

### □ 의료비 지원방법 및 절차

####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환자는 해당상병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 방문시 환자 등록증 제시 후 본인부담금 면제('08.4.1부터 시행)
- 요양기관은 지원대상자의 해당질환에 대한 총진료비(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포함)를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심평원에 청구
- 공단은 심사 전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우선 가지급하고 심사 후 정산 처리  
※ 진료비청구명세서변경("H"코드 신설) 및 칼럼 추가, 지원대상자 등록증 발급, 자격조회 및 가지급 지원 프로그램 등 구축

#### ○ 보장구 구입비 지원

- 장애인보장구 제조·판매자 또는 지원대상자(보호자 포함)는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청구 ('08.1.1부터 시행)
- 청구된 보장구 구입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검토 후 청구자의 급여계좌로 입금

#### ○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지원

- 지급보증 임대회사 또는 지원대상자(보호자 포함)는 대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청구 ('08.1.1부터 시행)
- 청구된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검토 후 청구자의 급여계좌로 입금

#### ○ 간병비 지원

- 보건소에 간병비 지원대상자 등록신청을 한 후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급여계좌로 자동 지급 됨('08.1.1부터 시행)

## 6.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추진단

기초노령연금총괄팀 (☎ 129 또는  
02-500-5540)

□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전체 평균소득월액(A값)의 5%('08년 8.4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0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다만, 1월부터는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어르신들 중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 이하이신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으시게 되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적용이 확대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월 소득인정액은 각각 40만원, 64만원 이하이신 경우에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 '08.7.1일 현재 이미 65세가 넘으신 어르신들께서는 '08년 4~5월을 전후(구체적인 일정은 별도 홍보 예정)하여 신청·접수를 하시면 되시고, '08.7.1일 이후에 65세가 되시는 어르신들은 65세가 되시는 날이 속하는 달에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초노령연금은 '08년도에 전체노인의 60%(약 301만명)에게 지급되지만, '09년도에는 지급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전체노인의 70%(약 363만명)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 7.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요양제도팀 (☎  
031-440-9624~8)

- '08년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은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o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되는바,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월 2,500 원 내외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

#### □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정수

-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

#### □ 신청대상 및 판정절차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건보공단 직원 방문조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 여부 판정

####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시설급여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 □ 장기요양급여의 본인 일부부담 및 국가·지자체 부담

- 수급자 본인부담 :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경감규정 마련
-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 부담
- 국가와 지자체는 기초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부담

#### □ 관리운영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법률 시행일 : 장기요양보험료 정수 및 급여 제공 ('08.7.1)

- 장기요양인정 신청('08.4월 예정)

## 8.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확대 실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 가족정책팀(☎)

02-2100-6785~6)

- '07년 4월부터 전국 38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내년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양육자의 직장 근무, 집 안 행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돌봄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시간제 돌봄 서비스로,
  -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경기 지역은 31개 센터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어서 더 많은 가정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맞벌이, 한부 모 가정은 인근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일정액의 자부담을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계층에 따라 자부담 액수 달라짐(저소득가족 시간당 1,000원, 일반 가족 시간당 4,000원~5,000원)

- 또한 아이돌보미 활동을 희망하는 65세 이하 신체 건강한 중장년 여성은 사업 기관에 등록 후 면접을 통해 선발되며, 선발된 돌보미는 50시간의 양성 교육을 수료한 후에 활동 할 수 있습니다.

## 9.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전국

### 확대 실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 가족통합팀 (☎)

02-2100-6733)

- 여성가족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응 안정화와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2007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을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확충('07년 38개→'08년 80개로 확대)하고,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찾아가는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을 증액하여('07년 39억원→'08년 223억 원) 수혜인원이 대폭 확대('07년 2,200여가정→'08년 16,000여 가정)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개별적 서비스가 필요한 결혼이민자의 개별적 요구에 적합한 한글교육, 출산, 자녀양육, 한국문화 습득 등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통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의 삶의 질 증진과 안정된 가족생활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 10.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본부 식품안전정책팀

(☎ 380-1726~7)

-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2007.10.19)하여 소비자의 식품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오인·혼동의 표현을 제한함으로써 보다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식품업체가 표시하는 영양성분 함량 표시 등이 소비자에게 왜곡되거나 오인·혼동되지 않도록 식품 별로 1회 제공기준량을 설정하고 1회 제공량을 산출하여 표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소비자가 식품선택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표시사항인 날짜 표시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활자크기를 확대하고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 트랜스지방에 대한 세부표시기준과 강조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에도 표시를 의무화(시행 : 2010년 1월 1일)하였습니다.
- 맥주에 대하여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들어 있지 않았다는 등의 소비자 오인·혼동 표시행위를 제한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습기방지제에 대한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11.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분부 식품관리팀

(☎ 380-1633)

- 음식점 원산지 품목 및 원산지표시 의무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그 동안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식육 중 “쇠고기구이류” 품목에 대하여만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6월경부터는 “쌀”의 원산지 표시의무를 추가하였고, ’08년 말경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까지 표시의무를 확대·시행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음식의 선택권을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 또한, 표시의무 대상 영업장 면적을 300m<sup>2</sup>에서 100m<sup>2</sup>로 확대하여 의무 표시대상영업소가 현행 약 4,300개소에서 약 19,000개소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관리도 강화됩니다.

- 음식점 식육 등의 원산지 미 표시 및 허위표시에 대하여는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하여 허위표시 행위 신고시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신설 추진 중에 있으며, 원산지 허위표시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식약청과 농림부(농산물품질관리원)간에 MOU를 체결하고,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12. 위생규격 중심으로 식품공전 개편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본부 위해기준팀  
(☎ 352-4797)

- 식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위생 규격 중심으로 식품공전을 개편하였습니다.
- 컵모양 젤리제품 섭취로 인해 '01년부터 현재 까지 국내에서 5건의 질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한 입에 먹거나 얼려서 섭취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생산·수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컵모양 젤리제품의 원료기준, 제조·가공기준 및 규격을 변

경하였습니다.

- 1999년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2006년 미국산 소고기에서 다이옥신 잠정 기준 5.0 pgTEQ/g fat을 초과한 사례가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이슈화 및 국민 불안감조성 등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국민다소비 식육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다이옥신 규격을 신설하였습니다.
- 시중 유통·판매중인 고추장 및 고춧가루에서 쇠가루가 검출되었고 이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와 해당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자석설치를 의무화하고 금속성 이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올리브유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됨에 따라 올리브유에 기준을 신설('07.5.7)하였고, 열처리과

정을 거치는 모든 식용유지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될 개연성이 있어 벤조피렌 규격을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 최근 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으로 영유아용 조제식 등 특수용도 식품에는 사카자키균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특수용도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식품(선식 등)의 안전관리기준이 없어 이를 식품의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활어횟집의 비위생적인 수조관리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족관물의 미생물관리 기준 추가로 강화하였습니다.
- 천일염에 대한 관리법령이 염관리법에서 식품 위생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천일염을 가공식품에 참가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품질이 관리된 식용천일염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 천일염에 적합한 규격 신설 및 식염으로 수입하는 천일염은 생산국가에서 식염으로 분류·인증된 것이어야 함('08년 3월 시행 예정)

- 식품공전을 위생규격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편함에 따라 국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13.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품목허가 분리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분부

의약품안전정책팀 (☎ 3156-8006)

- 의약품 연구 개발자가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조업 허가와 품목허가가 분리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인 경우에는

'08.4.18.부터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하고 품목허가를 받아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 새로운 바이오 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이 활발히 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품목허가를 같이 받아야 한다거나 제조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부담 등의 연구·개발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 의약품 제조 등 분야별 전문화를 통하여 각각의 핵심역량별 선택과 집중으로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약품 품질확보와 소비자의 안전도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4. 의약품 안전관리 책임자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본부 의약품관리팀

(☎ 3156-8053)

- 지난 '07.10.17자 약사법이 개정됨(법률 제8643호)에 따라 '08년 4월 18일부터는 의약품의 허가를 받은 자는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 의약품 개발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시험은 일정한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조건이나 시험기간 등을 제한하여 실시되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작용 정보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의약품이 허가된 이후 광범위한 사용 경험을 통해 꾸준히 부작용등 정보를 수집·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고, 식약청에서는

이를 위해 신약등의 재심사, 의약품 재평가, 부작용보고 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o “안전관리책임자” 제도 도입으로 재심사, 재평가, 부작용보고 등 의약품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부작용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6] 환경

### 1. 국제기준(GHS)에 따른 새로운 화학물질 분류·표시제 시행

환경부 환경정책실 화학물질안전과

(☎ 02-2110-7953)

- 2007. 11. 16일 GHS 도입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08년 7월부터 국제기준(GHS)에 따른 유독물의 분류 및 표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o GHS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그간 나라마다, 국내의 경우는 부처마다 서로 달랐던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가 조화됨으로써 수출입 시 산업계의 애로가 해소되고, 간결하고 알기 쉬운 유해·위험성 정보전달을 통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환경부는 표시의 일괄 교체 등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일물질인 유독물은 2011. 6월까지, 혼합물질인 유독물은 2013. 6월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 표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시행 이후 새로 지정되는 단일물질인 유독물은 곧바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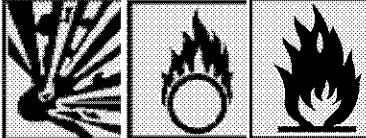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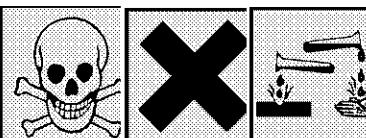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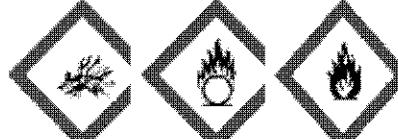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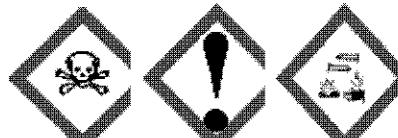
### < GHS 개요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란?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200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2008년까지 각국이 GHS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2003년 9월 유엔에서 기준 채택

변경사항

|       | 한 국  | G H S  |
|-------|--|--|
| 분류 항목 | 15<br>물리적 위험(7),<br>건강·환경유해성(8)  | 27<br>물리적(16), 건강·환경(11)   |
| 분류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교적 단순</li> <li>혼합물질 분류기준 별도로 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우 복잡하여 안내서 필요</li> <li>혼합물질 분류기준이 별도로 정해짐</li> </ul>   |
| 유해 그림 | <br><br> | <br><br> |

## 2. 경유차에 대한 EURO-4

### 배출허용기준 확대 시행

환경부 대기보전국 교통환경기획과

(☎ 02-2110-6807)

□ '08년 1월부터 출고되는 모든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EURO-4 수준의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 경유 소형승용차(2.5톤 미만), 경자동차에 대해서는 2006년 1월부터 EURO-4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적용 대상 범위가 전 차종으로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 경유차에 대한 'EURO-4 수준'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확대되어 적용됨에 따라 경유차로 인한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감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대기환경이 개선되어 쾌적한 생활여건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및

### 포름알데히드 기준강화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환경과

(☎ 02-2110-6815)

□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에 한정된 현행의 관리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은 '08년부터 430m<sup>2</sup>이상, 민간 보육시설은 '08년에 860m<sup>2</sup>이상, '11년부터는 430m<sup>2</sup>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였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중 포름알데히드 기준농도를 120μg/m<sup>3</sup>에서 100μg / m<sup>3</sup>로 강화하였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수가 '06년도 25개에서 '08년 319개소, '11년 2,036개로 늘어나게 되어 실내공기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포름알데히드 기준농도를 WHO 권고수 준인  $100\mu\text{g}/\text{m}^3$ 로 강화하였으므로 국민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다중이용시설('06년말 기준 6,394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4. 주유소 주유시설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  
02-2110-6788)

- '08년 1월 1일부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에 위치한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STAGE2)설치가 단계적으로 의무화 됩니다.

-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통해 주유원, 주유소 인근 주민 및 운전자의 유증기 노출을 최소화하여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쾌적한 주유소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기중으로 배출되는 유증기 회수에 따라

연간 67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기대됩니다.

#####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 개요 >

- 대상 :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내 주유소
- 기준주유소의 규모별 설치 기한(2006년도 휘발유 판매량 기준)
  - ①  $3,000\text{m}^3$  이상 : 2008년 6월 30일까지
  - ②  $2,000\text{m}^3$  이상  $3,000\text{m}^3$  미만 : 2008년 12월 31일까지
  - ③  $1,000\text{m}^3$  이상  $2,000\text{m}^3$  미만 : 2009년 12월 31일까지
  - ④  $500\text{m}^3$  이상  $1,000\text{m}^3$  미만 : 2011년 6월 30일까지
  - ⑤  $300\text{m}^3$  이상  $500\text{m}^3$  미만 : 2012년 12월 31일까지

## 5. 수질 원격감시체계(TMS : Tele Monitoring System) 제도 시행

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수질관리과  
(☎ 02-2110-6853)

- '08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의 방류수질을 상시 관리·점검할 수 있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 수질오염물질의 상시 관리·점검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하여 수질오염사고 예방, 공정 개선 유도 및 관련 기술·산업의 발전과 함께 선진·과학적인 수질관리 정책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08년 내 수질원격감시체계(TMS) 구축 대상 사업장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처리용량 10,000m<sup>3</sup> 이상), 폐수종 말처리시설(전년도 1일 평균 방류량 700m<sup>3</sup> 이상 또는 1일 처리시설용량 10,000m<sup>3</sup> 이상), 1종사업장·공동방 지시설(1일 처리용량 2,000m<sup>3</sup> 이상)  
※ 자동측정항목 : pH, 유기물질(BOD 또는 COD), SS, T-N, T-P

## 6.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물놀이 등 행위제한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 02-2110-6828)

- 공공수역내 물놀이중 오염물질로 인한 전염병 등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07년 12월부터 공공수역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수질기준을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 공공수역내 물놀이, 취사 등의 행위시 수질기준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이 미흡하였던 부분을 보완하여 공공수역내 용수사용의 안전성 확보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라 기대된다.

## 7.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 손괴자부담금 통합·시행

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 02-2110-6877)

- '08년 1월부터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하던 손괴자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되어 부과·징수되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예정입니다.

- 손괴자부담금도 넓은 의미로는 수도공사를 하는 수도사업자의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에 포함되므로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여 부과함으로써 하나의 행위로 손괴자부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을 각각 납부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개요 >

- 근거법령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 □ 부과대상

-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

## 8.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시행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 02-2110-6920)

- '08년 8월부터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가 시행 됩니다.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폐기물에 대한 수출·입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출입 허가대상 품목이 아닌 일부 폐기물에 대해서도 수출·입

신고제를 도입하여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 및 처리를 국내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입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9. 알칼리망간전지 등 전지류 분리수거 실시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

02-2110-6958)

- '08년 1월부터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및 니켈수소전지에 대해 분리수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폐전자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폐전지 분리 수거함이나 아파트 등에 설치되어 있는 수거함 등에 넣으시면 됩니다.

○ 이렇게 모아진 전지는 아연, 망간 등 금전가치가 있는 물질들을 회수하여 원료로 써 다시 재활용합니다.

- 이번에 분리수거가 실시되는 3종의 전지들은 전지 발생량의 90%를 차지하며, 종량제봉투에 버려져 매립되던 전지류가 분리수거·재활용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재활용율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7 노동

### 1.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노동부 노사정책국 노사관계법제팀

(☎ 02-503-9734)

해야 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하며,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노사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08년 1월부터 철도·전기·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파업시에도 일정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으로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를 이루는 자율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이 기대됩니다.
  -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원만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 범위에서 그 유지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 그 구체적 운용방법은 노사간의 협정으로 체결

### < 필수유지업무(예시)>

-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
  - 운전, 관제(운전취급 포함)
  - 전기·신호·통신 시설 및 설비의 유지·관리
  - 선로점검·보수
- 항공운수사업
  - 탑승수속, 보안검색
  - 항공기 조정, 객실승무
  - 항공기의 정비(창정비 제외)
  -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이·착륙시설의 유지·운영(관제 포함)
- 수도사업
  - 취수·정수·가압·배수시설의 운영
  - 수도시설 통합시스템과 계측·제어설비 운영
- 전기사업
  - 발전설비의 운전·점검 및 정비
  - 지역전기공급, 보호계전기 시험 및 정정
  -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통신센터 운영
  - 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의 긴급복구
  - 전력의 공급 운영과 송전설비 계통운영의 제어
- 가스사업
  - 천연가스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 석유정제·공급사업
  - 석유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 병원사업
  -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 분만(신생아 간호 포함), 수술, 투석
  -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 통신사업
  -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
  - 통신장애의 신고접수 및 수리
  - 기본 우편역무
  - 부가 우편역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

## 2. '08년 최저임금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02-2110-7393)

- '08. 1. 1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07년 (3,480원)보다 8.3%가 인상된 3,770원입니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016원)가 적용됩니다.

※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수위, 물품 감시원 등)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보일러원, 기계수리원, 전용운전원 등)를 말합니다.

- '08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 30,160원, 월 환산시 주40시간 적용 사

업장 기준(월 209시간) 787,930원,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26시간) 852,020원이며,

- 수혜대상 근로자수는 212만4천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중 13.8%의 저임금 근로자가 임금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 o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 3.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노동부 근로기준국 비정규직대책팀

(☎ 02-2110-7401)

- '07.7.1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08. 7. 1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o 차별시정제도란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 단시간 · 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 · 통상 · 직접고용)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차별시정의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함으로서 신청이 개시됩니다.
- 차별시정절차를 통한 시정명령(조정 · 중재 포함)의 내용에는 ①차별적 행위의 중지, ②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③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됩니다.

※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안내서 '차별시정제도를 알려 드립니다.'와 '비정규직법 질의회시집'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http://www.molab.go.kr)) ‘정보마당’에 가시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09.7.1부터 차별시정제도는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차별시정제도는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의해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4. 배우자 출산휴가제제도 시행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여성고용팀  
(☎ 02-2110-7297)

- ‘08년 6월 21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양성 평등의 출산문화 정착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5.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02-2110-7394)

- 주40시간제가 ‘08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법정시행일 : ‘04.7월 금융·공공기관·상시 1,000인 이상, ‘05.7월 국가기관, 상시 300인 이상, ‘06.7월 상시 100인 이상, ‘07.7월 상시 50인 이상, ‘08.7월 상시 20인 이상  
상시 20인 미만은 ‘11년 이내 별도 시행

- 법정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연·월차휴가의 조정 등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적용됩니다.
-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4시간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단축됩니다.
  - \*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가능(이때 토요일의 성격은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
- 월차유급휴가 폐지, 연차유급휴가 조정(1년 개근 10일, 1년 9할 이상 출근 8일 → 1년 8할 이상 출근 15일), 생리휴가 무급화, 휴가사용촉진제도 및 보상휴가제 도입, 임금보전 등

## 6. 육아휴직제도 개선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여성고용팀 (☎

02-2110-7297)

- 08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 3세 미만까지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08년 6월 21일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을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 상관없이 나머지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sup>3)</sup>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현재와 같이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부담이 큰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현재는 육아휴직기간이 남아 있어도 자녀가 1세('08.1.1 이후 출생아의 경우 3세)가 되면 휴직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만, '08년 6월 21일부터는 남은 기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음(예, 9개월 된 자녀에 대해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현재는 1세('08.1.1. 이후 출생아부터 3세) 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종료되어 실제로는 3개월만 사용할 수 있으나, '08년 7월부터는 1세('08.1.1. 이후 출생아부터 3세)를 초과해도 남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

##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여성고용팀

(☎ 02-2110-7297)

- '08년 6월 21일부터 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육아 휴직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특히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 조건은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해야 하며,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정하는 근로조건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장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하며, 육아기 근

## 8 건설·교통

### 1. “주택성능등급표시 대상”을 ‘1,000세대’ 이상으로 확대

건설교통부 주택건설기획관 주택건설기획팀  
(☎ 02-2110-8599)

- ‘08.1.1 이후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건설교통부에서는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을 “2,000세대이상”에서 ‘1,000세대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에너지성능 부문에 대하여는 ‘500세대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표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2. 6층 이상 공동주택에 실내소음도 측정기준 마련

건설교통부 주택건설기획관 주택건설기획팀  
(☎ 02-2110-8599)

- ‘08.1.1 이후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단계 뿐만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건설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을 6층 이상의 경우 실외소음도를 측정하여 기준(65데시벨 미만)하던 것을 실내소음기준(45데시벨미만)에 적합하게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소음방지시설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3. 주상복합건축물(150세대이상)도

#### 주택법에 의한 관리 시행

건설교통부 주택건설기획관 주택건설기획팀

(☎ 02-2110-8598)

-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이상(230개단지, 7만호)인 경우 주택법령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 그 적용대상을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 세대 이상인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 건축법 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그 동안 주택법령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입주민들간 관리문제로

인한 분쟁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왔으나,

- 주상복합 건축물도 일반 공동주택 간에 관리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전문적 관리로 입주민의 주거문화가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4. 주택청약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의 거주기간 요건”을 ‘1년이상’으로 개선

건설교통부 주택건설기획관 주택공급팀

(☎ 02-3679-3108~9)

- ‘08.1.1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우선공급”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 건설교통부에서는 “지역거주자의 우선공급의 거주기간 요건”을 ‘1년이상’으로 하도록 주택공

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1년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종전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지역의 시장·군수가 개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입주자 공고일 현재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

## 5.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토지관리팀 (☎)

02-2110-8630

- 영세한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인 관리·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07년 11월 18일부터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개발업자의 등록사실 및 사업실적 정보 등을 제

공받을 수 있고, 개발업자의 허위개발정보 유포행위 등이 금지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 무자격 개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등록사업자간 상호간 경쟁을 유도함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건축물의 연면적 2천m<sup>2</sup>(연간 5천m<sup>2</sup>)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m<sup>2</sup>(연간 1만m<sup>2</sup>)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표시·광고를 의무화하고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개요 >

####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 건축물(연면적)                   |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 토지                         |
|----------------------------|--|----------------------------|
| 2천 $m^2$ (연간 5천 $m^2$ ) 이상 | 2천 $m^2$ (연간 5천 $m^2$ )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 3천 $m^2$ (연간 1만 $m^2$ ) 이상 |

\* 주상복합 :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 구 분        | 등 록 요 건                            |
|------------|------------------------------------|
| 자본금        | 법인<br>자본금 5억원 이상                   |
|            | 개인<br>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 상근 2명 이상 * 사전교육이수 제는 '08.11.18. 시행 |
| 시설         | 사무실 전용면적 33 $m^2$ 이상               |

\* 등록사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 6.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의 규격 확대

건설교통부 도로기획관실 도로정책과

(☎ 02-2110-8384)

□ '08.1.1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되는 경차의 규격이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차규격이 확대됨에 따라 유료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종전의 배기량 800cc 미만 차량에서 1,000cc 미만 차량까지 확대함으로써 경차보급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도 기대됩니다.

## 9 중소기업

### 1.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사업 시행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본부 정책총괄팀 (☎ 042-481-4541)

- '08년부터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 노하우가 후계자에게 원활하게 전수되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 노하우 등이 후계자에게 원활하게 이전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사업에만 전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합니다.

### <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 지원사업 개요 >

#### □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 ①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② 가업승계 표준메뉴얼 마련
- ③ 우수가업승계 포상제도 시행

#### □ 세제개편을 통한 가업승계 비용부담 완화

- ① 가업상속공제 확대 : 1억 원 → 2억 원이나 가업상속 재산의 20%(30억 한도) 중 큰 금액
- ② 연부연납제도 개선 : 가업상속(50%) 15년 → 3년 거치 12년 분납(세무서결정 → 납부자가 신청한 대로 허가)
- ③ 중소기업 주식 사전상속특례제도 시행 : 중소기업 주식 사전상속(30억 한도) 시 5억 원 비과세, 초과금액 10% 과세 후 상속시 정산

#### □ 가업승계 지원사업 시행

- ① 가업승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② 후계자 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③ 가업승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가업승계 정보제공

## 2. 개성공단 진출기업 지원사업 시행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본부 조합지원팀 (☎ 042-481-4485)

- '08년부터 개성공단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인력, 판로 및 R&D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07.5.25 제정)」 및 동법 시행령(07.9.20 제정)이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 반영된 13개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시책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도 적용됩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또한, “특례보증제도” 및 “중소기업 임시투자 세액 공제제도”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70%이내에서 보증하고, 설비 투자시 7%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 3.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제도 시행

중소기업청 창업벤처본부 창업제도팀 (☎ 042-481-4409)

- '08년 1월부터 비수도권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은 2007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3년간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제조업 기

업으로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임대공장은 3억원 이상)이고, 5인 이상 신규 고용 및 1년 이상 정상영업을 한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최대 10억원까지 3년 간 분할 지급합니다.

- 동 제도의 시행을 통해 제조업 창업이 촉진되고 이에 따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조금 신청은 창업넷([www.changupnet.go.kr](http://www.changupnet.go.kr))을 통해 2008년1월부터 접수할 예정입니다.

#### < 창업기업투자보조금 지원제도 개요 >

- 신청대상 : '07년 1월1일 이후 3년간 창업한 비 수도권 제조업 창업기업으로
  -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총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 (임대공장은 3억원 이상)
  - 신규고용 5인 이상
- 지원내용 : 총 투자금액의 10%를 지급(기업당 최대 10억원)
- 3년간 분할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 해당사유 발생시 보조금 지급을 중단

#### 4.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청 창업벤처본부 균형성장지원팀 (☎  
042-481-4596)

- 여성의 창업활성화 유도와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07. 10월에 설립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여성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창업지원, 교육·훈련·연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애로상담실 운영,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여성기업 지원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질 것이다.

####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개요 >

- 센터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3-24, 25번지 (지상7층 지하2층, 4,710.77m<sup>2</sup>)
- 설립목적 :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함으로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 운영목표
  - 여성기업 육성사업 창구 일원화 및 시책추진의 효율성 제고
  - 여성기업 육성의 허브기능 수행
- 센터기능
  -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 여성의 창업지원
  - 여성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5.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청 창업벤처본부 균형성장지원팀 (☎  
042-481-4491)

- 장애인의 창업촉진 및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일괄 제공할 수 있는 재단법인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가 '07.12월 설립되어 활발한 지원활동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장애인의 창업지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애로상담실 운영, 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장애인기업 지원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개요 >

- 센터 :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9-5번지 SD빌딩  
(지상1,2층, 710m<sup>2</sup>)  
(창업보육실 및 경영애로상담실 설치)
- 설립목적 :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함으로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 운영목표
  -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창구 일원화 및 시책추진의 효율성 제고
  - 장애인기업 육성의 허브기능 수행
- 센터기능
  -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 장애인의 창업지원
  -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 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 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6. 장애인기업 온라인 홍보관 운영

중소기업청 창업벤처본부 균형성장지원팀 (☎  
042-481-4491)

- 온라인 포탈사이트를 통한 장애인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을 위해 장애인기업 온라인 홍보관 운영이 내년 1월부터 추진될 계획입니다.
- 장애인기업 온라인 홍보관은 업종별 테마를 설정하여 테마관 형식으로 운영되며, 누리꾼(네티즌)의 접속률이 높은 종합검색 포탈사이트를 선정 홍보함으로써 장애인기업의 판로 지원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 장애인기업 온라인 홍보관 운영 >

- 홍보관 : 종합검색 포탈사이트(네이트 또는 엠파스)와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홈페이지에 설치
- 운영목적 : 장애인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 운영목표
  - 장애인기업 업종별 홍보 콘텐츠 개발 및 등록
  - 장애인기업 홍보 150업체
- 사업내용
  - 장애인기업 경영활동 동향 및 장애인기업 지원정책 정보제공
  - 업종별 주요기업체 선정 및 홍보
  - 온라인 포탈사이트를 통한 홍보와 한국장애인경제인 홈페이지(<http://www.akid.or.kr>)를 통한 홍보 병행

## 10 행정·법무

### 1.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행자부 주민제도팀 (☎ 02-2100-3985)

#### □ 주민등록증 재발급

- 분실 등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 수령할 수 있는 기관은 민원이 선택할 수 있음(수령기관 : 주민등록지 또는 신청지)
-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 2. 개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행자부 개인정보보호팀 (☎ 02-2100-3535)

#### □ CCTV 설치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

- CCTV를 설치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안내판 설치 의무화
- CCTV카메라의 임의 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을 금지

#### □ 국민들의 개인정보 권리 보호

- “삭제청구권”을 신설하여, 원치 않는 정보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 도입
-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수집, 위탁, 이용·제공, 폐기 등)을 국민들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공시

### 3. 인터넷 본인 확인제 본격 시행

행자부 표준화팀 (☎ 02-2100-3595)

#### □ 본인확인제

- 공공기관에서 인터넷상의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여부확인을 실시하고 게시판에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흠

## 페이지 운영방식

###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 □ 본인확인제 구현 분야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게시판 운영 분야

### □ 본인확인제가 정착되면

- 그동안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게시판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비방·욕설 등의 폐단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가입을

실시하여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미연에 방지

## 4. 「110」 서비스 시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 02-360-2763)

- 「110」은 국민들이 단 한번의 전화로 행정기관이 어디인지를 막론하고 민원사항에 대해 상담 받거나, 궁금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07. 5. 10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 그간 국민들은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고자 하여도 해당기관이 어딘지, 전화번호는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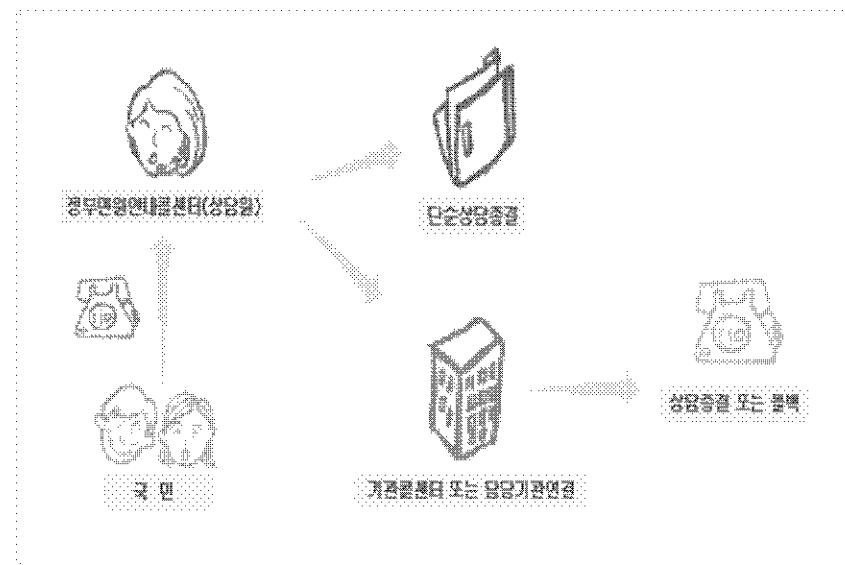
- 114에 전화를 걸어 기관 전화번호를 안내받아 어렵게 전화하여도 “우리기관 소관이 아니다”, “우리부서 담당업무가 아니다”라는 이유 등으로 전화를 자주 돌리는가 하면, 담당

자가 자리를 비워 기다리기도 하고, 문의사항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등 갖가지 불편을 겪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 「110」은 이러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통합콜센터의 기능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전국 어디서나 「110」에 전화하시면 시내전화요금으로, ARS(자동응답전화)가 아니라 상담원이 직접 친절하고 빠르게 상담안내하여 드립니다.
- 「110」 상담원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직접 해당기관에 연결하여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해당기관을 찾아 전화하는 수고를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 상담안내시간은 평일 09:00~19:00, 토요일 09:00~13:00입니다.

“이제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전화민원이나 문의는 「110」으로!”

####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화민원처리 개념도 >



## 5. 불량품 신고센터 운영

조달청 품질관리단(☎ 031-260-8607)

- 조달청은 '08년 1월부터 공공기관이 품질불만 등 불편사항에 대해 간편하게 사후조치를 받을 수 있는 「불량품 신고센터」를 온라인 정부조달창구인 나라장터(KONEPS)에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 조달물품 품질불만 사항을 온라인 상에서 상시 모니터링하여 품질관리 전문기관이 신속하게 공공기관의 불편을 해결하고,
- 이들 품질정보를 축적하여 나라장터에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선택하는데 활용토록 하여, 조달업체의 자발적인 품질강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어 향후조달물자의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6. 국민참여재판 제도 시행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 02-504-4001)

- '2008.1.1.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각 지방법원 별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두고, 구체적 배심사건을 재판하게 될 재판부가 명부에서 후보예정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출석통지를 하게 됩니다
-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죄가 있는지,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된 국민은 원칙적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배심원, 예비배심원으로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http://www.moj.go.kr))의 ‘국민참여재판’ 코너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7.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시행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503-7034)

- '08년 1월1일부터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시행됩니다.

-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를 전제로 한 신분관계를 등록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 없어 현행 호적법 체계는 유지하되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사용합니다.

○ 또한 본적을 대신하여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되고 등록준거지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호적등본과 달리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어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 <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

- 제정배경 : 호주제 폐지에 따라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마련 필요
- 주요 내용
  - ① 호적부 대신 개인별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 편제
  - ② 본적을 대신하여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 도입

### □ 입법효과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 원칙 구현

##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시행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503-7034)

- '08년 상반기 중 과태료의 부과·집행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은 과태료 부과에 책임주의를 도입하여 고의·과실, 위법 인식 가능성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 과태료 부과·징수·재판·집행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여 불균등한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제

재를 할 수 있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준법의식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

- **추진배경 :** 과태료의 부과·집행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과태료 제도 운용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
- **내용**
  - ① 과태료 부과에 책임주의 도입
    - 고의·과실, 위법 인식가능성을 과태료 성립요건으로 함
    - 14세 미만자, 심신장애자의 행위는 면책
  - ② 법적 안정성 보장
    - 과태료 소멸시효·제척기간 규정(5년), 행위시법주의 도입
    - ③ 과태료 부과·징수·재판·집행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
    - ④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제재수단 도입
  - **시행일**
    - \* 공포일로부터 6개월(미공포)

## 9.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시행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503-7034)

- '08년 상반기부터 여성 배우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이혼 후 자녀의 양육환경 개선책을 마련한 새로운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환경을 보장하였으며, 이혼 전에 이혼 전 일정기간동안 상담 등을 통해 이혼을 재고할 기회를 부여하는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남녀 모두 18세가 되면 혼인 및 약혼이 가능해지고 부부재산제도를 개선하여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또한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이 자녀에게도 인정됩니다.

### < 새 민법, 가사소송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여성 배우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이혼 후 자녀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 **주요내용**
  - ① 협의이혼 시 자녀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 합의 없이는 협의이혼 불가능
  - ② 이혼숙려기간 도입 - 이혼 전 일정기간동안 상담 등을 통해 이혼을 재고할 기회 부여
  - ③ 혼인 및 약혼 가능 연령 조정 -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 모두 18세로 통일
  - ④ 부부재산제도 개선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
  - ⑤ 자녀의 부모 면접교섭권 인정 -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도 인정
- **시행일**
  - \* 공포일로부터 시행 (미공포)

## 10. 전산정보처리를 통한 상업등기 업무 수행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502-4127)

- '08년 4월부터 전산정보처리를 통해 상업등기 업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상업등기법<sup>4)</sup> 및 비송 사건절차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상업등기의 전산화를 완료함에 따라 상업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의 열람, 교부청구와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회사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관할 등기소 간의 전산정보 송부 및 통지로 등기절차를 대체하여 회사 이전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11. 전자선하증권(e-B/L) 제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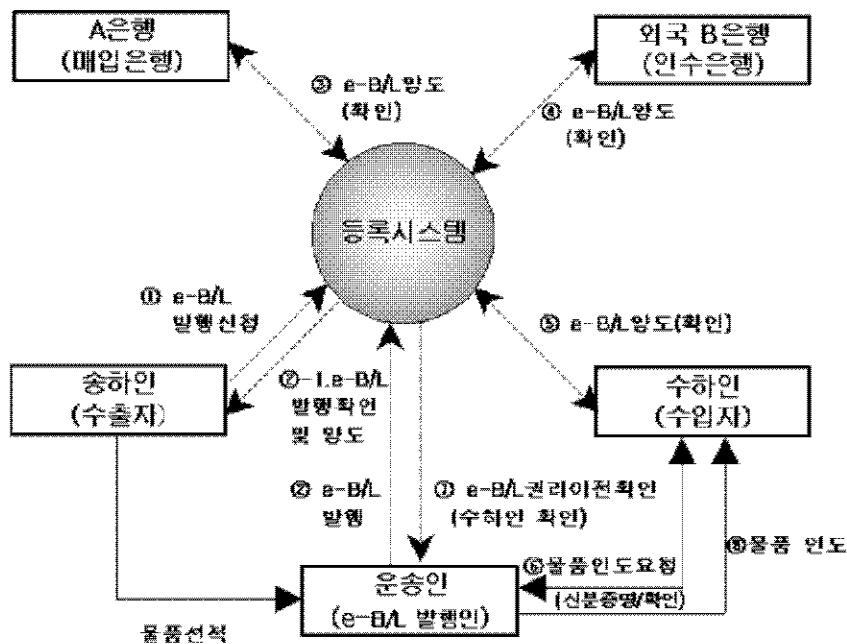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02-502-4128)

- '08년 8월 4일부터 여객선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해상운송계약을 해운 실무에 일치시켜 새로운 무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진화된 상법(해상편)이 시행됩니다. 특히 새로 개정된 상법(해상편)은 국제무역거래에 전자선하증권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습니다.
- 전자선하증권(Electronic Bill of Lading : e-B/L) 제도 시행을 통해, 기존의 종이문서인 선하증권을 전자문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상운송을 통한 무역거래에 있어서 보다 신속·편리하고 안정된 해상운송서비스 제공과 무역금융에 기여함은 물론 국제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의 전자무역서비스 구축사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상업등기법 시행은 2008년 1월/단, 전자적 처리부분은 2008년 4월임

- 전자선하증권은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해서만 발행등록 및 유통되도록 하여 위조·변조·분실 위험을 방지하고 선하증권의 발행·보관·관리 및 유통비용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전자선하증권(e-B/L) 흐름도>



#### 12. 외국인근로자 거주자격 취득 가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정책과  
(☎ 02-500-9072)

- ‘08년 1월부터 비전문취업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기술·기능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외국인근로자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게 단기 순환원칙을 고수하던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여 이들이 숙련된 기능 인력으로 발전할 경우에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부족현상을 완화할 수 있고,
- 국내법을 잘 준수하면서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배려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 < 숙련생선기능인력 거주자격 부여요건 >

□ 부여조건 : 비전문취업(E-9) · 선원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과거 10년이내에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제조업 · 건설업 ·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고, 일정 기술 · 기능자격 요건과 임금요건을 갖춘 외국인

- ①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등 법무부에서 고시한 48개 종목의 기술 · 기능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07년 6월 기준 2,900만원 정도)’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함
- ②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고 2,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여야 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3급 이상의 등급을 취득하는 등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함

### 13. 「소년법」 개정법률안 시행

법무부 보호기획과 (☎ 02-503-7062)

- ‘08. 6.22부터 소년법 적용연령 조정 및 보호처분의 다양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년법 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소년법 적용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소년비행 방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처분의 내용을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 확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쇼크구금), 대안교육, 보호자 교육 신설 등으로 다양화하며, 소년법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하고, 소년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소년분류심사관 · 보호관찰관이 조사한 소년의 인성 · 환경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 결정 전 조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이로 인하여 처벌보다는 다양한 선도 · 교화를

통하여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던 10세, 11세 소년범에 대한 선도·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14. 특정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제도 도입 시행

법무부 보호국 범죄예방정책과

(☎ 02-503-7071)

- '08년 10월 28일부터 성폭력사범 재범방지책의 일환으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o 동법률에 의거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범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그 위치를 추적당하게 됩니다. 피부착 성폭력사범의 상시 위치 추적을 통한 재범억제,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의 실효성 제고 및 보호관찰 협업부 강화 등으로 성폭력사건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 o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인권침해 소지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위치추적이 필요한 성폭력사범의 선별을 위한 전문적 성폭력사범 위험성 평가절차를 마련하고, 일단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외에도 상담치료 및 보호관찰관의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병행하여 재범방지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 11 국방·병무·보훈

### 1.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연차적 단축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인력관리팀 (☎)

02-748-5135)

□ 복무기간 단축의 세부 추진내용은,

□ '08년 1월부터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이 점진적으로 단축됩니다.

- 이는 지난 7월 10일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
  -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2+5)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입직연령 단축)하고,
  -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감축으로 인한 현역잉여자원의 해소와,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 첫째, 육군·해군·해병대의 병(兵)과,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 둘째, 공군 병(兵)의 복무기간은 현 병역법에 의해 5개월 단축하며,
  - ※ 공군병은 지원율 저하로 2004년에 1개월 기 단축(28→27월)하여, 법개정 없이는 5개월만 단축(27→22월) 가능
  - ※ 6개월 단축을 위해서는 2012년 이전에 병역법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 셋째, 공익근무요원(향후 사회복무요원) 중 봉사·보호분야 등에 근무하는 자(병역법제26조제1항 제1호)의 복무기간은 4개월 단축하는 한편,

- 넷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을 현 병역법 시행령에 의해 4개월 단축하는 것으로,

※ 6개월 단축을 위해 2011년 이전에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 그 시행기간은, 전역자를 기준하여 2008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입니다.

#### <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추진의 세부내용 >

| 대상(총11종)   | 현행  | 단축후     | 단축방법   | 시행시기                               |
|--|-----|---------|--|------------------------------------|
| <b>육군 · 해병대 병</b><br>*작전 · 의무전투경찰<br>*교정시설경비교도<br>*상근예비역(시행령개정후 6개월 단축시) | 24월 | 18월(-6) | • '06. 1. 3 ~ '11. 1. 1일<br>입대자 : 3주단위 1일씩<br>• '11. 1. 2 ~ '14. 7.26일<br>" : 2주단위 1일씩 |                                    |
| <b>해군 병</b><br>*해양전투경찰<br>*의무소방원   | 26월 | 20월(-6) | • '05.11. 3 ~ '11. 1. 2일<br>" : 3주단위 1일씩<br>• '11. 1. 3 ~ '14. 6.15일<br>" : 2주단위 1일씩   | '08.1월 ~ '1<br>6.5월<br>(전역자<br>기준) |
| <b>공군 병</b><br>*병역법 개정후<br>6개월 단축시                                       | 27월 | 21월(-6) | • '05.10. 3 ~ '10.12.24일<br>" : 3주단위 1일씩<br>• '10.12.25 ~ '14. 5.18일<br>" : 2주단위 1일씩   |                                    |
| <b>공익근무요원 중<br/>봉사 · 보호 등<br/>업무분야 복무자</b><br>(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 26월 | 22월(-4) | • '05.11. 3 ~ '12.12.18일<br>" : 4주단위 1일씩<br>• '12.12.19 ~ '14. 7. 8일<br>" : 3주단위 1일씩   |                                    |

## 2. 유급지원병제 도입·시행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인력관리팀 (☎)

02-748-5135)

□ 유급지원병제를 도입, '08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 유급지원병제는,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점차 증가하는 첨단장비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복무유형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연장복무 하는 유형“1”과, 입대시부터 3년간 복무하는 유형“2”로 구분됩니다.

| 구 분  | 유형1 : 전투/기술<br>숙련인력(1만명) | 유형2 : 첨단장비<br>전문인력(3만명) |
|------|--------------------------|-------------------------|
| 복무기간 | 6 ~ 18개월<br>연장복무         | 입대 시부터 3년간<br>복무        |
| 활용분야 | 분대장, 레이다,<br>정비병 등       | 차기전차, KDX-III,<br>유도탄 등 |

※ '08년 2,000명을 시작으로 매년 2~3,000명씩  
증원, '20년부터 4만명 수준 유지

- 계급은,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현행의 병계급(이병~병장)과 동일하며, 연장복무기간에는 하사계급이 부여됩니다.
- 보수는, 연장복무기간에 월 120만원 수준이며, 유형“2”的 경우는 입대 시부터 3년간 복무에 따른 별도의 장려수당이 지급됩니다.
- '08년 제도 도입에 따라, 2007년 11월 26일부터 각군과 병무청을 통해 모집공고 및 지원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 새로이 도입되는 유급지원병제를 통해 우수 기술인력을 군에서 활용함으로써 군 전투력 강화

는 물론, 기술수준이 향상된 인력을 산업체에 환원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군 전염병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보건정책팀 (☎ 02-748-6649)

- '08. 10월 시행예정으로 개발될 “군 전염병 정보관리시스템”은 국내 발생하는 법정전염병에 대한 신고업무가 전산화되어 사람간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전염병의 연중감시가 가능케 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전염병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이는 현재 군에서 사용하는 국방의료정보시스템(Defense Medical Information System, DEMIS)과 연결하여 진료 중 전염병 환자를 발견한 경우 군의관의 진료용 컴퓨터로 바로

보고가 가능케 하여 기존 수기방식 신고보다 업무부담을 크게 경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시스템은 국가전염병감시체계를 구축한 질병관리본부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내실있게 구축할 것입니다.

### 4. 군 응급환자 지원센터 운영

국방부 의무사령부 응급환자지원센터 (☎ 1688-5119)

- '07년 5월부터 군 장병 및 군인가족의 응급 환자 발생시 신속한 원격 응급처치 지도 및 후송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예방과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는 군 응급환자 지원센터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 군 응급환자 지원센터 개설로 군 장병 및 군인가족의 질병상담,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처

치 원격지도와 후송안내, 환자 혈액수급 등을 지원함으로써 군 장병 및 군인가족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군의무사령부가 통제하는 ‘군 응급환자 지원센터’에서는 희귀혈액 지원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 군 응급환자 지원센터 운영 개요 >

- 대상 : 전 장병 및 군인가족
- 지원내용
  - ① 환자상담 : 발생환자 응급처치 원격지도 및 예후 상담 / 질병 안내
  - ② 후송지원 : 환자 상태에 따라 최기지역 헬기, 구급차 지원
  - ③ 혈액지원 : 수술시 희귀혈액 지원
- 군 장병 및 군인가족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  
※ 단, 희귀혈액지원은 전 국민까지 확대 지원

#### 5. 국립이천호국원 개원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선양정책과 (☎  
02-2020-5255)

- ’08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와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에 ‘국립이천호국원’이 개원될 예정입니다(안장업무 개시일은 별도 지정).

- 국립이천호국원은 참전유공자와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이 사망했을 때 화장하여 안장할 수 있는 현대식 야외납골 시설로 조성된 국립묘지로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안장 편의를 제공하고 명예선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 \* 국립이천호국원 현황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산 26-1번지
- 규모 : 면적 304,444m<sup>2</sup>, 안치능력 약 5만기(야외 납골)
- 총사업비 : 383억원(국비 328, 재향군인회 55)
- 공사기간 : '02 ~ '07년
- 안장대상 :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군 장기복무자, 전·공상군경, 전몰·순직군경, 무공수훈자

#### 6. 독립기념관 관람료 무료화 시행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현충시설과 (☎

02-2020-5157)

-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계기로 '87년 국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독립기념관의 관람료를 '08년 1월부터 무료화 하였습니다.
- 관람료 무료화와 함께 더욱 많은 국민이 즐겨 찾는 역사 체험공간으로 자리 매김해 나가기

위해 독립기념관의 7개 전시관을 연차적으로 재개관 하는 등 활성화사업(421억원, '06~'10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현행 입장료 및 관람료의 기준

| 구 분         | 금 액    |        | 비 고   |
|-------------|--------|--------|---|
|             | 일 반    | 단 체    |   |
| 어 른         | 2,000원 | 1,500원 | ○ 19세~64세   |
| 청소년         | 1,100원 | 700원   | ○ 13세~18세(중·고교생)  |
| 어린이<br>· 군경 | 700원   | 500원   | ○ 어린이 : 7세~12세<br>○ 군 경 :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하사 이하의 군인, 사관생도 및 경찰대학생, 전투 및 의무경찰, 경비교도 |

※ 단체는 30인 이상

#### 7. 고엽제환자 지원 강화

국가보훈처 복지의료국 의료지원과 (☎

02-2020-5282)

- '07년 12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만성골수성백혈병 추가, 법의 시효('07.12.31.)를 '12.12.31.까지 5년 연장, 고엽제2세환자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생략,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후에도 교육·취업지원 실시,(사)고엽제전우회를 공법단체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고엽제전우회가 공법단체인 애국단체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시효연장, 만성골수성백혈병의 고엽제후유증 추가, 법개정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에게 교육·취업 지원 계속 실시 등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고엽제법 주요개정 내용 >

□ 시행시기 : '07. 12월 공포·시행

□ 배경

\* 고엽제 3차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추가하고 법의 시효를 5년 연장하는 한편, 법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주요개정내용

- ①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에 추가(고엽제후유증 질병 14개⇒15개로 확대)
- ② 법의 시효를 '12.12.31까지 5년 연장(현행법은 '07.12.31.시효만료)
- ③ 고엽제2세환자의 등록절차 간소화(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생략)
- ④ 법개정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에게 교육·취업지원 계속 실시
- ⑤ (사)고엽제전우회를 공법단체로 인정

## 8. 전직지원금 제도 시행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취업과 (☎  
02-2020-5324)

- '08년 1월 1일부터 군인연금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 지급제도를 시행합니다.
- 지급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10년 이상~20년 미만)으로서 전역 후 6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며, 수급기간 중 취업·창업 시에는 잔여기간 지급분의 1/2을 일시 지급합니다.

- 군인연금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취·창업등 전직활동에 전념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전직지원금 지급제도 개요 >

- **지급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10년 이상~20년 미만)으로서 전역 후 6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금액 및 지급기간 :**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 \* 수급기간 중 취업·창업 시에는 잔여기간 지급분의 1/2 일시 지급
- **지급신청 방법 :** 전국 보훈관서 및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예금통장 사본 첨부)를 제출하면,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실업상태 및 구직활동을 확인하고 지급
  - \* 보훈관서에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먼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9.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본인의  
질병명에 대한 비공개요청제도 마련**

병무청 동원소집본부 공개심사팀 (☎  
042-481-2777)

□ '08년 1월부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시 신고의무자 본인의 경우에도 직계비속과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질병명 및 심신장애 사유 등에 대하여 비공개 요구가 가능합니다.

○ 이 제도 시행을 통해 수치성 질환 등 질병명이나 심신장애사유를 타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 해·공군병 모집일원화 시행**

병무청 해·공군모집일원화 추진단(☎  
042-481-3072)

□ 해군(해병대포함), 공군에서 모집하고 있었던 병 모집 업무를 '08년 1월부터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08년 7월부터 병무청에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 '08. 1. 1 ~ 6. 30 : 일부분야만 병무청에서 시험모집

※ 해군 : 조리, 이발, 기관, 의무  
공군 : 기계, 차량정비, 통신전자전기, 방공포

- '08. 7. 1. 이후 : 모든 분야를 병무청에서 모집

□ 그동안 육군병은 병무청에서 모집하고 해군(해병대포함), 공군병은 각 군에서 모집함으로써 창구의 다원화로 의무자들에게 불편을 주었으나, 육·해·공군병 모집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병력충원체계를 구축하고 신세대 의무자들에게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II. 부처별 제도 및 법규 신·구대비표

## < 재정경제부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 선택 적용 | <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비 세액공제<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 : 증가분방식</li> <li>○ 중소기업 :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중 큰 것 선택</li> </ul>         | <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에 대해서도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중 큰 금액 선택적용</li> <li>* 증가분방식 : [당해연도 지출한 R&amp;D비용 - 직전 4년간 지출한 R&amp;D비용의 평균액] × 40%(대학등에 위탁비용은 50%)를 공제하는 방식</li> <li>* 당기분방식 : 당해연도 지출한 R&amp;D비용 × 최대 6%(3% + 매출액 대비 R&amp;D 비율의 1/2)를 공제하는 방식</li> </ul> | 조세특례제한법 ('08.1.1 시행)<br>※ 국회심의중 | 조세지출예산과 (02-2150-9131) |
| 2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인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li> </ul>  | 조세특례제한법 ('08.1.1 시행)<br>※ 국회심의중 | 조세지출예산과 (02-2150-9131) |
| 3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개선 자동화시설</li> <li>-전자상거래설비 등</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관리 정보시스템 설비</li> <li>- 모바일터치 카드결제 단말기(RFdongle)</li> <li>- USN시스템설비</li> <li>- 서비스로보트</li> </ul> </li> </ul>   | 조세특례제한법 ('08.1.1 시행)<br>※ 국회심의중 | 조세지출예산과 (02-2150-9131) |
| 4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 공제율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금액의 3%</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율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금액의 3% → 7%</li> </ul> </li> </ul>  | 조세특례제한법 ('08.1.1 시행)<br>※ 국회심의중 | 조세지출예산과 (02-2150-9131) |
| 5  | 제3차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의 50%이상을 지출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직년연도에 지출한 제3차물류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초과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li> </ul>  | 조세특례제한법 ('08.1.1 시행)<br>※ 국회심의중 | 조세지출예산과 (02-2150-9131) |
| 6  |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소득발생후 4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 감면</li> </ul>   | 조세특례제한법 ('08.1.1 시행)            | 조세지출예산과 (02-2150-9132)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 국회심의중                                     |                        |       |                     |     |                     |     |           |     |   |      |    |           |    |                     |     |                     |     |           |     |                              |                      |
| 7                   |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신설                          | <신 규>   |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조광권)을 취득하거나, 광업권(조광권)을 소유하고 있는 해외법인에 지분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3%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08.1.1 시행)<br>※ 국회심의중             | 조세지출예산과 (02-2150-9132) |       |                     |     |                     |     |           |     |   |      |    |           |    |                     |     |                     |     |           |     |                              |                      |
| 8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조정                           |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000만원이하</td> <td>8%</td> </tr> <tr> <td>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td> <td>17%</td> </tr> <tr> <td>4,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td> <td>26%</td> </tr> <tr> <td>8,000만원초과</td> <td>35%</td> </tr> </tbody> </table> | 과세표준   | 세율  | 1,000만원이하              | 8%    | 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 | 17% | 4,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 | 26% | 8,000만원초과 | 35% |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200만원이하</td> <td>8%</td> </tr> <tr> <td>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td> <td>17%</td> </tr> <tr> <td>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td> <td>26%</td> </tr> <tr> <td>8,800만원초과</td> <td>35%</td> </tr> </tbody> </table>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이하 | 8% |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 17% |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 26% | 8,800만원초과 | 35% | 소득세법 ('08.1.1 시행)<br>※ 국회심의중 | 소득세제과 (02-2150-9141) |
| 과세표준                | 세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만원이하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 | 26%                                      |   |  |   |                        |       |                     |     |                     |     |           |     |   |      |    |           |    |                     |     |                     |     |           |     |                              |                      |
| 8,000만원초과           | 35%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표준                | 세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0만원이하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 26%                                      |   |  |   |                        |       |                     |     |                     |     |           |     |   |      |    |           |    |                     |     |                     |     |           |     |                              |                      |
| 8,800만원초과           | 35%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 <소득공제대상 추가>   | 방과후학교 수업료<br>학교급식비<br>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  | 소득세법 ('08.1.1 시행)<br>※ 국회심의중                | 소득세제과 (02-2150-9141)   |       |                     |     |                     |     |           |     |   |      |    |           |    |                     |     |                     |     |           |     |                              |                      |
| 10                  | 출산·입양 소득공제 신설                            | <신 설>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당해연도에 한하여 해당 자녀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소득세법 ('08.1.1 시행)<br>※ 국회심의중                | 소득세제과 (02-2150-9141)   |       |                     |     |                     |     |           |     |   |      |    |           |    |                     |     |                     |     |           |     |                              |                      |
| 11                  |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 비과세함 | <신 설>   |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 비과세함   | 소득세법 ('08.1.1 시행)<br>※ 국회심의중                | 소득세제과 (02-2150-9141)   |       |                     |     |                     |     |           |     |   |      |    |           |    |                     |     |                     |     |           |     |                              |                      |
| 12                  | 장기보유특별공제                                 | 산   | <input type="checkbox"/> 장기보유특별공제  | <input type="checkbox"/> 3년이상 보유시 매년 3%씩 공제 | 소득세법 제95조              | 재산세제과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정방식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 5년 : 양도차익의 10%</li> <li>○ 5년 ~ 10년 : 15%</li> <li>○ 10년 이상 : 30%</li> <li>○ 15년이상 1세대1주택 : 45%*</li> </ul> <p>* 1세대1주택에만 적용하며, 토지 양도차익은 최대 30%까지만 공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 10%</li> <li>○ 4년 : 12%</li> <li>⋮</li> <li>○ 9년 : 27%</li> <li>○ 10년 : 30%</li> <li>○ 11년 : 33%</li> <li>⋮</li> <li>○ 14년 : 42%</li> <li>○ 15년~ : 45%</li> </ul> <p>※ 공제대상 및 한도는 현행 유지</p> | ('08.1.1 시행)<br>※ 국회심의중                       | (02-2150-9221)          |
| 13 |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제 개선 | <input type="checkbox"/> 해외부동산 양도시 적용세율<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유기간 2년이상 : 9~36%</li> <li>○ 1~2년 : 40%</li> <li>○ 1년미만 : 50%</li> </ul><br><input type="checkbox"/> 해외부동산도 국내부동산과 같은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차익의 10%~30%</li> </ul> | <input type="checkbox"/>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9~36%로 단일화   | 소득세법<br>제118조의5<br>('08.1.1 시행)<br>※ 국회심의중    | 재산세제과<br>(02-2150-9221) |
| 14 |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 상향조정   | <input type="checkbox"/>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억원(10년간 합산)</li> </ul>   |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상향조정<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억원</li> </ul>  | 상속세 및 증여세법<br>제53조<br>('08.1.1 시행)<br>※ 국회심의중 | 재산세제과<br>(02-2150-9212) |
| 15 | 상속·증여세 물납제도 보완       | <input type="checkbox"/> 상속·증여세 물납 대상재산  | <input type="checkbox"/> 물납제도 개선<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납대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li> </ul>  | 상속세 및 증여세법<br>제73조<br>('08.1.1 시행)            | 재산세제과<br>(02-2150-9212) |

| 번호 | 제 목                  | 종 친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부동산 및 유가증권  | -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용   | * 국회심의중                                   |                      |
| 16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완화   | <input type="checkbox"/> 주식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br><br>○ 대상: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br><br>* 소액주주의 범위<br>- 상장(코스닥)법인: 지분율 1% 미만 + 액면 3억원미만 + 시가 100억원 미만<br><br>- 비상장 법인: 지분율 1% 미만 + 액면 5백만원 이하 | <input type="checkbox"/> 상장·코스닥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완화<br><br>○ 대상 :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 법인세법 제119조 ('08.1.1 시행)<br>* 국회심의중        | 재산세제과 (02-2150-9221) |
| 17 |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제도 시행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br><br>○ 대상 :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br><br>○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수입·지출의 범위<br><br>-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이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되는 경우<br><br>-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경우<br><br>- 인건비·임차료 지급 등<br><br>○ 의무위반시 가산세 부과<br>- 미사용금액의 0.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의2 ('08.1.1 시행)<br>* 국회심의중 | 재산세제과 (02-2150-9212) |
| 18 | 부가가치세법상 가공·          |  | ○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2%  | 부가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제과              |

| 번호 | 제 목                     | 종 친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위장세금계산서 수취<br>가산세 제도 신설 | <신 설>                                     |  | ('08.1.1시행예정)<br>※ 국회심의중              | (02-2150-9236)            |
| 19 | 면세유 부정유통시 가산<br>세율 인상   | 면세유 부정유통시 감면세액의<br>10% 가산세 부과             | ○ 가산세율을 40%로 인상  | 조세특례제한법<br>※ 국회심의중                    | 부가가치세제과<br>(02-2150-9333) |
| 20 | 면세유 공급중단<br>제도 강화       | 면세유 부정유통시 1년간 면세<br>유 공급 중단               | ○ 공급중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농어민이 농어<br>업 기계를 허위신고한 경우 공급중단대상에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br>※ 국회심의중                    | 부가가치세제과<br>(02-2150-9333) |
| 21 | 조합의 면세유 관리 강화           | 면세유 부실관리시 감면세액상<br>당액의 10% 가산세 부과         | ○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리부실은 가산세율<br>을 40%로, 기타 관리부실은 가산세율을 20%로 인<br>상                         | 조세특례제한법<br>※ 국회심의중                    | 부가가치세제과<br>(02-2150-9333) |
| 22 | 면세유 취급주유소에 대한<br>관리강화   | <신 규>                                     | ○ 면세유취급주유소를 신청받아 지정토록 하고, 주유소가<br>면세유 부정유통에 개입시 3년간 면세유 취급 정지                              | 조세특례제한법<br>※ 국회심의중                    | 부가가치세제과<br>(02-2150-9333) |
| 23 | 감면세액 환급신청자 변경           | 정유사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세<br>무서로부터 환급받아 주유소에<br>지급 | ○ 주유소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세무서에 직접 환급<br>신청  | 조세특례제한법<br>※ 국회심의중                    | 부가가치세제과<br>(02-2150-9333) |
| 24 | 면세금지금 일몰연장<br>및 확대      | ○ 2007.12월말까지 면세 금지<br>금 제도 운영<br><신 규>   | ○ 3년 연장하여 2010년까지 연장 운영<br>○ 금융기관이 세공업자에게 판매하는 금지금에 대하<br>여 면세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br>※ 국회심의중                    | 부가가치세제과<br>(02-2150-9333) |
| 25 |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 <신 규>                                     | ○ 금지금 등 금관련 제품에 대하여 매입자 납부제<br>도 운영<br>*매입자가 금 구입시 물품가액과 부가세를 금거래<br>계좌를 이용하여 납부           | 조세특례제한법<br>(2008. 7. 1 시행)<br>※ 국회심의중 | 부가가치세제과<br>(02-2150-9333) |
| 26 |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br>액 공제    | <신 규>                                     | ○ 금 소매상 등이 고금 취득시 취득가액의 3/103을<br>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br>(2008. 7. 1 시행)<br>※ 국회심의중 | 부가가치세제과<br>(02-2150-9333) |
| 27 | 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br>출      | <신 규>                                     | ○ 금지금 제련업자가 금지금 제련하여 반출시 금지<br>금 제조반출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br>○ 금지금 수입시 세관장이 금지금 수입내역을 과세<br>관청에 송부 | 조세특례제한법<br>(2008. 7. 1 시행)<br>※ 국회심의중 | 부가가치세제과<br>(02-2150-9333) |
| 28 | 제주내국인면세점 이용범            | 1인당 40만원, 연간 4회                           | 1인당 40만원, 연간 6회  | 조세특례제한법                               | 부가가치세제과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위 확대                      |  |  | * 국회심의중<br>(02-2150-9333)                |                           |
| 29 | 사립대학 민자사업<br>부가세 감면 일몰 연장 | ○ 2007.12월 말까지 적용  | ○ 3년 연장하여 2010년까지 연장 운영  | 조세특례제한법<br>※ 국회심의중<br>(02-2150-9333)     | 부가가치세제과<br>(02-2150-9242) |
| 30 | 특별소비세 명칭 변경               | <input type="checkbox"/> 특별소비세   | <input type="checkbox"/> 개별소비세로 명칭 변경  | 개별소비세법<br>('08.1.1 시행)<br>※ 국회심의중        | 소비세제과<br>(02-2150-9242)   |
| 31 | 등유세율 인하                   | <input type="checkbox"/> 등유세율<br><br>○ 리터당 181원  | <input type="checkbox"/> 등유세율 인하<br><br>○ 리터당 90원  | 개별소비세법<br>제1조<br>('08.1.1 시행)<br>※ 국회심의중 | 소비세제과<br>(02-2150-9243)   |
| 32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br>경차범위 확대    | <input type="checkbox"/> 경차 범위<br><br>○ 배기량 800시시  | <input type="checkbox"/> 경차 범위 확대<br><br>○ 배기량 1,000시시   | 개별소비세법 제1조<br>('08.1.1 시행)<br>※ 국회심의중    | 소비세제과<br>(02-2150-9242)   |
| 33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 상표권 침해물품과는 달리 저작<br>권 위반물품은 수출·입자가<br>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통관이<br>허용될 수 있음  | ○ 저작권에 대한 보호수준을 상표권과 동일하게 규정<br>- 저작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출입금지 조항을 명문<br>화하고,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세관장<br>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br>저작권 보호 강화                       | 관세법<br>('08.1.1 시행)<br>※ 국회심의중           | 관세제도과                     |
| 34 | 해외 이사물품에 대한<br>관세면세 제도 개선 | ○ 해외 이사물품중 고급가구,<br>고급용단, 42인치 초과 TV<br>등에 대하여는 품목별로 1개<br>까지만 면세<br><br>○ 해외 이사물품중 면세 제외<br>물품<br>- 항공기, 선박, 자동차<br>- 100만원 이상 보석류<br><br>○ 해외 이사물품중 관세면세<br>요건<br>- 입국전에도 사용하였고 입국 | ○ 품목별로 개수를 제한하여 면세하는 규정을 폐지하<br>고, 가정용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폭넓게 면세 허<br>용<br><br>○ 해외 이사물품중 면세 제외물품<br>- 항공기, 선박, 자동차<br>- 200만원 이상 보석류<br><br>○ 해외 이사물품중 관세면세 요건 | 관세법<br>시행 규칙<br>(08.1.1 시행)<br>※ 국회심의중   | 관세제도과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후에도 계속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 입국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   |  |                         |
| 35 | 보세공장 제도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원료과세를 신청할 경우 원재료 반입 시마다 건별로 신청</li> <li>○ 보세공장에서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 관세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최초 수입신고한 보세공장에 반입하여야 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세공장 수입물품에 대한 원료관세 신청시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li> <li>○ 보세공장에서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 최초 수입신고한 보세공장이 아닌 보세공장에 반입하더라도 관세환급 가능</li> </ul>  | 관세법<br>('08.1.1 시행)<br>※ 국회심의중         | 관세제도과<br>(02-2150-9321) |
| 36 | 수입물품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간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br/>&lt;종전&gt;<br/>-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li> <li>- 정부가 수입하는 물품, 수출용원재료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br/>&lt;개정&gt;<br/>○ 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않은 물품<br/>&lt;신설&gt;<br/>○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br/>&lt;기타 현행과 같음&gt;</li> </ul> | 관세법<br>시행 규칙<br>(08.1.1 시행)<br>※ 국회심의중 | 관세제도과                   |
| 37 | 한·아세안 FTA 상품 협정 이행 확대(필리핀, 브루나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은 2007. 6. 1부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및 미얀마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br/>- 국내 이행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에 대하여는 동 협정 발효 유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1.1부터 필리핀 및 브루나이와도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시행됨<br/>- 따라서 2008.1.1부터 이들 국가와의 교역물품은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가 적용됨</li> </ul>   | ※ 국회심의중                                |                         |
| 38 | 종합부동산세 납부방                       |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   | <input type="checkbox"/> 정부부과   | 종합부동산세법                                | 부동산실무기획단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식을 신고납부에서 정부부과로 전환           | ○ 납세자가 신고납부 | ○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br>○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신고납부 가능  | ('08.1.1 시행)                         | (02-2150-9261)              |
| 39 |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보유세 경감       | 신규          | <input type="checkbox"/> 보유세 경감<br>○ 공장이전 後 구공장부지에 대해 공장이전 前과 동일하게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 종부세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08.1.1 시행)<br>※ 국회심의중      | 부동산실무기획단 (02-2150-9261)     |
| 40 | 향교, 종교단체의 부동산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 | 신규          | <input type="checkbox"/> 실질과세<br>○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인 개별향교 및 개별단체별로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08.1.1 시행)<br>※ 국회심의중      | 부동산실무기획단 (02-2150-9261)     |
| 41 | 근로장려세제 시행                    | <신 규>       | ○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한만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08년부터 시행<br>○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첫 근로장려금이 '09년에 지급될 예정   | 조세특례제한법 ('06.12.30 개정<br>'08.1.1 시행) | 근로장려세제추진 기획단 (02-2150-9416) |
| 42 | 소비자 단체소송 시행                  | <신 규>       | ○ 법정 요건을 갖춘 단체는 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br><br>※ 소비자기본법 20조<br><br>제20조 (소비자의 권리증진 관련기준의 준수)<br>① 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br>② 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br>③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07.3.28)            | 소비자정책과 (02-2150-2161)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 <p>④ 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
| 43 |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감면 대상을 제조·관광·물류·의료기관으로 한정</li> <li>○ 특별공급주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외투기업 종사자로 제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감면대상에 R&amp;D업종을 추가(변경)</li> <li>○ 맞춤형 조세인센티브제 도입 검토(신규)</li> <li>○ 외국대학이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등 초기 운영비 최장 5년까지 국비지원(신규)</li> <li>○ 특별공급주택 대상자를 국제기구 종사자도 포함(변경)</li> <li>○ '외국인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격·임대보증금·임대료 등의 특례 마련(신규)</li> </ul> | 경제자유구역의<br>지정 및 운영에<br>관한 법률<br>('08.6.8 시행)   | 경제자유구역기획단<br>기획총괄팀<br>(02-2150-9933) |
| 44 | 휴면예금 관리재단 설립·운영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으로부터 휴면예금을 자율적으로 출연 받아 마이크로크레딧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지원</li> </ul>   | 휴면예금관리재단의<br>설립 등에 관한 법률<br>('07.8.3 공포,<br>'08.2.4 시행)                              | 금융정책국<br>금융정책과<br>(02-2150-9651)     |
| 45 |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해진 기관에 신고절차를 마친 후에 투자금 지급 가능</li> <li>○ 부동산 매매가 확정된 이후에만 송금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투자 신고 전에도 투자금액의 일부(최대 1만 불)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3개월 이내에 정식신고를 할 경우, 허용</li> <li>○ 계약성사 이전에도 예비신고 후 청약금 등을 매입예정 액 10% 이내(10만불 상한)에서 사전송금 가능</li> </ul>  | 외국환거래규정<br>개정완료<br>('07.12월 시행)  | 국제금융국<br>외환제도혁신팀<br>(02-2150-2541)   |
| 46 | 외환송금시 제출서류 간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에서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거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증서류 제출의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5만불 범위(건당 1천불 이상만 합산)에서 해외송금시 증빙서류 불필요</li> <li>○ 전년도 5천만불 이상 수출입 기업의 무역대금 송금</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1.1 시행</li> <li>○ '07.12월 시행</li> </ul> | 국제금융국<br>외환제도혁신팀<br>(02-2150-2541)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47 | 해외유학생<br>경비사용 절차 및<br>송금절차 개선 |     | <p>시에는 서류제출 면제 및 온라인 자료 거래증빙 범위 확대</p> <p>○ 유학생 계좌를 통하여 해외유 학생의 현지경비를 송금하는 경우 국내 예금계좌에 연계된 신용 · 현금카드 사용 제한</p> <p>○ 국적이 외국인인 자녀의 경우 제도상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한 “해외유학생”에 포함되지 않아 송금이 불편</p> | <p>※ 외국환거래규정<br/>개정완료</p> <p>외국환거래규정<br/>개정완료<br/>('07.12월 시행)</p>          | <p>국제금융국<br/>외환제도혁신팀<br/>(02-2150-2541)</p> |   |
| 48 | 해외이주비 송금절차 개선                 |     | <p>○ 실질적으로 해외이주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송금 제한</p> <p>* 은퇴비자, 투자비자 등을 발급받아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p>  | <p>○ 이주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거나, 아직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해외이주비 송금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p> | <p>외국환거래규정<br/>개정완료<br/>('08.1.1 시행)</p>    | <p>국제금융국<br/>외환제도혁신팀<br/>(02-2150-2541)</p> |

## < 교 육 인 적 자 원 부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대학에서는 전문학사학위만 수여할 수 있었으며, 전공심화 과정은 비학위과정으로 제한되어 있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대학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과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 설치 가능</li> <li>○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은 '전공심화과정과 동일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유관 분야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임</li> <li>○ 학사학위는 전문대학 졸업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으며, 2년제 학과의 경우 2년, 3년제 학과는 1년 이상의 수업연한을 채우면 됨</li> </ul>                | <p>고등교육법 개정 완료('07.7.13 공포, '08.1.1 시행)</p> <p>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완료 ('07.11.15 공포, '08.1.1. 시행)</p> | 전문대학정책과 (02-2100-6460) |
| 2  | 민간자격 등록제 시행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자격관리·운영기관은 교육인적 자원부가 지정하는 등록관리기관에 해당 자격 등록 의무화</li> <li>* 등록제 고려 대상 추정 민간자격은 약 800여개 정도이며 이중 71개 자격이 국가공인을 취득하였음</li> <li>* 민간자격 등록절차는 등록관리기관 지정(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등록 신청 → 신설 금지분야 해당 여부 확인(중앙행정기관장) → 등록증 발급</li> </ul>   | 자격기본법 시행령 ('07.10.28 시행)   | 인력수급팀 (02-2100-6425)   |
| 3  |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 시행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처별로 소관 자격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며, 자격이 없는 분야는 각 부처 소관업무에 속하는 영역에 대해 개발</li> <li>○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은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력 수요를 표준화하는 작업</li> <li>*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li> <li>○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초로 '교육훈련과정'이 연계 개발됨으로써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적자원 양성 및 능력개발이 가능</li> </ul> | 자격기본법 제5조,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9조 ('08. 4. 28 시행)  | 인력수급팀 (02-2100-6424)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계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근로자의 채용 기준 및 인사배치, 경력개발 기준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함</li> </ul>   |  |                         |
| 4  | 산학협력기술<br>지주회사 제도 시행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산학협력단이 자본금의 50% 이상을 기술출자하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가능</li> <li>○ 자본금의 50% 이상을 기술로만 현물출자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기술이외의 현금 또는 현물출자를 허용</li> </ul> | 산업교육진흥 및<br>산학협력촉진에<br>관한 법률과 동법<br>시행령·시행규칙<br>('08.2.4 시행) | 산학연계팀<br>(02-2100-6435) |

## < 과학기술부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원자력 수출입통제 시스템 구축·운영 (www.NEPS.go.k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물질 및 원자력전용품목에 대한 수출입 허가(승인), 보고 등에 대해 오프라인으로 신청·처리</li> <li>○ 통관을 위해 허가서를 세관에 직접 제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을 위해 오프라인(공문/신청서)으로 처리하던 업무를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www.NEPS.go.kr)</li> <li>○ 원자력전용품목(전략물자) 및 핵물질 수출입 허가(승인)에 대한 정보를 관세청 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 통관정보 공유</li> </ul>   | 원자력법,<br>대외무역법,<br>기술개발촉진법   | 원자력국<br>원자력통제팀<br>(02-2110-3697)  |
| 2  |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 스스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30개 이상의 원천융합기술을 개발하는 High-Risk, High-Return형 미래유망 파이오니어사업 추진</li> <li>○ 과학기술부는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고, 성실실패를 인정하는 등 융합기술 개발에 필요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연구 환경 조성</li> </ul>   | 미래유망 융합기술<br>파이오니어 사업<br>운영관리지침 제정 추진<br>('07.12월 말 공포,<br>'08.4월 시행)  | 기초연구국<br>원천기술개발과<br>(02-509-7753)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의 본격적 운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STAR, ITER 등 핵융합 연구개발사업을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따라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대과학으로서 핵융합 연구개발사업의 특수성 반영 미흡</li> </ul> </li> <li>○ KSTAR·ITER 등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을 프로젝트 중심의 사업단 체계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기획평가 등을 수행</li> </ul> </li> <li>○ KSTAR 장치 제작을 위한 주요장치 개발·설치 및 완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ER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기반 구축, 사업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한 'ITER 사업 처리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추진의 책임성, 효율성 제고</li> </ul> </li> <li>○ 핵융합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하여 기획·평가 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기획, 평가업무의 제도화)</li> <li>○ KSTAR 장치가 '07년 성공리에 완공되고, '08년 하반기 최초 플라즈마를 발생시킴으로써 핵융합 상용화를 위한 핵융합연구개발사업 본격화 추진</li> </ul> | <p>ITER 사업<br/>처리운영 규정<br/>제정('07.12 시행)</p> <p>핵융합사업단<br/>운영('08.1 시행)</p> <p>최초 플라즈마<br/>발생('08.12 시행)</p> | 핵융합지원과<br>(02-509-7772)           |

\*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 차세대초전도핵 융합연구장치

\*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 국제핵융합실험로

## < 법무부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국민참여재판<br>제도 시행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죄가 있는지,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li> </ul>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08.1.1 시행)                          | 법무부<br>형사법제과<br>(02-504-4001)  |
| 2  |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제에 따른 호적제도로 신분 및 가족관계를 증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 사용</li> <li>○ 본적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li> </ul>   |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완료 ('07. 5. 17 공포, '08. 1. 1. 시행) | 법무부<br>법무심의관실<br>(02-503-7034) |
| 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시행           |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 부과에 책임주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의·과실, 위법 인식가능성을 과태료 성립요건으로 함</li> </ul> </li> <li>○ 법적 안정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 소멸시효·제한기간 규정(5년), 행위시법주의 도입</li> </ul> </li> <li>○ 과태료 부과·징수·재판·집행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li> <li>○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방안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관행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제재수단 도입</li> </ul> </li> </ul>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제정 완료 (07. 11. 국회통과)                          | 법무부<br>법무심의관실<br>(02-503-7034) |
| 4  |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 합의가 없더라도 협의이혼이 가능</li> <li>○ 혼인, 약혼 가능연령이 남녀 차등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이혼 시 자녀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 합의 없이는 협의이혼 불가능</li> <li>○ 이혼숙련기간 도입 - 이혼 전 일정기간동안 상담 등을 통해 이혼을 재고할 기회 부여</li> <li>○ 혼인 및 약혼 가능 연령 조정 -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 모두 18세로 통일</li> <li>○ 부부재산제도 개선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행위취소권 신설</li> <li>○ 자녀의 부모 면접교섭권 인정 -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도 인정</li> </ul>  |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 완료 ('07. 11. 국회 통과)                        | 법무부<br>법무심의관실<br>(02-503-7034) |

| 번호 | 제 목                           | 종 친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5  | 일반인의 소송기록 열람 제도 시행            | ○ 사건관계인만 소송기록 열람이 가능                      | ○ 일반인의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에 의한 민사환경재판기록 열람권 보장<br>○ 법원이 서증조사, 문서송부촉탁을 하는 경우에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협조 의무 규정   | 민사소송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 완료 ('07. 4. 국회통과 '08. 1. 시행)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503-7034) |
| 6  | 전자정보 송수신에 의한 어음·수표 지급제시 제도 시행 | <신 규>                                     | ○ '07. 11.부터 어음, 수표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정보로 송수신하는 것도 어음, 수표의 지급제시로 인정   | 어음법, 수표법 ('07. 11. 시행)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502-4127)  |
| 7  | 전산정보처리를 통한 상업등기 업무 수행         | <신 규>                                     | ○ '08. 1.과 8.부터 전산정보처리를 통해 상업등기 업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 절차법 개정안 시행<br>○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의 열람, 교부청구와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br>○ 회사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관할 등기소간의 전산 정보 송부 및 통지로 등기절차를 대체   | 상업등기법 ('08. 1. 시행)<br><br>비송사건 절차법 ('08. 8. 시행)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502-4127)  |
| 8  | 전자선하증권 제도 시행                  | <신 규>                                     | ○ 송하인 및 용선자의 청구에 따라 해상운송인은 서면전자 선하증권 대신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음<br>○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에 이용자가 등록하여 발행·유통할 수 있도록 함<br>* 전자선하증권 제도 도입은 2007. 8. 3. 공포된 개정 상법(해상편)에 따른 것이며, 전자선하증권의 등록기관 지정 및 발행·유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 중에 있음<br>* 미국, 호주 등 국가별로 전자무역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바 '서류없는 무역(Paperless Trade)'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상법 제862조 ('08. 8. 시행)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502-4127)  |
| 9  | 해운강국에 걸맞는 상법(해상편) 시행          | ○ 여객손해관련 책임한도액 = 여객정원×46,666 SDR (약 7천만원) | ○ 여객손해관련 책임한도액 상향 = 여객정원×87,500 SDR<br>* 2011년 8월 이후부터 여객정원×175,000 SDR(약 2억원) 적용  | 상법 제770조제1항 / 부칙 제4조 ('08. 8. 시행)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502-4128)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송인의 책임한도액<br/>= 매 포장당 · 선적단위<br/>× 500 SDR(약 75만원)</li> <br/> <li>○ 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br/>이 혼재되어 규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및 중량당 책임도<br/>입<br/>= 매 포장당 · 선적단위 × 600 SDR(약 90만원) 또<br/>는 중량 1kg당 2 SDR 중 큰 금액<br/>* 중량당 책임은(1kg당 2SDR) 2011년 8월 이후부터 적용</li> <br/> <li>○ 해상운송실무상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개품운송계약과<br/>용선계약 등을 구별하여 규정</li> </ul>  | <p>상법 제797조제1항<br/>/ 부칙 제1조</p> <p>상법 제791조 내지<br/>제851조</p> |                        |
| 10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br>거주자격 부여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취업 자격으로 취업활동<br/>을 하고 있는 자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5년 이상<br/>의 기간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br/>중 아래사항 해당자는 거주자격을 부여받고 국내<br/>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에서 고시한 48개 종목의 기술 · 기능자격을 가<br/>지고 있거나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이상의 임금을<br/>받는 자</li> <li>-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고, 2,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br/>유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3급 이상의 취득한 자</li> </ul> </li> </ul> | 출입국관리법시행령<br>('08.1.1 시행)                                    | 체류정책과<br>(02-500-9072) |
| 11 | 소년법 개정법률안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법 적용 연령<br/>12세 이상 20세 미만</li> <li>○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보호관<br/>찰에 병합</li> <li>○ 신규</li> <li>○ 단기 보호관찰기간 6개월</li> <li>○ 사회봉사 · 수강명령 대상연령 각<br/>16세 이상</li> <li>○ 신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li> <li>○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활<br/>용 확대</li> <li>○ 1개월 이내의 소년원송치, 소년원 대안교육, 청소년단<br/>체 상담 · 교육, 보호자 교육, 외출제한명령 등 도입</li> <li>○ 1년</li> <li>○ 사회봉사명령 대상 14세이상, 수강명령 대상 12세<br/>이상으로 인하</li> <li>○ '국선보조인 제도' 도입</li> </ul>  | <p>소년법,<br/>08.6.22 시행</p>                                   | 보호기획과<br>(02-503-7062)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범 인권보장 강화를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기타 필요한 경우 등에 국선보조인 선임</li> </ul>   |  |                       |
|    |                       | ○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 결정 전 조사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검사가 소년사건 처리 시 소년분류심사관·보호관찰관에게 소년의 인성·환경 등 조사를 의뢰하여 그 분석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li> <li>- '검사 결정 전 조사제' 도입으로 소년사건 처리의 전문성 향상 및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법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절차 회부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하면서 비행초기 단계에서 선도·보호를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법제화</li> </ul> </li> </ul>   |  |                       |
|    |                       | ○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해권고절차 도입 및 피해자 진술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의 성행교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년부판사로 하여금 피해변상 등의 화해를 권고하는 절차 마련</li> <li>- 피해자 등에게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에서의 진술권 보장</li> </ul> </li> </ul>  |  |                       |
|    |                       | ○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행예방정책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행예방 관련 조사·연구 및 관련 정책의 수립,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의 구축 등 비행예방정책에 관한 규정 신설</li> </ul> </li> </ul>   |  |                       |
| 12 | 특정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제도 도입 시행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사범 재범방지의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2007. 4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li> <li>○ 재범위험성이 있는 특정 성폭력사범의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그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피부착 성폭력사범의 재범방지력 증대</li> </ul>  |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08.10.28. 시행) | 범죄예방정책과 (02-503-7071) |
| 13 | 소년원 출원제도 일원화 시행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원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로 가퇴원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이원화된 현행 소년원 출원제도를 퇴원·가퇴원 모두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일원화하고 '가퇴원'을 '임시퇴원'으로 용어를 수정함</li> </ul>   | 소년원법 ('08.6.22 시행)                                 | 소년보호과 (02-503-7074)   |

## < 국 방 부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연차적 단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역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군/해병대 : 24개월</li> <li>- 해군 : 26개월</li> <li>- 공군 : 27개월</li> </ul> </li> <li>○ 전환복무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경/의경 : 24개월</li> <li>- 해양전경 : 26개월</li> <li>- 의무소방원 : 26개월</li> </ul> </li> <li>○ 상근예비역 : 24개월</li> <li>○ 공익근무요원 : 26개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역병/전환복무요원/상근예비역 점진적 6개월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군/해병대/상근예비역 : 24→18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근예비역 6개월 단축을 위해 2011년 이전에 병역 범시행령 개정 예정</li> </ul> </li> <li>- 해군/해양전경/의무소방원 : 26→20개월</li> <li>- 공군 : 27→21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군병 6개월 단축을 위해 '12년 이전에 병역 범 개정 예정</li> </ul> </li> </ul> </li> <li>○ 공익근무요원 점진적 4개월 단축 : 26→22개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역법 제19조</li> <li>○ 국무회의(‘07.9.18), 대통령재가(9.19) ('08.1.1 시행)</li> </ul>  | 인사기획관실<br>인력관리팀<br>(02-748-5135) |
| 2  | 유급지원병제 도입·<br>시행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 복무기간 단축시 확보가 곤란한 전투/기술 숙련병(유형1)과 국방개혁에 따라 확대 도입되는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유형2)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li> <li>○ 복무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1 : 의무복무만료후 6~18개월 연장복무</li> <li>- 유형2 : 입대시부터 3년간 복무</li> </ul> </li> <li>○ 보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장복무기간 월120만원 수준 지급(유형1,2)</li> <li>- 유형2는 3년 복무에 따른 장려수당 추가 지급</li> </ul> </li> <li>○ 도입규모('20년 기준) : 총4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1 : 1만명 / 유형2 : 3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년 2,000명 시험운영을 시작으로 매년 2~3,000명씩 증원, '20년부터 4만명 유지</li> </ul> </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개혁에관한 법률 제15조('06.12.28 제정, '07.3.29 시행)</li> <li>○ 병역법 제20조의2 ('07.7.27 개정, '07.10.23 시행)</li> <li>○ '08.1월부터 시행</li> </ul> | 인사기획관실<br>인력관리팀<br>(02-748-5135) |
| 3  | 군인의 육아휴직제도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직신청당시 3세미만 자녀</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세 이하의 초등학교취학 전 자녀 양육여군의 임신</li> </ul> </li> </ul>   | 군 인사법   | 인사기획관실                           |

|   |                        |   |  |                                     |                                     |
|---|------------------------|---|--|-------------------------------------|-------------------------------------|
|   |                        | <p>양육/ 여군 임신 및 출산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기간 : 1년 이내</li> <li>◦ 육아휴직인원 결원보충 근거 : 부재</li> <li>◦ 육아휴직기간 진급최저복무 기간 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이내 전부산입</li> </ul> </li> </ul>  | <p>및 출산위해 필요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이내로 확대</li> </ul> </li> <li>◦ 6 개월 이상 육아휴직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원 이외로 관리</li> <li>- 단 출산휴가와 연계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도 정원이외관리</li> </ul> </li> <li>◦ 육아휴직기간 진급최저 복무기간 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경과 경우 : 최초 1년만 산입</li> </ul> </li> </ul> | ('08. 1. 1 시행)                      | 국방여성정책 팀<br>(02-748-5175)           |
| 4 | 예비군훈련 제도 / 여전<br>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근로소집 지정자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집통지 : 자원관리부대</li> <li>·여비 : 미지급</li> </ul> </li> <li>◦ 과학화장비 활용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6개 부대</li> </ul> </li> <li>◦ 예비역간부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원훈련 불참시 동미참훈련 전<br/>환</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근로소집 지정자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집통지 : 지방병무청</li> <li>·여비 : 2,000원 지급</li> </ul> </li> <li>◦ 과학화장비 활용 확대 : 전 부대</li> <li>◦ 예비역간부 훈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원훈련 불참시 재 입영훈련</li> <li>·동미참 보충훈련 입영훈련으로 전환</li> </ul> </li> </ul>  | '08 예비군교육 훈련 지침<br>('08. 1. 1 시행)   | 동원기획관실<br>예비전력관리 팀<br>(02-748-5245) |
| 5 | 군 전염병<br>정보관리시스템<br>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기방식으로 법정 전염병 신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염병 신고업무가 전산으로 자동화</li> </ul>   | 전염병예방법<br>(법률제8204호,<br>'07.1.3 개정) | 보건정책팀<br>(02-748-6649)              |
| 6 | 국군수도병원 전염병<br>격리병상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의료기관 중 전염병 격리병<br/>상 부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년 국군수도병원과 국립의료원에 총 100병<br/>상 전염병 격리병상 구축완료됨에 따라 2008년<br/>부터 SARS, 조류독감 등 발생시 격리치료 가능</li> </ul>   | 전염병예방법<br>(법률제8204호,<br>'07.1.3 개정) | 보건정책팀<br>(02-748-6649)              |
| 7 | 위탁진료 병사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의료기관 위탁치료병사에게 간병비 및 상급병</li> </ul>  | 국방부 환자관리지침                          | 보건정책팀                               |

|    |  |   |   |   |                                    |
|----|--|---|---|---|------------------------------------|
|    | 간병비 및<br>상급병실사용료<br>지급                 |   | 실사용료를 지급함으로써 장병 권익 보호 및 대<br>군 신뢰도 증진   | ('08.1.1. 시행)                               | (02-748-6648)                      |
| 8  | 수의사관 후보생<br>선발 기준 개선                   | o 선발기준을 종전, 신체등위<br>(50%), 대학수학능력시험정수<br>(25%), 수의과대학 예과 1<br>· 2학년 평균성적(25%)을 적용<br>하였음. | o 선발기준을 신체등위(50%), 수의과대학 예과 1<br>· 2학년 평균성적(50%)을 적용함.  | 수의사관 선발에 관한<br>규칙('06.10.26 국방부령<br>제607호)  | 보건정책팀<br>(02-748-6645)             |
| 9  | 경험이 풍부한<br>전문계약직의사<br>30명 국군수도병원<br>배치 | <신 규>   | o 수도병원에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전문계약직의<br>사 30명을 충원<br>o 전체 군의사의 5% 미만을 차지하던 직업의사<br>의 비율을 향후 50% 수준으로 개선하게 되는<br>시발점임<br>* 수도병원의 전체의 의사의 5% 수준을 유지<br>하고 있는 직업적 의사의 비율을 단기적으로<br>4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군 병원 진료<br>능력 향상 | 군무원 인사법<br>계약직공무원규정                         | 보건정책팀<br>(748-6788)                |
| 10 | 군 응급환자<br>지원센터 운영                      | <신 규>   | o 현역 장병 및 군인가족에게 질병상담 및<br>응급처치 원격지도, 혈액지원 등을 통해<br>군 장병 및 군인가족의 건강을 증진시킬<br>수 있는 군 응급환자 지원센터 운영<br>※단, 희귀혈액 지원은 전 국민까지 확대 지원   | '07. 5. 1부터 기<br>시행중                        | 국군의무사령부<br>응급환자지원센터<br>(1688-5119) |
| 11 | 국립서울현충원<br>충혼당 안장시간<br>변경              | 월 ~ 금(평일)<br>10:30, 16:00(2회)   | 월 ~ 금(평일)<br><u>14:00</u> , 16:00(2회)   | 국립묘지의 설치 및<br>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br>('08.1.1 시행) | 국립서울현충원<br>현충과<br>(02-826-6238)    |

## < 행정자치부 >

| 번호 | 제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br>증 재발급                 | 거주지<br>읍면동에서만<br>주민등록증<br>재발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실 등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신청<br/>           ⇒ 전국 읍·면·동에 신청 가능, 수령기관을<br/>민원인이 선택(신청지 또는 주민등록지),<br/>재발급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법시행령<br/>(‘08.1월중 공포,<br/>공포시점부터 시행)</li> </ul>                        | 주민제도팀<br><b>☎ 2100-3985</b>   |
| 2  | 주민등록과태료 경감비율<br>3/4까지 확대              | 위반행위<br>동기와 결과를<br>참작하여<br>1/2까지 경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과태료 처분<br/>시 과태료를 3/4까지 경감하여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부담 감소로 재등록 용이</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법시행령<br/>(‘08.1월중 공포,<br/>공포시점부터 시행)</li> </ul>                        | 주민제도팀<br><b>☎ 2100-3985</b>   |
| 3  | 개정 「공공기관의 개인<br>정보보호에 관한 법률」<br>본격 시행 | <개 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CCTV 설치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CTV를 설치할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안내판 설치 의무화</li> </ul> </li> <li>○ 국민들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본인정보의 열람·정정청구권 외에 “삭제청구권”을 신설</li> <li>-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 도입</li> </ul> </li> <li>○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수집, 위탁, 이용·제공, 폐기 등)을 국민들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공시도록 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의<br/>개인정보보호에 관한<br/>법률 및<br/>동법시행령·시행규칙(‘<br/>07.11.18 시행)</li> </ul> | 개인정보보호팀<br><b>☎ 2100-3535</b> |
| 4  | 인터넷 본인확인제 도입<br>에 따른 서비스 개시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또는 게시판 등록시 본인확인조치가 의무화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br/>정보보호 등에 관한</li> </ul>                                     | 표준화팀<br><b>☎ 2100-3595</b>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7.26부터 공공기관에서 홈페이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함</li> <li>○ 행자부에서는 인터넷상의 본인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본인확인 서비스” 개발·보급</li> <li>- 국민들은 인터넷상에서 행자부 G-PIN (인터넷 본인확인 센터)에 접속하여 본인확인정보 등록 후</li> <li>-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요구시 G-PIN 등록정보를 입력하여 본인확인 실시</li> </ul>   | <p>법률 ('07.1.26 개정,<br/>'07.7.26 시행)</p> <p>○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br/>('07.5.17 개정,'07.11.17 시행)</p> |  |
| 5-1 | 다른법령 또는 국가등의 공공목적 설치광고물 특례 삭제 | <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 다른 법령에 설치 근거를 두거나 국가 등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의 경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이하 동법)에 의한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금지지역 등과 관련하여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왔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 납설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됨</li> </ul> </li> <li>○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광고물 표시방법이나 금지지역에 대해 특례를 두고자 하는 경우 미리 행자부 장관과 광고물의 종류·수량·위치 등을 협의토록 하고,</li> <li>-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도록 설치 절차 강화됨</li> <li>○ 국가 등이 공공목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법에 따른 허가·신고 및 표시방법·금지지역 등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함.</li> <li>- 다만, 예외적 허용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정할 계획임</li> </ul> | <p>○ 옥외광고물등 관리법<br/>('07.12.21 시행)</p> <p>생활여건개선팀<br/>☎ 2100-6958</p>                                 |  |

|     |                                      |      |  |  |                               |
|-----|--------------------------------------|------|--|--|-------------------------------|
| 5-2 | 광고물 설명제 도입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 또는 신고한 광고물에 광고물의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토록하여 광고주 및 광고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li> </ul> </li> </ul>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07.12.21 공포<br>'08.12.21 시행) | 생활여건개선팀<br><b>☎</b> 2100-6958 |
| 5-3 | 불법광고물 철거 등 시정 명령 미이행시 영업 허가 취소 요청 가능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광고물의 철거명령 등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을 하지 않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물을 사용해서 행하는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해 허가취소 등 영업행위를 제한요청이 가능토록 개선됨</li> </ul>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07.12.21 시행)                 | 생활여건개선팀<br><b>☎</b> 2100-6958 |
| 5-4 | 전화번호와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의 광고주 파악용이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동안 전화번호 외 연락처 없는 불법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의 광고주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이 용이하지 않아 처벌이 곤란했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정보통신가입자의 인적사항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됨에 따라 불법광고물의 광고주 파악 및 처벌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li> </ul> </li> </ul>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07.12.21 시행)                 | 생활여건개선팀<br><b>☎</b> 2100-6958 |
| 6   | 특별시 관할구역 안 재산세의 공동과세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시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의 재산세를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공동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 비율(산출된 재산세액 대비) : ‘08년 40%, ’09년 45%, ’09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공동과세에서 제외</li> </ul> </li> <li>- 특별시장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분 교부</li> </ul> </li> </ul> | ° 지방세법 ('07.7.20 개정,<br>'08.1.1 시행)        | 지방세제팀<br><b>☎</b> 2100-3923   |

|   |             |                 |   |  |   |                      |
|---|-------------|-----------------|---|--|---|----------------------|
| 7 | 지방세 지원범위 확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세 분납세액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세액 1천만원</li> </ul> </li> <br/> <li>○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경우 재해 등으로 파손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만 비과세</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li> <br/> <li>○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형 승용자동차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기량 800cc 미만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li> <br/> <li>○ 면허세 비과세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소변경 등 단순 표시변경의 경우에도 면허세 과세</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납세액 범위를 5백만원으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세 분납 수혜대상 확대</li> </ul> </li> <br/> <li>○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취득의 범위를 건축 또는 개수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취득(승계취득)하는 경우까지 확대</li> <br/> <li>○ 협의상 이혼으로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비과세</li> <br/> <li>○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형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배기량 1,000cc 미만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확대</li> <br/> <li>○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형 승합자동차 및 경형 화물차 취득시 취득세 및 등록세 50% 경감</li> <br/> <li>○ 주소변경 등 단순 표시변경의 경우에는 면허세 비과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법 ('07.12. 개정추진중, '08.1월 중 시행예정)</li> <li>※ 국회심의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법 시행령('07.12. 개정추진중, '08.1.1 시행예정)</li> <li>※ 국회심의중</li> </ul> | 지방세제팀<br>☎ 2100-3923 |
| 8 | 제현절 공휴일 제외  | 〈개정〉<br>제현절:공휴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현절 : '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휴일 수가 크게 증가(68일→120일)됨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공휴일 조정</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06.5.30 개정, 제현절은 '07.12.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li> </ul>  | 근무지원팀<br>☎ 2100-3317  |                      |
| 9 | 기초자치단체 재정여건 | 서울지방 으로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보장 및 영유아보육사업 대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의 예산 및</li> </ul>  | 재정정책팀   |                      |

|    |   |                  |  |   |                      |
|----|---|------------------|--|---|----------------------|
|    | 등에 따라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 구분하여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렵고(재정자주도&lt;80), 사회보장비 지출이 많은(사회보장비 지수<math>\geq 25</math>) 지역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보조율 10% 인상, 지방비 부담중 광역-기초 분담율 50:50→70:30 적용</li> </ul> </li> <li>○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하고(재정자주도<math>\geq 85</math>), 사회보장비 지출이 낮은(사회보장비 지수<math>\geq 25</math>) 지역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보조율 10% 인하, 지방비 부담중 광역-기초 분담율 50:50→30이상:70이하 적용</li> </ul> </li> </ul>    | <p>관리에 관한 법률<br/>시행령 ('07.12월중<br/>공포, 시행)</p> <p>◦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br/>등에 관한 규칙<br/>('07.12월중 공포, 시행)</p>  | ☎ 2100-4109          |
| 10 | 예산서 하나로 자치단체 사업을 한눈에<br><br>(사업예산제도 시행)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예산서를 '품목'이 아닌 '사업' 중심으로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예산 구조가 조직을 중심으로 사업순으로 새롭게 체계화됨으로써 해당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어느 조직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음</li> <li>- 예산에 대한 이해가 용이해짐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재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li> <li>- 향후,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통해 재정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킴</li> </ul> </li> <li>※ '08년도 예산서를 사업예산서로 편성 완료</li> <li>○ 예산편성·집행·결산평가 등 재정활동의 전 과정을 지방재정관리 시스템(e-호조)으로 종합 관리</li> </ul> | <p>◦지방재정법<br/>제5조(성과중심의<br/>지방재정운용)<br/>- '05.8.4 개정<br/>- '08.1.1 시행</p> <p>◦지방재정법 시행령<br/>제45조 및 제47조<br/>- '07.12월중 공포<br/>- '08.1.1 시행</p> <p>◦지방재정법시행령<br/>제89조의2(지정정보처리<br/>장치에 의한 지출의<br/>처리)<br/>- '07.12월중 공포<br/>- '08.1.1 시행</p> | 재정정책팀<br>☎ 2100-4110 |
| 11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 <개 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li> </ul>   | <p>◦지방재정법 시행령</p>   | 재정정책팀                |

|    |   |                    |   |   |                                     |    |   |  |                               |
|----|---|--------------------|---|---|-------------------------------------|----|---|--|-------------------------------|
|    | 집행제도 개선                                     |                    | <p>는 한편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일일이 확인 없이도 집행 가능토록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개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상 기부행위금지 예외규정인 “법령에 의한 직무상 금품제공행위”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포함되도록 규정을 개선</li> <li>-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 종사자에 대한 식사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li> <li>-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학교 등 유관기관에서 자치단체 행사를 도와줄 경우 현장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또는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 등</li> </ul> </li> </ul>   | <p>제144조(07. 6.28 개정, 시행)</p> <p>-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 중(현재 입법예고 중)</p> | ☎ 2100-4285                         |    |   |  |                               |
| 12 |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공시                               | 시험용 재무보고서로 공시하지 않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년도 재무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60조2항에 의거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년부터 전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를 지역주민들이 알기쉽게 공시</li> </ul> </li> </ul>  | <p>○지방재정법시행령</p>  | <p>재정정책팀<br/>☎ 2100-4129</p>        |    |   |  |                               |
| 13 | 부동산교부세                                      | <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형재원 교부기준에 사회복지 및 지역교육 항목을 신설하고 교부기준 및 비중 조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현행</td> <td style="padding: 5px;">재정여건(80%), 지방세운영상황(15%), 보유세 규모(5%)</td> </tr> <tr> <td style="padding: 5px;">변경</td> <td style="padding: 5px;">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보유세 규모(5%)</td> </tr> </table> </li> <li>○ 06년 제주도 특별법 입법 취지, 특별법 시행이후 재정여건 등 고려, 균형재원 총액의 1.8% 교부</li> <li>○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배분</li> </ul> | 현행  | 재정여건(80%), 지방세운영상황(15%), 보유세 규모(5%) | 변경 |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보유세 규모(5%) | <p>○지방교부세법시행령 ('07.12.13 개정, '07.12.13 시행)</p> | <p>지방세정책팀<br/>☎ 2100-3944</p> |
| 현행 | 재정여건(80%), 지방세운영상황(15%), 보유세 규모(5%)         |                    |   |   |                                     |    |   |  |                               |
| 변경 |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보유세 규모(5%) |                    |   |   |                                     |    |   |  |                               |

## < 문 화 관 광 부 >

| 번호 | 제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박물관·미술관<br>준학예사 자격<br>검정시험 시행<br>기관 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검정시험 위탁기관<br/>: 국립중앙박물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검정시험 위탁기관<br/>: 한국산업인력공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br/>규정 제45조제2항(2008.1.1.시행예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중앙박물관<br/>박물관정책과<br/>(2077-9126)</li> <li>*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br/>국가자격시행추진단<br/>(3274-9787)</li> </ul> |

## < 농 립 부 >

| 번호 | 제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농업경영체 등록제 실시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별로 농지이용정보, 축산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관리하는 제도로서 농림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등록</li> </ul>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br>(2008년부터 시행)                                   | 소득지원팀<br>(02-500-2116)    |
| 2  | 한식세계화 사업 추진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식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국가이미지 제고 및 우리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li> </ul>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br>(2008년부터 시행)                                     | 식품산업과<br>(02-500-1844)    |
| 3  | 농업유전자원의 국가관리 본격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분양, 국외반출, 관리기관의 관리를 종자산업법, 축산법 등 개별법의 일부조항에 근거하여 시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유전자원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인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자원의 국내외 분양, 국외반출, 관리기관지정 신청 시 책임기관(농업유전자원연구소, 산림종자관리원)의 승인이나 신고 필요</li> </ul> </li> </ul>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률 시행령, 동법률 시행규칙<br>(2008.8.3. 시행) | 농생명산업정책과<br>(02-500-1788) |
| 4  | 동물등록제,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제 등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학대 : 벌금20만원이하</li> <li>○ 유기동물보호 조치기간 : 30일</li> </ul><br><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학대: 벌금500만원이하</li> <li>○ 유기동물보호기간 단축 : 30일에서 10일로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을 유기할 때 : 50만원이하 과태료부과</li> </ul> </li> <li>○ 동물등록제 실시(대상 : 개) :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가정에서 반려(伴侣)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등록시 : 3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li> </ul> </li> <li>○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경우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식표미부착시 : 2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li> </ul> </li> <li>○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목줄, 맹견은 입마개 등을 하여야 하고, 배설물이 생긴 때는 즉시 수거하여야 함</li> </ul> | 동물보호법개정안<br>(2008.1.27. 시행)                                    | 가축방역과<br>(02-500-1933)    |

| 번호 | 제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 1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li> <li>○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의 등록</li> <li>-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미등록 등 : 100만원이하 벌금</li> <li>○동물실험윤리위원회설치 : 정부기관 등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li> <li>- 미설치시 : 50만원 과태료 부과</li> <li>○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명예감시관 임명</li> </ul> |                                  |                        |
| 5  | 농업진흥지역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면적 제한 완화 | ○농업진흥지역내 설치하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대하여 3천m <sup>2</sup> 까지 허용   | ○농업진흥지역내 설치하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대하여 1만m <sup>2</sup> 까지 허용  | 농지법 시행령<br>(2008상반기 시행 예정)       | 농 지 과<br>(02-500-1670) |
| 6  | 시·도지사의 계획관리지역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확대    | ○계획관리지역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20ha까지 시·도지사에 위임   | ○계획관리지역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50ha까지 시·도지사에 위임  | 농지법 시행령<br>(2008상반기 시행 예정)       | 농 지 과<br>(02-500-1670) |
| 7  | 농지규모화사업 지원 대상에 밭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지규모화사업 지원대상 농지를 논에 한정</li> <li>- 다만, 제주도에 한해서 밭 지원 가능</li> </ul> | ○농지규모화사업 지원대상 농지를 논 중심에서 밭 까지 확대   | 농림사업시행지침<br>(2008년부터 시행)         | 농 지 과<br>(02-500-1672) |
| 8  | 농지매매사업 자부담 폐지                  | ○농지매매사업 지원상한 범위내에서 10% 자부담  | ○농지매매사업 지원단가(3.3m <sup>2</sup> 당 논 30천원, 밭 35천원)에 포함된 10% 자부담 폐지하여 농가부담 경감   | 농림사업시행지침<br>(2008년부터 시행)         | 농 지 과<br>(02-500-1672) |
| 9  |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관리범위 확대             | ○28조원에 이르는 농업정책자금(융자금)중 농특회계 융자금(3.7조원, 13%)에 한하여 전문관리기관(정책자금관리단)에 의한 사후관리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차보전 대상자금(15.5조원, 55%)까지 정책자금관리단의 관리범위 확대</li> <li>- 사후관리 강화로 정책자금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li> </ul>   | 농림사업자금<br>이차보전규정<br>(2008년부터 시행) | 협동조합과<br>(02-500-1699) |
| 10 |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특례 부여           | < 신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한 시장·군수의 지정제도입</li> <li>○농촌마을의 기부 및 체험·봉사활동에 대한 도농교류확</li> </ul>   |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       | 농촌정책과<br>(02-500-1955) |

| 번호 | 제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 <p>인서 발급제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체험과 마을안내 등을 위한 농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제도 도입</li> </ul>   | (2008년 7월 시행 예정)                         |                        |
| 11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체계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지 선정</li> <li>○ 지원작물</li> <li>○ 사업신청 최소면적</li> <li>○ 사업관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부에서 대상지 선정</li> <li>○ 경관작물은 유채, 메밀 등 8종으로 규정</li> <li>○ 최소면적 1ha, 마을단위 3ha 이상 집단화</li> <li>○ 관리부실 사업대상지는 보조금 감액 또는 다음연도 선정 제외</li> </ul>  | 농림사업시행지침<br>(2008년부터 시행)                 | 정주지원과<br>(02-500-2172) |
| 12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금리 인하 및 지원조건 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금리 인하</li> <li>○ 지원대상주택 규모제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 가지 금리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환경개선자금:3.45%</li> <li>- 주택정비자금:농업인3%, 비농업인 4%</li> </ul> </li> <li>○ 농어촌주택정비자금 이용시대출대상주택의 면적제한이 없었음</li> </ul>                   | 농림사업시행지침<br>(2008년부터 시행)                 | 정주지원과<br>(02-500-2171) |
| 13 | 양곡표시제도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표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품목, ②생산년도, ③증량, ④품종, ⑤원산지표시, ⑥도정연월일, ⑦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상호명 (성명)·전화번호</li> </ul> </li> <li>○ 권장표시사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표시사항중 원산지표시를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품목, ②생산년도, ③증량, ④품종, ⑤도정연월일, ⑥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상호명(성명)·전화번호</li> </ul> </li> <li>※ 단,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됨</li> </ul>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및 별표7<br>(2008.2.4. 시행) | 식량유통과<br>(02-500-2117) |

| 번호 | 제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 ①등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장표시사항으로 등급을 품위로 변경하고, 쌀 품질 표시를 추가</li> <li>- ①품위, ②품질(단백질함량, 완전립비율, 품종순도)</li> </ul>  |                                    |                            |
| 14 | 종자관리제도 개선<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보상금</li> <li>○ 종자관리사 자격기준 완화</li> <li>○ 종자업 등록기준 완화</li> <li>○ 품종보호권등록증 영문 병기 및 영문등록증 신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수입금에 따라 처분보상금이 다름</li> <li>○ 종자기사 및 산업기사는 과거 유사경력을 미인정</li> <li>○ 육묘업 농가도 종자업 등록시 종자관리사를 고용하도록 규정</li> <li>○ 종자업등록시 채소종자는 포장을 임차하여도 되나 그외 타작물을 임차가 되지 않음</li> <li>○ 한글 품종보호등록증만 발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수입금에 상관없이 50/100으로 통일(발명진흥법 적용)</li> <li>○ 종자기사 및 산업기사도 과거 유사경력을 인정</li> <li>○ 육묘업 농가에 대해서는 종자업 등록시 종자관리사 고용의무를 제외</li> <li>○ 채소외 타작물에 대하여도 포장 임차가 가능하도록 임차조항 신설</li> <li>○ 영문병기 및 별도 영문등록증 신설(나라휘장 사용)</li> </ul> | 종자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br>(2008.2.4 시행예정) | 농생명신사업정책과<br>(02-500-1793) |
| 15 | 인삼류 원산지 표시 의무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삼류 제조시 원산지표시 의무 규정이 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삼류 제조시 제조업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 영업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폐쇄 등의 영업권 체결 등의 기준 마련</li> <li>- 연근을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 인삼산업법<br>(2008.1.14. 시행)           | 채소특작과<br>(02-500-1868)     |
| 16 |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 요건 등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종별 제조기준이 다름에도 삼종별 구분 없이 연간 제조 실적이 5톤이상인 경우 자체 검사업체 신청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을 삼종별로 구분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 기준 : 홍삼·백삼은 3톤(본삼류 2톤이상 포함)이상, 태극삼은 연간 본삼류 2톤 이상</li> </ul> </li> </ul>   | 인삼산업법<br>(2008.1.14. 시행)           | 채소특작과<br>(02-500-1868)     |

| 번호 | 제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 자체검사업체 검사원 교육의 무 미설정   | ○ 검사원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체검사업체에 대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   |                         |
| 17 | 인삼류 자체검사 대상 확대               | ○ 자체검사업체는 수삼을 원료로 자신이 직접 제조한 인삼류 만 검사할 수 있도록 제한  | ○ 수출용인 경우 직접제조하지 아니한 홍삼·백삼·태극삼에 대하여도 자가 상표를 붙이고 검사할 수 있도록 개정                                      | 인삼산업법<br>(2008.1.14. 시행)                | 채소특작과<br>(02-500-1868)  |
| 18 | 원예자조금의 목적기금화                 | ○ 자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당해연도 거출한 자조금에 대해서만 정부 대응 보조  | ○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자조금 규모화를 위해 '07.7.4. 이후 적립 이월한 자조금에 대해 '08년사업 추진시 정부 대응 보조 가능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br>에관한법률<br>(2008년부터 시행)    | 채소특작과<br>(02-500-1865)  |
| 19 |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추진               | <신 규>  | ○ 수입개방 폭 확대에 대비 수출잠재력이 높은 원예전문 단지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 지원   | FTA지원법<br>(2008년부터 시행)                  | 채소특작과<br>(02-500-1866)  |
| 20 |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추진               | <신 규>  | ○ 신선한 고품질 농산물 공급이 가능한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도입 추진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br>에관한법률<br>(2008년부터 시행)    | 소비안전과<br>(02-500-1841)  |
| 21 | 광역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 <신 규>  | ○ 식품관련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및 우리 농식품의 해외 수출 확대 도모  | 식품산업진흥법<br>(공포예정)<br>(2008년부터 시행)       | 식품산업과<br>(02-500-1849)  |
| 22 | 낙농체험관광사업 지원                  | <신 규>  | ○ 낙농체험관광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게 체험시설 설치비, 환경 개선비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비 등을 무이자 융자지원                               | 농림사업시행지침<br>(2008년부터 시행)                | 축산경영과<br>(02-500-1911)  |
| 23 | 쇠고기 이력추적제 본사업<br>'08년 말부터 시행 | ○ 참여 신청 브랜드·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br>- 출생 신고, 이동 신고, 귀포부착, 개체식별번호 표시 등: 자율적 시행<br>- 위반 시: 법적 제재 | ○ 전국 모든 소를 대상으로 본사업 시행<br>- 출생 신고, 이동 신고, 귀포부착, 개체식별번호 표시 등: 법적으로 의무화<br>- 위반 시: 법적 제재(벌금, 과태료부과) | 소 및 쇠고기<br>이력추적에 관한 법률<br>(2008.12. 시행) | 축산물위생과<br>(02-500-1925) |
| 24 | 법정 가축전염병 재분류 및 명칭 변경         | ○ 법정 가축전염병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  | ○ 법정 가축전염병을 제1종·제2종 및 제3종으로 재분류<br>- 제2종 가축전염병중 피해가 적어 정부 방역관리 필요성이 낮은 질병을 제3종으로 변경하여 농가 자율방역     | 가축전염병예방법(2008.<br>2.4. 시행)              | 가축방역과<br>(02-500-1940)  |

| 번호 | 제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 돼지콜레라 등 인체 질병과 유사한 병명 사용 | <p>유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유행열, 소아까바네, 담마이코플즈마병, 저병원성가금인 폴루엔자 및 부저병(5종)</li> <li>* 시행규칙내 제2종 가축전염병중 13종을 제3종으로 재분류 예정</li> </ul> <p>○ 돼지콜레라는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콜레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부루세라병은 “브루셀라병”으로 변경</p> |                             |                        |
| 25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 <신 규>                      | ○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   | 한미 FTA 보완대책<br>(2008년부터 시행) | 축산경영과<br>(02-500-1995) |

## < 산업자원부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 등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표시 및 취급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자변형생물체란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기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함</li> <li>* 관계중앙행정기관 : 산업자원부(산업용), 과학기술부(시험연구용), 농림부(농업용, 임업용, 축산업용), 보건복지부(보건의료용), 환경부(환경정화용), 해양수산부(해양용, 수산용)</li> </ul> </li> </ul>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08. 1.1 시행) | 바이오나노팀<br>(02-2110-5664)   |
| 2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 등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별표1의 1~2 등급 연구시설의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li> <li>- 3~4등급 연구시설의 경우 환경위해성 연구시설의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체위해성 연구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li> </ul> </li> </ul>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08. 1.1 시행) | 바이오나노팀<br>(02-2110-5664)   |
| 3  | 천일염 식용허용                      | ○ 식용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염관리법 개정을 통한 식용으로 허용</li> <li>○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공전 개정 (식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일염 식품기준 등 관리규정 신설</li> <li>-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관리체계 적용</li> </ul> </li> </ul>   | 염관리법(산업자원부)<br>식품공전(식약청)<br>('08.3월 중 시행)        | 산업자원부<br>바이오나노팀<br>(02-2110-7816)<br><br>식약청<br>위해기준팀<br>(02-352-4797) |
| 4  | 등유 및 부생연료유에 대한 판매부과금 폐지       | 등유(23원/ℓ) 및 부생연료유(17원/ℓ)<br>판매부과금 징수 | 등유 및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 폐지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08.1.1 시행)                    | 산업자원부<br>석유산업팀<br>(02-2110-5457)                                       |

## < 정보통신부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시내전화-인터넷 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시내전화서비스 내에서 번호이동이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 간에도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이 가능</li> <li>○ 인터넷전화는 시내·외 구분이 없어 요금이 저렴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벨소리 등) 제공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br/>※ 단, 긴급통신 일부 및 정전시 통화가 제공되지 않음</li> </ul>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번호이동성 고시개정 ("08년 상반기 시행") |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br>통신이용제도팀 (02-750-1351) |
| 2  |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제도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전파사용료 일시 납부제도는 연초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1/4 분기 이후 일시납부 신청자 및 무선국 개설자는 다음 해부터 적용받을 수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 적용시기를 1/4분기로만 제한하던 것을 연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분기부터 1년간의 전파사용료를 일시납부(10%를 감면) 할 수 있도록 개선</li> </ul>   | 전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08. 1. 1 시행")      | 전파방송기획단전파방송정책팀 (02-750-2417)        |
| 3  |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 간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와 별도로 체신청에 신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정보사업자가 신청시 위치기반서비스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허가와 신고 처리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음</li> </ul>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개정 ("08년 하반기 시행")    | 정보보호기획단<br>개인정보보호팀(02-750-1273)     |

## < 보 건 복 지 부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기준소득월액제도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으로서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등급(22만원) ~ 45등급(360만원)</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순화 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원 단위로 부과하며, 천원 미만은 절사하고 상 · 하한선은 종전과 동일</li> </ul> </li> </ul>  | 국민연금법 ('08.1.1시행) | 국민연금정책관실<br>연금정책팀<br>(02-500-5512) |
| 2  | 가입기간 계산기준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월단위로 보험료를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하루만 근무해도 한 달 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보험료 납부 및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입기간 계산을 자격을 취득한 달에서 다음 달로 변경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li> <li>○ 다만, 향후 연금 수급액 또한 감소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경우는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가입기간을 계산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 취득일이 매월 초일인 경우,</li> <li>ii )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경우</li> <li>iii)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li> </ul> </li> </ul> | 국민연금법 ('08.1.1시행) | 국민연금정책관실<br>연금정책팀<br>(02-500-5512) |
| 3  | 출산크레딧제도 도입   | < 신 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장려를 위하여 둘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장려 및 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함(최고한도 50개월)</li> <li>-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li> </ul> </li> </ul>  | 국민연금법 ('08.1.1시행) | 국민연금정책관실<br>연금급여팀<br>(02-500-5531) |
| 4  | 군복무크레딧제도 도입  | < 신 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고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연금수급기회 확대 및 연금액을 인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6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li> <li>-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 한함</li> </ul> </li> </ul>   | 국민연금법 ('08.1.1시행) | 국민연금정책관실<br>연금급여팀<br>(02-500-5531)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 -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  |                       |                                    |
| 5  | 국민연금 급여율의 점진적 하향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을 가입할 경우 급여수준은 평균소득의 60%를 지급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급여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함.</li> <li>-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평균소득액의 60%를 지급하던 것을 50%로 인하하고, 2009년부터 매년 0.5%P씩 낮추어 2028년 도달 시 40%로 인하함.</li> </ul> | 국민연금법 ('08.1.1시행)     | 국민연금정책관실<br>연금정책팀<br>(02-500-5512) |
| 6  | 소액 부당이득금 징수 제외          | < 신 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부당이득환수 대상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징수하는 금액보다 징수를 위해 더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징수제외처리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li> <li>- 징수제외 대상 금액 : 3천원미만.</li> </ul>  | 국민연금법 ('08.1.1시행)     | 국민연금정책관실<br>연금정책팀<br>(02-500-5512) |
| 7  | 급여액의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급여를 받을 권리 있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급여가 예금통장으로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서 실제 압류가 가능하였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li> <li>- 민사집행법 시행령 상 압류금지 금액 : 120만원</li> </ul>  | 국민연금법 ('08.1.1시행)     | 국민연금정책관실<br>연금급여팀<br>(02-500-5531) |
| 8  | 개인사업장 사용자 소득총액 신고 기한 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전년도 소득이 매년 5월 말 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됨에 따라, 소득총액신고를 매년 2월에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과 동일한 5월로 변경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전년도 소득이 매년 5월 말 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됨에 따라, 소득총액신고를 매년 2월에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과 동일한 5월로 변경함.</li> </ul>   | 국민연금법 시행령 ('08.1.1시행) | 국민연금정책관실<br>연금정책팀<br>(02-500-5512) |
| 9  |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의 연체이자 폐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후 납부기한까지 미납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2배에 해당하는 연체금 부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후 납부기한까지 미납하더라도 연체금은 없으며, 납부를 재신청하여 납부 가능</li> </ul>  | 국민연금법 시행령 ('08.1.1시행) | 국민연금정책관실<br>연금정책팀<br>(02-500-5512) |
| 10 |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일반 - 20%</li> <li>o 중증질환 - 1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일반 - 50%로 변경</li> <li>o 중증질환 - 50%로 변경</li> </ul>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 보험연금정책본부<br>보험급여팀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세미만, 자연분만 - 면제</li> <li>○ 가산식대 - 5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세미만, 자연분만 - 50%로 변경</li> <li>○ 가산식대 - 50% 유지</li> </ul>  | ('08.1.1 시행)   | (02-2110-6368)                      |
| 11 |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 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 면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을 10%로 조정</li> <li>* 단, 신생아는 본인부담 면제</li> </ul>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br>('08.1.1 시행)                                | 보험연금정책본부<br>보험급여팀<br>(02-2110-6368) |
| 12 | 장제비 급여 폐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25만원을 지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폐지</li> <li>* 중증질환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li> </ul>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br>('08.1.1 시행)                                | 보험연금정책본부<br>보험급여팀<br>(02-2110-6489) |
| 13 | 요양병원 일당정책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위별 수가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서비스 요구도별 차등 일당정책수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행위별 수가 병행</li> </ul> </li> <li>○ 병상수 대 인력수준에 따른 차등수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호인력 : 1~9등급 차등, 입원료 가감</li> <li>- 의사수 : 1~5등급 차등, 입원료 가감</li> </ul> </li> </ul>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br>국민건강보헤포지션<br>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br>('08.1.1 시행) | 보험연금정책본부<br>보험급여팀<br>(02-2110-6486) |
| 14 |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실시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업으로 유지되던 결혼중개업에 대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시·도),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시·군·구)도입·시행</li> </ul>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08.6월 중)                                   | 인구여성정책팀<br>(031-440-9368)           |
| 15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개념 규정</li> <li>○ 차별개념은 정단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 직접·간접차별 등으로 한정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기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차별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음</li> </ul> </li> <li>○ 동 제도는 차별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 수단을 담고 있으며, 특히 악의적 차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li> </ul> <p>*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p>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br>('08.4.11 시행)                     | 장애인정책팀<br>(02-2110-6266)            |

| 번호 | 제 목                          | 종 친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6 | 기초노령연금<br>제도 시행              | <신 규>  | <p>* 시정권고(국가인권위원회), 시정명령(법무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노인의 60%(약 301만명) 대상 국민연금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5%(08년 8.4만원)를 매월 지급</li> <li>○ '08.1월부터 시행하되, 1월부터는 1937.12.31일 이전 출생 하신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약 192만명),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중 일정기준 이하인 자(약 301만명)로 적용 확대<br/>* 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li> </ul>  | 기초노령연금법<br>('08.1.1 시행)                   | 기초노령연금<br>총괄팀<br>(02-500-5540)   |
| 17 | 희귀난치성질환자<br>의료비지원 제도개편<br>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비 지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시·군·구 보건소</li> </ul> </li> <li>○ 의료비 청구방법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가 진료 후 3개월 이내에 진료영수증을 보건소에 청구</li> <li>- 보건소는 청구된 의료비에 대해 심사 후 지급(약 1개월 소요)</li> </ul> </li> <li>②보장구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가 보장구 구입 후 본인부담금을 직접 보건소로 청구</li> </ul> </li> <li>③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 또는 지급보증기관에서 직접 보건소로 매월 청구</li> </ul> </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비 지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li> </ul> </li> <li>○ 의료비 지원방법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비지급업무의 건강보험공단 위탁을 통해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지불 없이 요양기관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li> <li>- 요양기관은 지원대상자의 해당질환에 대한 총진료비(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포함)를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심평원에 청구</li> <li>- 공단은 심사 전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우선 가지급(5일이내)하고 심사 후 정산처리</li> </ul> </li> <li>②보장구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의 별도 청구절차 없이 보장구 제조·판매자가 공단으로 요양급여 청구시 지원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일괄 입금</li> </ul> </li> <li>③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회사 또는 지원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br/>※6개월마다 진단서 제출 필요 없이 2년마다 자격확인.</li> </ul> </li> </ul> </li> </ul> | 희귀난치성질환자<br>의료비지원사업<br>지침<br>('08.1.1 시행) | 건강정책관<br>질병정책팀<br>(031-440-9117)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8 | ※6개월마다 진단서 제출   | 단 분기별 임대보증회사의 관리 실태조사 실시   |   |                                  |                         |
|    | <p>③간병비<br/>- 등록환자가 매월 청구</p> <p>o 사업관리기관<br/>- 보건복지부<br/>·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br/>· 법인 및 단체 관리<br/>· 의료비지원 및 대상자 관리<br/>· 희귀난치 전산망 운영<br/>· 지침개발, 보건소 담당자 교육 및 홍보<br/>- 질병관리본부<br/>· 희귀난치성질환 정보센터 운영<br/>· 지역별 거점병원 지정·운영<br/>· 희귀난치성질환 연구개발</p> | <p>③간병비<br/>- 간병비 지원대상자로 최초 선정시 사망 시까지 별도의 청구행위 없이 매월 입금</p> <p>o 사업관리기관<br/>- 보건복지부<br/>·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br/>· 각종 시책개발·추진<br/>· 법인 및 단체 관리</p> <p>- 질병관리본부<br/>· 의료비지원 및 대상자 관리<br/>· 희귀난치 전산망 운영 및 관리<br/>(질병정보, 사업안내, 온라인상담, 통계관리 등 통합운영)<br/>· 지침개발, 보건소 담당자 교육 및 홍보<br/>· 지역별 거점병원 지정·운영<br/>· 희귀난치성질환 연구개발</p> |   |                                  |                         |
| 19 | 사회복지사 1급<br>국가시험 관리기관<br>변경   | <p>o 시험관리기관<br/>: 한국사회복지사협회</p> <p>o 시험일자 : 매년 3월</p> <p>o 원서접수 : 방문접수 및 인터넷 접수 병행</p> <p>o 응시자격심사<br/>: 시험일 전 사전심사</p>  | <p>o 시험관리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p> <p>o 시험일자 : 매년 2월</p> <p>o 원서접수 : 인터넷 접수</p> <p>o 응시자격심사 : 시험 실시후 심사<br/>* 응시자격 미달시 불합격 처리</p> | 사회복지사업법시행<br>령<br>('07.10.31.시행) | 사회정책팀<br>(02-2110-6199)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20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년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li> <li>○ 어르신들에게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 와 시설이용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br/>*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li> </ul> | 노인장기요양보험법<br>제정 공포<br>('07. 4. 27 공포,<br>'08. 7. 1 시행) | 노인정책관<br>노인요양제도팀<br>(031-440-9624) |

## < 환경부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국제 기준(GHS)에 따른 새로운 화학물질 분류·표시제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성 항목 : 15개(물리적 위험(7), 건강·환경유해성(8))</li> <li>○ 유해성 정보 : 4개 정보(유독물명, 유해그림, 유해성, 취급시 제한 또는 주의사항)</li> <li>○ 표시규격(크기),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송관련 규정 없음</li> <li>- 규격이 다소 경직적</li> <li>- 색상: 유해그림의 색상 규정</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성 항목 : 27개(물리적 위험(16), 건강·환경유해성(11))</li> <li>○ 유해성정보 : 6개 정보(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li> <li>○ 표시 규격(크기),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 용기·포장과 이중 용기·포장으로 구분</li> <li>· 운송그림문자의 우선 적용 표시, 운송과 조합한 표시도 가능토록 규정</li> <li>· 전체크기 및 그림문자 크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li> <li>· 색상: 그림문자의 색상을 삭제(다양성을 고려 고시에 규정)</li> </ul> </li> </ul> | <p>유해화학물질관리법<br/>시행규칙<br/>('08. 7. 1 시행)<br/>※ 기존 단일물질인<br/>유독물 : '11.<br/>6월까지 기존<br/>표시와 병행<br/>※ 혼합물질인 유독물 :<br/>'13. 6월까지<br/>기존 표시와 병행</p> | 환경부<br>화학물질안전과<br>(02-2110-7953) |
| 2  | 수렵동물 확인표지 부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렵자가 포획한 야생동물을 신고하면 수렵장설성자가 포획야생동물에 부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렵자가 수렵즉시 수렵한 야생동물에 확인표지를 직접부착</li> <li>○ 수렵설정자는 포획실적을 관리</li> </ul>  | <p>야생동식물보호법<br/>시행 규칙<br/>개정 완료<br/>('07. 12. 4 공포)</p>   | 자연보전국<br>자연자원과<br>(02-2110-2746) |
| 3  | 경유차에 대한<br>EURO-4<br>배출허용기준 확대<br>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승용(2.5톤 미만), 경자동차에만 EURO-4 수준의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1.1부터 출고되는 모든 자동차에 EURO-4 수준의 배출허용기준 적용<br/>* 소형승용(2.5톤 미만), 경자동차는 '06년 1월부터 EURO-4 기준 적용</li> </ul>  | <p>대기환경보전법<br/>시행 규칙<br/>('06.1.1 시행)</p>   | 교통환경기획과<br>(02-2110-6807)        |
| 4  | 인쇄 및 각종 기록<br>매체 제조(복제)시설<br>대기배출시설 추가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이상이거나 합계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인쇄·건조시설(유기 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이 시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 만 해당)</li> </ul>   | <p>대기환경보전법<br/>시행 규칙 제5조<br/>별표3<br/>(2008.7.1 시행<br/>예정)</p>   | 대기관리과<br>(02-2110-6790)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특정대기유해물질 추가                 | <신 규>   | ○ 특정대기유해물질 10개 항목 추가관리<br>-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 10개 항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2조 (2008.1.1 시행)  | 대기관리과 (02-2110-6790)     |
|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 수도권 일부 지역만 지원(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안산, 시흥))  | ○ 지역 확대 추진(수도권의 경우 서울을 포함하여 전지역 지원)   |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 업무 처리 지침(2008.1.1) | 대기관리과 (02-2110-6790)     |
| 5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및 포름알데히드 기준강화 | ○ 1,000m <sup>3</sup> 이상인 국공립보육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관리<br><br>○ 포름알데히드 유지기준 120μg/m <sup>3</sup> | ○ '08년부터 430m <sup>3</sup> 이상인 국공립보육시설,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로 확대시행(단,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은 '10년까지는 860m <sup>3</sup> 이상인 시설에 한함)<br><br>○ 포름알데히드 유지기준을 120μg/m <sup>3</sup> 에서 100μg/m <sup>3</sup> 으로 강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08.1.1) | 환경부 생활환경과 (02-2110-6815) |
| 6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 <신 규>   | ○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한 주유소의 주유시설에 유증기 회수설비 단계별 설치 의무화<br><br>○ 신규주유소는 2008년 1월1일부터, 기존 주유소는 2012년 말까지 판매량에 따른 5단계로 설치 의무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07.12 월 공포예정)      | 대기관리과(02-2110-6788)      |
| 7  | 동일건물내 사업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신설      | <신 규>   | ○ 동일건물내 소음다량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신규사업장은 '08.7.1부터, 기존사업장은 '10.1.1부터 생활소음 규제기준 적용<br><br>* 대상지역·시간대별로 차등하여 생활소음 규제 기준(40~55dB(A))을 정함<br><br>* 적용대상 사업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u>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u>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u>음악교습을 위한 학원·교습소</u>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u>단란주점</u>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08.7.1시행)        | 환경부 생활환경과 (02-2110-6814)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 <u>영업·유통주점영업,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의 9종</u>  |   |                          |
| 8  | 건설기계 소음도표시 의무제 시행   | 건설기계 소음도표시를 권고제로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수입하는 경우 소음도표시를 권고하던 기존제도를 의무제로 전환<br/>* 적용대상 건설기계 : 굴삭기, 다짐기계, 로우더, 발전기, 브레이커, 공기압축기, 콘크리트 절단기, 천공기, 향타 및 항발기의 9종</li> </ul>   | 소음·진동규제법 ('08.1.1시행)                      | 환경부 생활환경과 (02-2110-6814) |
| 9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확대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공항의 건설,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관광단지의 개발, 산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토석, 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li> <li>o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철도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의 5개 개발사업 추가</li> <li>o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금속 광업, 비금속 광물 광업, 음식료품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증기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의 7개 사업장 추가</li> </ul>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07.12 시행) | 수생태보전과 (02-2110-6836)    |
| 10 |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제도 시행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처리용량 10,000m<sup>3</sup>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전년도 1일 평균 방류량 700m<sup>3</sup> 이상 또는 1일 처리시설용량 10,000m<sup>3</sup> 이상), 1종사업장·공동방지시설(1일 처리용량 2,000m<sup>3</sup> 이상)은 법정 기한까지 수질TMS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함</li> </ul>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07.11.30시행)     | 산업수질관리과 (02-2110-6853)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폐수배출허용기준<br>강화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항 목<br/>(mg/r)</th> <th colspan="2">적용지역</th> </tr> <tr> <th>청정지역</th> <th>기타지역</th> </tr> </thead> <tbody> <tr> <td>비 소</td> <td>0.1</td> <td>0.5</td> </tr> <tr> <td>납</td> <td>0.2</td> <td>1</td> </tr> <tr> <td>도금업소<br/>총질소</td> <td>30</td> <td>120</td> </tr> </tbody> </table> | 항 목<br>(mg/r)  | 적용지역   |                         | 청정지역 | 기타지역 | 비 소 | 0.1 | 0.5 | 납 | 0.2 | 1 | 도금업소<br>총질소 | 30 | 120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항 목<br/>(mg/r)</th> <th colspan="2">적용지역</th> </tr> <tr> <th>청정지역</th> <th>기타지역</th> </tr> </thead> <tbody> <tr> <td>비 소</td> <td>0.05</td> <td>0.25</td> </tr> <tr> <td>납</td> <td>0.1</td> <td>0.5</td> </tr> <tr> <td>도금업소<br/>총질소</td> <td>30</td> <td>60</td> </tr> <tr> <td>벤젠</td> <td>0.01</td> <td>0.1</td> </tr> <tr> <td>디클로로메탄</td> <td>0.02</td> <td>0.2</td> </tr> </tbody> </table> | 항 목<br>(mg/r) | 적용지역 |  | 청정지역 | 기타지역 | 비 소 | 0.05 | 0.25 | 납 | 0.1 | 0.5 | 도금업소<br>총질소 | 30 | 60 | 벤젠 | 0.01 | 0.1 | 디클로로메탄 | 0.02 | 0.2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08.1.1 시행) | 산업수질관리과 (02-2110-6848) |
| 항 목<br>(mg/r) | 적용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정지역                               | 기타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소           | 0.1                                | 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             | 0.2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금업소<br>총질소   | 30                                 | 1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 목<br>(mg/r) | 적용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정지역                               | 기타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소           | 0.05                               | 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             | 0.1                                | 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금업소<br>총질소   | 30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벤젠            | 0.01                               | 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디클로로메탄        | 0.02                               | 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오염된<br>공공수역에서<br>물놀이 등 행위제한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호소 등이 오염되어 수영, 물놀이, 물을 마시거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수생물을 잡아먹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하천·호소 등에서 그 행위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li> <li>-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함,</li> <li>○ 특히, 대장균이 500(개체수/100㎖) 이상인 경우 수영 등 물놀이를 제한하고, 어패류 체내 총 수은(Hg)이 0.3(mg/Kg)이상인 경우 어패류 등의 섭취를 제한하게 됨</li> </ul> | 수질 및<br>수생태계보전에<br>관한 법률 및<br>시행령<br>('07.12 시행) | 수질정책과<br>(02-2110-68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상수도<br>원인자부담금 및<br>손괴자부담금<br>통합·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li> <li>○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손괴자부담금을 부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손괴자부담금도 넓은 의미에서 원인자부담금에 포함되므로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여 부과·징수토록 함.(수도법 제71조)</li> <li>○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수도법 제68조)</li> </ul>   | 수도법<br>('08.1.4 시행)                              | 수도정책과<br>(02-2110-687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4 |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껌:판매가(수입가) 0.27%</li> <li>○ 담배:20개비당 7원</li> <li>○ 1회용기저귀:개당 1.2원</li> <li>○ 부동액: ℥ 당 30원</li> <li>○ 살충제 및 유독물:개당 6~16원</li> <li>○ 화장품 유리병:개당 1~4.5원</li> <li>○ 일반플라스틱:합성수지투입kg당7.6원</li> <li>○ 건축용플라시틱:합성수지투입kg당3.8원</li> <br/> <li>○ 부과대상 : 중간·최종제품</li> <li>○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5종</li> <li>○ 부과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 : 합성수지 투입량</li> <li>- 수입 : 수입액의 0.7%</li> </ul> </li> <li>○ 부담금 면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자 : 연간 매출액 10억 이하</li> <li>- 수입업자 : 미화 9천불 미만</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신 규&gt;</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껌:판매가(수입가) 1.8%</li> <li>○ 담배:20개비당 7원</li> <li>○ 1회용기저귀:개당 5.5원</li> <li>○ 부동액: ℥ 당 189.8원</li> <li>○ 살충제 및 유독물:개당 24.9~84.3원</li> <li>○ 화장품 유리병:'07년부터 EPR대상</li> <li>○ 일반플라스틱:합성수지투입kg당150원</li> <li>○ 건축용플라시틱:합성수지투입kg당75원</li> </ul> <p>*'08~09년에는 실처리비의 20%, '10~11에는 60%, '12년 이후에는 100%로 인상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과대상 : 최종제품</li> <li>○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31종</li> <li>○ 부과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 : 종전과 동일</li> <li>- 수입 : 합성수지 투입량</li> </ul> </li> <li>○ 부담금 면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자 : 연간 매출액 10억 이하 및 사용량 10톤 이하</li> <li>- 수입업자 : 미화 9천불 미만 및 수입량이 100kg이하</li> </ul> </li> </ul> <p>* 부담금대상 사업자도 면제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자 스스로 또는 사업자 단체를 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부담금면제</li> <li>○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부담금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유지</li> </ul>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시행령('07.3.21개정, '08.1.1 시행)    | 자원순환정책과 (02-2110-6920) |
| 15 |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시행  | <b>&lt;신 규&gt;</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 허가대상 품목 외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 신고제 도입</li> <li>○ 수입폐기물의 자가처리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의 위탁처리 의무화</li> </ul>   | 폐기물관리법<br>제24조의2,<br>제24조의3<br>('07.8.3개정, '08.8.4 시행) | 자원순환정책과 (02-2110-6920)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폐기물을 국내 운반·처리시 전자인계·인수서 작성 의무화</li> <li>○ 수입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li> </ul>  |  |                       |
| 16 | 폐기물 적법 처리시스템 전 폐기물 배출사업장으로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자만이 적법처리시스템에 처리 상황을 전산입력하였음</li> <li>○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계·인수시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서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자도 (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대신 적법처리시스템에 전산입력토록 확대하였음</li> <li>○ 폐기물을 운반중에 휴대하여야 서류를 폐기물(간이)인계서에서 전산입력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휴대하도록 하였음</li> </ul>   | 폐기물관리법 ('08.4. 시행)   | 산업폐기물과 (02-2110-6936) |
| 17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정책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전기·전자제품의 대당 재활용목표율 및 매년 전기·전자제품 판매량의 일정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의무 부여</li> </ul>  | <p>&lt;사전관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규제대상 유해물질 종류 및 사용제한기준</li> <li>○ 재질 종류의 단순화,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의 사용확대 등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로 제조</li> </ul> <p>&lt;사후관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대당 재활용목표율 부여</li> <li>○ 매년 전기·전자제품 판매량의 일정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의무 부여</li> </ul>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08.11. 시행)<br>※사전관리 규정은 '08.7.1일 시행 | 자원재활용과 (02-2110-6953) |
| 18 | 알칼리망간전지 등 전지류 분리 수거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 종량제봉투에 배출되어 매립되던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를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및 니켈수소전지에 대해 분리수거를 실시</li> </ul>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08.1.1 시행)                            | 자원재활용과 (02-2110-6958) |

## < 노 동 부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제도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종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 공익사업에 있어 쟁의권을 사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운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는 파업시에도 서비스를 유지</li> <li>o 필수공익사업의 노사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 등을 필수유지업무협정으로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관계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 노동위원회가 결정함</li> </ul> </li> <li>* 필수공익사업 :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li> </ul>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br>제42조의4 ~ 제4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br>제22조의2 ~ 제22조의4 ('08.1.1 시행) | 노사관계법제팀(02-503-9734)        |
| 2  | '08년 최저임금 인상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07년 적용 최저임금액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산업 시간급 3,480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30%감액된 시간급 2,436원</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08년 적용할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산업 시간급 3,770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감액된 시간급 3,016원</li> </ul> </li> </ul>  | 최저임금법시행령('08. 1. 1)  | 임금근로시간정책팀<br>(02-2110-7393) |
| 3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07.7.1부터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공공부문)에 차별 시정제도가 적용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08.7.1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차별시정제도가 확대 적용됨</li> </ul>   | o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08.7.1)  | 비정규직대책팀<br>(02-2110-7401)   |
|    |                                 |   |   | o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4  |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되,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li> <li>○ 08.6월21일부터 시행</li> </ul> | 여성고용팀<br>(02-2110-7297)     |
| 5  |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li> <li>① 법정근로시간 단축 : 1주 44시간 → 40시간</li> <li>② 휴가제도 조정 : 월차유급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유급휴가(10일 → 15일)</li> <li>③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 1주 12시간, 50% → 3년간 1주 16시간, 최초4시간 25%</li> <li>④ 휴가사용촉진, 임금보전 등</li> </ul> </li> </ul> | 근로기준법 ('08. 7. 1)   | 임금근로시간정책팀<br>(02-2110-7394) |
| 6  | 육아휴직제도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혜택</li> <li>○ 자녀가 1세에 도달하면 육아휴직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 3세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기간은 현재와 같이 1년 이내</li> </ul> </li> <li>○ '08년 7월부터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 상관없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li> <li>○ 08.6월21일부</li> </ul>       | 여성고용팀<br>(02-2110-7297)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나누어 쓸 수 없음 | * 1세('08.1.1이후 출생아부터 3세) 이전에 휴직을 신청하면 휴직 중에 1세(또는 3세)를 초과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   | 터 시행  |                           |
| 7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br>제도 시행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함.</li> </ul> </li> <l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 조건은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하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정하는 근로조건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li> <li>- 연장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됨</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녀고용평등<br/>과 일·가정<br/>양립 지원에<br/>관한 법률<br/>제19조의2부<br/>터 제19조의4</li> <li>○ 08.6월21일부<br/>터 시행</li> </ul> | 여성고용팀<br>(02-2110-7297)   |
| 8  | 특수형태근로종사자<br>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br>특례 제도 시행 | <신 설>                                  | ○ 종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기사 등)도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제도 시행  | 산업재해보상보<br>험법<br>('08.7.1 시행)   | 산재보험혁신팀<br>(02-2110-7222) |
| 9  | 직업재활급여제도<br>시행                        | <신 설>                                  | ○ 산재근로자 중 요양종결 이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하고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는 직업재활급여 제도 시행   | 산업재해보상보<br>험법<br>('08.7.1 시행)   | 산재보험혁신팀<br>(02-2110-7222) |
| 10 | 종합전문기관 당연지                            |  | ○ 일부 국민건강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산재환   | 산업재해보상보   | 산재보험혁신팀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제도 시행                         | <신 설>   | 가가 상대적으로 요양(입원)기간이 길어 병상 회전을 둔화 및 희귀·난치성 환자의 진료에 지장을 준다는 우려로 지정을 기피하였으나, 법개정에 의하여 서울대병원 등 대형종합병원에서도 산재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종합 전문의료기관 당연지정제도 시행   | 협법<br>('08.7.1 시행)   | (02-2110-72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체당금상한액 인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당금 상한액</li> </ul> <table border="1"> <tr> <td rowspan="2">체당금 종류</td> <td colspan="5">퇴직당시 연령</td> </tr> <tr> <td>30세 미만</td> <td>30세 이상</td> <td>40세 이상</td> <td>50세 이상</td> <td></td> </tr> <tr> <td>임금·퇴직금</td> <td>100</td> <td>155</td> <td>170</td> <td>145</td> <td></td> </tr> <tr> <td>휴업수당</td> <td>70</td> <td>110</td> <td>120</td> <td>100</td> <td></td> </tr> </table> | 체당금 종류  | 퇴직당시 연령  |  |  |  |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이상 | 50세 이상 |  | 임금·퇴직금 | 100 | 155 | 170 | 145 |  | 휴업수당 | 70 | 110 | 120 | 10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당금 상한액</li> </ul> <table border="1"> <tr> <td rowspan="2">체당금 종류</td> <td colspan="5">퇴직당시 연령</td> </tr> <tr> <td>30세 미만</td> <td>30세 이상</td> <td>40세 이상</td> <td>50세 이상</td> <td></td> </tr> <tr> <td>임금·퇴직금</td> <td>150</td> <td>240</td> <td>260</td> <td>210</td> <td></td> </tr> <tr> <td>휴업수당</td> <td>105</td> <td>168</td> <td>182</td> <td>147</td> <td></td> </tr> </table> | 체당금 종류 | 퇴직당시 연령 |  |  |  |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이상 | 50세 이상 |  | 임금·퇴직금 | 150 | 240 | 260 | 210 |  | 휴업수당 | 105 | 168 | 182 | 147 |  | 임금채권보장법<br>('08.1.1 시행) | 퇴직급여보장팀<br>(02-507-1701) |
| 체당금 종류 | 퇴직당시 연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이상  | 50세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금·퇴직금 | 100                            | 155   | 170   | 1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휴업수당   | 70                             | 110   | 120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당금 종류 | 퇴직당시 연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이상  | 50세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금·퇴직금 | 150                            | 240   | 260   | 2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휴업수당   | 105                            | 168   | 182   | 14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건설근로자<br>근로보호 강화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하도급시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지급연대부과(법 제44조의 2)</li> <li>○ 직상수급인 및 원수급인은 하도급 지급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 할 수 있음.(법 제44조의 3)</li> </ul>   | 근로기준법 ('08.1.28)   | 근로기준팀<br>(02-2110-738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사회취약계층에<br>대한<br>무료법률서비스<br>지원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나 공공기관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노동 관계 법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방법 및 절차, 취약계층의 범위, 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함</li> <li>○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li> </ul> | 공인노무사법<br>제26조의2<br>('07.11.18시행)<br>노동위원회법<br>제6조의2<br>(2008.1.1시행) | 근로기준팀<br>(02-2110-7387)<br>노사관계법제팀<br>(02-2110-73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의 요건, 대상, 공인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함   |                                  |                       |
| 14 |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의 금지 | <p>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석면함유제품(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이하인 제품은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다.</p> <p>1. 지붕·천장·벽 또는 바닥재용 석면시멘트 제품</p> <p>2.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됨<br/>※ 예외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킷제품</li> <li>· 미사일용 석면단열제품</li> <li>· 화학공업 설비용으로서 100℃이상 온도의 부식성유체를 취급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입경 1400mm이상의 석면조인트 시트개스킷</li> <li>· 화학공업 설비용으로 사용되는 입경 2300mm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 개스킷</li> <li>-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석면함유 압출성형시멘트판은 시행후 6월까지 양도·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음</li> </ul> </li> <li>○ 석면함유제품 중 석면개스킷제품 및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용 제외)에 대해서는 2009.1.1 시행</li> </ul> | 산업안전보건법 ('08.1.1 시행)             | 산업보건환경팀(02-6922-0956) |
| 15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가 이로</li> </ul>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여성고용팀 (02-2110-7289)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08. 6.21부터 시행<br>※개정법률 공포일부터 6월 경과 후 시행  |                    |
| 16 |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부당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 <신 설>   |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받거나 지원금을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해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년간 융자·지원금의 지급을 제한 할 수 있다.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br><br>○ '07.8.26부터 시행<br>※개정법률 공포일('07.5.25)부터 3월 경과 후 시행  | 장애인고용팀 (2110-7307) |
| 17 |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제재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li> <li>○ 고용장려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u>1년간</u>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2배수를 추가로 징수하고 한편, 2년간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1조<br/><br/>○ '07.8.26부터 시행<br/>※개정법률 공포일('07.5.25)부터 3월 경과 후 시행</li> </ul> | 장애인고용팀 (2110-7307)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8 | 국가자격시험의 한국산업인력공단 통합시행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년부터 개별부처에서 시행하던 공인중개사, 변리사 등 45개 국가자격시험을 자격검정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통합 시행</li> <li>* 공인중개사 등 21개 자격은 '08년 1월부터 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공인회계사 등 24개 자격은 관련법령 개정 후 인력공단에서 시행</li> </ul>                        | 공인회계사법 등 11개법·9개 대통령령 ('08.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자격정책팀 (02-2110-7279)   |
| 19 | 검정수수료 등 지원사업 폐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국가기술자격 2종목 이상 취득자에게 검정수수료 지원<br/>* 지원내용 : 검정수수료 전액과 10만원 (교재대 및 수강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년부터 검정수수료 등 지원을 폐지하되, '07년까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5에 정한 기술자격을 2종이상 취득자로서 자격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지원('09년까지)</li> <li>* '07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사업효과성 미흡으로 평가되고, 국회 등에서 정부투자 대상 부적절 의견 제기</li> </ul> | 고용보험법령 ('08.1월부터 사업 폐지)                   | 자격정책팀 (02-2110-7280)   |
| 20 | 의공기사·의공산업기사·의료전자기능사 및 미용사(피부) 등 4종목 신설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년부터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 및 미용사(피부) 등 4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신설</li> <li>* 신설된 4종목 자격검정은 '08년 하반기에 시행</li> </ul>  | 국가기술자격법령 ('08.1.1부터 신설)                   | 자격정책팀 (02-2110-7281)   |
| 2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 사업장 확대               |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의 규모 :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확대 : 상시근로자수 2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19691호, 2006.9.22)   | 산업안전보건법 ('08.9.1 시행)                      | 안전보건정책팀 (02-6922-0919) |
| 22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시행         | <신 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의 시행에 따라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동법 제19조제1항)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동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각각 설치·운영한 것으로 갈음  | 산업안전보건법 ('08.1.1 시행)                      | 안전보건정책팀 (02-6922-0919)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23 | 자율안전관리업체<br>지정기준 개선             | 최근 3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환산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년도에 법 제23조·제24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시에 2인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자율안전관리업체에서 제외</li> </ul>   | 산업안전보건법 ('08.1.1 시행)                    | 산업안전팀<br>(02-6922-0936) |
| 24 | 진폐건강진단·진폐위로금지급 업무의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 진폐근로자에 대한 산재요양 및 보험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진폐건강진단 및 진폐위로금 지급은 지방노동관서에서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폐건강진단, 진폐위로금지급 등의 업무가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br/><br/>※ 8대 광업 : 석탄광업, 철광업, 템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을 채굴하는 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li> <li>○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노동관서의 진폐건강진단 및 진폐위로금 지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업무와 통합하여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함</li> </ul>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령 ('08.1.1 시행) | 산업보건환경팀(02-6922-0954)   |
| 25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등에 관한 기준의 통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등의 형식이 나라마다, 부처마다 서로 달라 혼선</li> <li>-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에 따라 15 가지로 분류</li> <li>- 건강유해성 : 발암성·변이원성 물질</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유해·위험 문구 및 내용 등의 경고표지를 국제적 기준(GHS)에 맞게 변경</li> <li>-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에 따라 27가지로 분류</li> <li>- 건강유해성(11가지) : 기존 발암성·변이원성 물질 등에 급성독성·전신독성(1회노출, 반복노출) 등을 추가</li> </ul>                       | 산업안전보건법 ('08.7.1 시행)                    | 산업보건환경팀(02-6922-0953)   |

## < 여 성 가 족 부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38개 지역에서 실시</li> <li>○ 소득계층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계층은 저렴형과 일반형 2종 구조</li> </ul> </li> <li>○ 돌보미 양성교육 40시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65개 지역에서 실시</li> <li>○ 지원대상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형(舊저렴형), 나형(舊일반형), 다형(전액부담형)으로 세분화하여 요금 차등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계층에 따라 세분화</li> </ul> </li> </ul> </li> <li>○ 돌보미 양성교육 50시간</li> </ul> | 해당 없음      | 가족정책팀<br>(02-2100-6785~6) |
| 2  |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전국 38개)</li> <li>○ 방문교육 수혜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00여 가정</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대폭확충(80개소)</li> <li>○ 찾아가는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000여 가정으로 대폭 확대</li> </ul> </li> </ul>   | 해당 없음      | 가족통합팀<br>(02-2100-6733)   |

## < 건설교통부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하천의 국유재 폐지 및 매수청구제도입                     | - 하천의 국유재로 인하여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 제한   | ○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인 경우에는 국가하천관리청에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토지에 대한 자유로운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게 됨 | 하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 ('08.4.7 시행)              | 하천환경팀 (02-2110-8451)       |
| 2  | 주택성능등급표시 대상 확대                           | <주택성능등급표시대상은 2천세대 이상이며, 에너지 성능 부문도 2천세대 이상 표시>   | ○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을 “1천세대이상”으로 하고, 특히 에너지 부문은 5백세대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표시도록 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08.1.1. 이후 사업계획승인신청하는분부터 적용) | 주택건설기획팀공급 팀 (02-2110-8599) |
| 3  |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도 의무관리 대상으로 포함 |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br>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br>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br>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 (적용범위 확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를 추가               |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08.4.21부터 시행)                  | 주택건설기획팀 (2110-8598)        |
| 4  |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의 거주기간 요건을 “1년이상”으로 개선         | < 해당 시장등이 개별 지정하도록 하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 >  | ○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인 경우에는 ‘1년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의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08.1.1.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 주택공급팀 (3679-3108~9)        |
| 5  | 조합설립인가‘토지 등소유자 동의요건을 3/4으로 완화’           |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4/5이상으로 규정 >   | ○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3/4 이상으로 개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포한 날로부터)                         | 주거환경팀 (2110-8279)          |
| 6  | 정비사업관련 자료 ‘공개의무 위반자                      | 형사처벌 규정 없음   | ○ 법8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공포 후)                              | 주거환경팀 (02-2110-8279)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형사처벌'                               |  | 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   | 3개월)   |                                    |
| 7  | 건설신기술<br>보호기간 연장신청<br>기한 조정          |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br>신청시 보호기간 만료 180일<br>전까지 신청서 제출<br>(심사기간 180일 이내)  | 보호기간 만료 150일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여 신기술 개발자는 종전보다 30일 동안의 활용실적을 추가로 인정받게 됨<br>(심사기간 150일 이내로 단축)  | 건설기술관리법<br>시행령 개정('08.1.1<br>시행예정)   | 기술정책팀<br>(02-2110-8773)            |
| 8  | 특급건설기술자에 대한<br>계속교육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자가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본교육(2주) 및 전문교육(1주)을 이수</li> <li>○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할 경우 전문교육(1주)이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는 특급기술자는 최초교육 및 승급교육을 면제하고, 매3년마다 90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계속교육제도 시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법규<br/>건설기술관리법<br/>시행령</li> <li>○ 시행일<br/>'08년</li> </ul>   | 기술정책팀<br>(02-2110-8772)            |
| 9  |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연기<br>기여 따른 교육이수 기한<br>연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연기한 경우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법규<br/>건설기술관리법<br/>시행 규칙</li> <li>○ 시행일<br/>'08년</li> </ul> | 기술정책팀<br>(02-2110-8772)            |
| 10 | 타당성 조사시 수요 예측 잘못한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제재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시행한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하여 제재(벌칙, 업무정지, 부실벌점)</li> </ul>      | 건설기술관리법<br>('08.1.1 시행)  | 건설환경팀<br>(02-2110-8780)            |
| 11 | 대형공사입찰방법<br>심의기준 개정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괄·대안입찰공사에 부적합한 공사를 일괄·대안입찰공사로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대형공사 압찰방법 심의대상사설을 구체화하고 발주목적별로 일괄·대안</li> </ul>                    | 대형공사입찰방법<br>심의기준<br>개정('08.1.2 시행)   | 기술안전기획관건설<br>환경팀<br>(02-2110-8782)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 입찰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마련<br>○ 심의위원회가 월별입찰 및 대안입찰방법 심의시 참고할 수 있도록 발주목적별 선정기준 고 검토항목 명시  |                                       |                              |
| 12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관련 투자기관, 협회 임원 등을 평가위원 자격에 포함</li> <li>○ 건설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자 등으로 포함적으로 규정</li> <li>○ 입찰업체간 토론 불허</li> <li>○ 평가결과 설명공개 제한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위원의 자격을 전문분야별 실무경력자 위주로 구성하여 전문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술자로 자격기준 강화</li> <li>-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원과 대학 정교수급 이상으로 자격기준 구체화</li> </ul> </li> <li>○ 평가위원 선정시 전체 평가위원의 40%범위내에서 발주청 자체 기술인력을 우선적으로 선정도록 의무화하여 발주청의 책임성 제고</li> <li>○ 충실향 평가를 위하여 기술위원, 평가위원 및 업체간 토론행성화</li> <li>○ 설계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 등 평가결과를 설명으로 공개하여 설계평가의 투명성 강화,</li> </ul>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08.1.2 시행) | 기술안전기획관건설 환경팀 (02-2110-8782) |
| 13 |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제도 시행         | <신 규>  | ○ 발주청 등에서 중대건설 현장사고에 대하여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발주청 등은 중대건설 현장 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 건설기술관리법 일부시행령개정 ('08.5.18 시행)       | 건설관리팀 (02-2110-8110)         |
| 14 |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거짓발급시 등록취소    | <신 규>  | ○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때 등록이 취소됨  | ○ 건설기술관리법 일부시행령개정 ('08.3.1 시행)        | 건설관리팀 (02-2110-8779)         |
| 15 | 현장투입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 <신 규>  | ○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현장 투입감리원은 3년 경과 시마다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6월 이내에 전문 교육을 받을 것   | ○ 건설기술관리법 일부시행령개정 ('08.1.1 시행)        | 건설관리팀 (02-2110-8806)         |
| 16 |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간 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리원이 중복위반이나, 1년以内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加重하여 부과하되 1년을 초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중처분의 상한치를 법에서 정한 업무정지 최대기간인 2년과 같게 개정</li> </ul>   | ○ 건설기술관리법 일부시행령개정 ('08.1.1 시행)        | 건설관리팀 (02-2110-8806)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7 | 학·경력 감리원의 자격 강화      | 할 수 없도록 규정<br>○ 기술자격자와 학·경력자 모두 감리원등급(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 인정  | ○ 학·경력 기술자는 감리사보를 제외한 수석감리사·감리사의 진입이 금지됨<br><br>※ 이미 학·경력 자격으로 감리원 등급을 부여받은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등급 인정                          | ○ 건설기술관리법 일부시행령개정 ('08.3.1 시행)                     | 건설관리팀 (02-2110-8806)       |
| 18 | 위법행위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강화 | ○ 불성실 감리로 주요구조부의 붕괴 및 사망(12월), 주요구조부가 부실시공되어 중대결합 초래(6월), 인근 주요시설물 피해 등 공중 피해(3월)<br>○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발주청 재산상 피해발생(6월 ~ 24월) | ○ 불성실 감리로 주요구조부의 붕괴 및 사망(24월), 주요구조부가 부실시공 되어 중대결합 초래(12월) 인근 주요시설물 피해 등 공중 피해(6월)<br>○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발주청 재산상 피해발생(6월 ~ 24월) | ○ 건설기술관리법 일부시행령개정 ('08.1.1 시행)                     | 건설관리팀 (02-2110-8806)       |
| 19 | 감리원 중간교체 및 중간평가제 도입  | <신 규>   | ○ 동일현장의 3년이상 장기 배치자에 대하여 중간교체를 허용<br>○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감리용역의 참여감리원을 3년마다 평가하여 일정기준 미달시 교체                                     | ○ 건설기술관리법 일부시행규칙개정 ('08.1.1 시행)                    | 건설관리팀 (02-2110-8806)       |
| 20 |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        | <신 규>   | ○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br>- 등록사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표시·광고를 의무화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07.11.18 시행)               | 토지기획관 토지관리팀 (02-2110-8630) |
| 21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선   |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단일 서식   |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br>-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기타(임목·광업재단·공장재단) 4가지 유형으로 서식 개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08.1.1 시행) | 토지기획관 토지관리팀 (02-2110-8628) |
| 22 |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제 시행    | <신 규>   | ○ 타워크레인은 '08.1.1일부터 건설기계로 등록하며, 시행일 이전에 소유한 타워크레인은 2년이내에 건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포                                  | 건설지원팀 (02-2110-8758)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 <p>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하도록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 및 확인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설계검사, 완성검사 등을 받은 경우 이를 받은 것으로 함.</li> <li>- 타워크레인을 소유한자로서 타워크레인 대여업을 하려는 자는 2년이내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li> </ul> | ('07.11. 5 공포,<br>'08. 1. 1 시행)                     |                         |
| 23 | 비도로용 건설기계 정기검사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검사 :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검사 :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li> <li>- 비도로용 건설기계는 '08.4.6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함.</li> </ul>          | 건설기계관리법<br>개정 공포<br>('07. 4. 6 공포,<br>'08. 4. 6 시행) | 건설지원팀<br>(02-2110-8758) |
| 24 |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이패스 이용차량이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시 5%할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1.1부터 12.31까지 하이패스 이용차량이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시 5%할인</li> </ul> </li> </ul>  | 건설교통부장관<br>공고                                       | 도로정책팀<br>(02-2110-8384) |
| 25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인 경차의 규격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상 경차의 규격이 800cc 미만, 3.5m이하였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차의 규격이 1,000cc, 3.6m이하로 개정됨</li> <li>○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50%를 할인하고 있는 경차의 규격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1,000cc 미만으로 확대하여 '08.1.부터 시행예정</li> </ul>                   | 유료도로법시행령<br>개정추진중<br>('08.1. 시행 예정)                 | 도로정책팀<br>(02-2110-8384) |

## < 해양수산부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인도서와 그 주변 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li> </ul>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08.2)     | 해양정책팀<br>(02-3674-6513)    |
| 2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심층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취수해역 지정,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 부여,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 등 인허가,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사용료 및 부담금 제도 시행</li> </ul>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8.2.4) | 해양개발팀<br>(02-3674-6531)    |
| 3  | 지속가능한 연안 이용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은행 제도 | 지자체 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은행 규모에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면허 공유수면 불법 매립에 대한 처벌기준 미약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만m<sup>2</sup>이상 매립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면허 공유수면 불법 매립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li> <li>○ 매립계획 작성주기 단축(10년→5년)</li> </ul> | 공유수면매립법 ('08.6 예정)              | 연안계획팀<br>(02-3674-6574)    |
| 4  | 연안오염 총량 관리제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방법, 지자체 역할 등 미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에서는 연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군은 시행계획 수립의무 등 절차 마련</li> </ul>   | 해양환경관리법 ('08.1)                 | 해양환경 정책팀<br>(02-3674-6286) |
| 5  | 해양환경 측정 · 분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환경 측정 · 분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생산되는 해양환경 자료의 신뢰성 향상</li> </ul>   | 해양환경관리법 ('08.1.20)              | 해양환경 정책팀<br>(02-3674-6771) |
| 6  | 해양환경개선 부담금 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 해양배출행위 등에 대해 부담금 부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부담금 부과</li> </ul>   | 해양환경관리법 ('08.1.20)              | 해양환경 정책팀<br>(02-3674-6771) |
| 7  | 해양시설 신고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시설 설치 · 운영자는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li> </ul>  | 해양환경관리법 ('08.1.20)              | 해양환경 정책팀<br>(02-3674-6771) |
| 8  | 해양에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조사 실시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에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 상황을 과학적 측정 · 조사를 하고 해양환경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부처에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 요구</li> </ul>                     | 해양환경관리법 ('08.1.20)              | 해양환경 정책팀<br>(02-3674-6771) |
| 9  | 환경친화적 방오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많은 피해를 주는 유기주석</li> </ul>   | 해양환경관리법                         | 해사기술팀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도료의 사용 및 방오시스템 검사       |  | 화합물의 사용을 규제  | ('08.1.20)         | (02-3674-6322)           |
| 10 | 폐기물조사대행 제도 도입           | ○ 해양경찰청에서 수행                             | ○ 해양경찰청 외에 환경관리공단 등 민간전문검사기관에게도 대행할 수 있음   | 해양환경관리법 ('08.1.20) | 해양보전팀 (02-3674-6563)     |
| 11 | 국가 긴급방제 계획의 수립·시행       | <신설>                                     | ○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 긴급 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해양환경관리법 ('08.1.20) | 해양경찰청 방제과 (032-835-3123) |
| 12 | 해양환경관리법                 | <신설>                                     | ○ 기존의 폐기물 해양 배출업, 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을 포함한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 오염물질수거업을 추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신설 (등록 기준, 결격사유 등을 통합하여 적용) | 해양환경관리법 ('08.1.20) | 해양보전팀 (02-3674-6562)     |
| 13 | 해역이용협의 강화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역이용 협의를 하도록 하였으나 회피, 누락 다수 발생 | ○ 골재채취법에 따른 바다골재 채취 및 다른 법률의 의제되는 경우에도 해역이용 협의의무 준수  | 해양환경관리법 ('08.1.20) | 해양보전팀 (02-3674-6564)     |
| 14 | 해역이용 영향 평가제 도입          | <신설>                                     | ○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골재채취 등 사업에 대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   | 해양환경관리법 ('08.1.20) | 해양보전팀 (02-3674-6562)     |
| 15 | 해양환경관리공단 설립             |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 ○ 해양환경관리·보전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  | 해양환경관리법 ('08.1.20) | 해양환경정책팀 (02-3674-6544)   |
| 16 | 선박투자회사 복수 선박 보유 가능      | ○ 1개의 선박투자회사가 1척의 선박만 보유 가능              | ○ 1개의 선박투자회사 설립으로 여러 척의 선박 확보 가능<br>○ 동시에 여러척 확보 시 중복 비용 절감, 중소형·중고선 투자 활성화                          | 선박투자회사법 ('08.1)    | 해운정책팀 (02-3674-6612)     |
| 17 | 선박투자회사 최소 존립기간 단축       | ○ 선박투자회사는 최소 5년 이상 존립                    | ○ 최소 존립기간을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시장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투자 가능, 중소형·중고선 투자 활성화   | 선박투자회사법 ('08.1)    | 해운정책팀 (02-3674-6612)     |
| 18 | 국가 자격시험 산업인력관리 공단 이관 시행 | ○ 해양수산부에서 출제시행체점 발표                      | ○ 해양수산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동으로 시험기본계획 수립<br>○ 산업인력공단 단독으로 시험의 출제·시행·체점 발표                                    | 항만운송사업법 ('08.1)    | 항만운영팀 (02-3674-6653)     |
| 19 | 국가필수 국제 선박 지정 척수 확대     | ○ '06~'07 30척                            | ○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을 연차적으로 확대 ('09 70척, '10 88척)   | 국제선박등록법 ('08.1)    | 해운정책팀 (02-3674-6612)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20 | 예선 등록 기준<br>변경                    | ○ 외국에서 도입하는 예선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선령 12년이하의 예선으로 제한       | ○ 국내에서 예선을 매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선령 12년이하의 예선만 등록하도록 예선등록기준 강화  | 항만법 ('08.2)                               | 항만운영팀<br>(02-3674-6651)    |
| 21 |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낙<br>도보조항로 운항사업자<br>선정 | ○ 반영구적인 운항사업자 (취<br>항명령제)                           | ○ 운항사업자를 매3년마다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   | 해운법 ('08.3.)                              | 연안해운팀<br>(02-3674-6623)    |
| 22 | 물류정책기본법                           | ○ 화물유통촉진법   | ○ 국가물류정책 위원회 기능 강화(건교부장관 →총리)  | 물류정책기본법 ('08.2.3)                         | 물류기획팀<br>(02-3674-6661)    |
| 23 | 항만재개발사업<br>추진                     | < 신설 >  | ○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부산항 등 10개 항<br>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항만재개발 추진<br>○ 부산 북항은 '08. 1월부터 본격 추진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br>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br>률 ('08.1) | 항만재개발기획팀<br>(02-3674-6764) |
| 24 | 원산지표시<br>위반자에 대한<br>공표명령제 도입      | <신 설>   |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br>실을 공표토록 명령<br><공표명령기준><br>- 표시위반물량 : 10톤 이상<br>-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환산금액 : 5억이상(가공품<br>10억이상)<br>- 적발 최근1년이내 처분받은 횟수 : 2회이상 | 수산물품질<br>관리법 및<br>동법시행령<br>('08.1.)       | 유통정책과<br>(02-3674-6831)    |
| 25 | 수산물원산지<br>표시 대상품목<br>확대           | ○ 수산가공품<br>- 조미, 훈제, 어육제품, 통·<br>병조림, 젓갈류<br><추가신설> | ○ 수산가공품(조미, 훈제, 어육제품, 통·병조림, 젓갈류, 레토르트식품)  | 수산물원산지표시요<br>령 ('08.1)                    | 유통정책과<br>(02-3674-6831)    |
| 26 | 양식수산물재해<br>보험 도입                  | <신설>  |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 추진(육상수조식 넙<br>치 양식)   | 양식수산물<br>재해보험법<br>('08.7)                 | 수산경영과<br>(02-3674-6862)    |
| 27 | 수산물이력제<br>제도 도입                   | < 신설 >  | ○ 수산물이력제 도입, 수산물 이력추적 관리를 하고<br>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br>○ 유통대장에서 생산가공유통 등 수산물의 모든 정보 확<br>인 가능,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                                  | 수산물품질<br>관리법 ('08.8)                      | 품질위생팀<br>(02-3674-6921)    |
| 28 | 친환경수산물<br>인증제 도입 시행               | < 신설 >  | ○ 친환경수산물인증제 도입 친환경수산물의 인증기준,<br>절차, 표시방법 등에 대한 내용 신설<br>○ 친환경적인 방법에 의해 생산된 친환경수산물에 대   | 수산물품질<br>관리법 ('08.8)                      | 품질위생팀<br>(02-3674-6924)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29 | 수산물지리적 표시제 시행                     | < 개정 >   | 한 일반수산물과의 구분<br>o 수산물지리적표시제 시행<br>o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고시 폐지<br>o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 개정                          | 수산물품질 관리법 ('08.1)            | 품질위원회 (02-3674-6924)    |
| 30 | 어선표지판을 전국단위로 개선<br>어선표지판 부착 대상 확대 | o 시도, 시군구 지역 약호 표시<br>o 표지판 부착대상 연근해 어업허가 어선 <신 설> | o 지역약호 폐지 및 어선통록번호 표시<br>o 표지판 부착대상 연근해어업허가 어선<br>* 어장관리선   |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고시 ('08.1.1) | 어업지도과 (02-3674-6953)    |
| 31 | 어선 대체시 적용되는 톤수 기준 완화              | o 어선대체시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톤수(소수점 2자리)와 동일한 어선에 한정하여 대체가능  | o 어선 대체시 대체되는 어선 톤수가 소수점 1자리까지 맞는 경우에도 대체가능   |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08.1.1)   | 어업정책과 (02-3674-6914)    |
| 32 | 사유수면 내수면 양식장 현황 파악                | <신설>   | o 자자체에서는 관할구역내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br>o 사유수면의 육상양식장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육상양식장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 | 내수면어업법 ('08.2)               | 유어내수면팀 (02-3674-6907)   |
| 33 | 문어단지어업의 어구사용량 확대                  | o 8톤이상 문어단지의 개수는 7,000개                            | o 8톤이상 문어단지의 개수는 24,000개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07.12)   | 어업정책과 (02-3674-6913)    |
| 34 | 원양산업협회 설립·운영                      | o 사단법인으로 한국원양어업 협회 운영                              | o 원양산업협회를 특수 법인으로 설립하여 원양산업 지원기관으로 육성   | 원양산업발전법 ('08.2.4)            | 원양어업팀 (02-3674-6981)    |
| 35 | 국적선 안전관리 수준 향상대책 추진               | <신설>   | o 외국항 출항정지 선박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인터넷 공표   | 선박안전법 ('07.11.4)             | 해사안전 정책팀 (02-3674-6311) |
| 36 | 선외기 설치선박 등 소형선박의 등록제도 도입          | o 선외기 설치선박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 o 선외기 설치 선박 및 추진기관을 설치한 5톤미만 범선의 선박등록제도 시행  | 선박법 ('08.2.4)                | 해사안전 정책과 (02-3674-6314) |
| 37 | 2톤 미만 소형 선박 검사제도 시행               | o 2톤미만 소형선박과 부유식 해상구조물, 수상호텔 등은 선박검사 대상 제외         | o 2톤미만 소형선박과 부유식 해상구조물, 수상호텔 등은 정기적인 선박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선박안전법 ('07.11.23)            | 해사기술팀 (02-3674-6321)    |
| 38 | 국제항해선박                            | o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 o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제정 시  | 국제항해선박 및                     | 해사안전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보안에 관한 사항 법제화                    | 사항을 해양수산부 고시로 규정  | 행  |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08.2.4)           | 정책팀<br>(02-3674-6316)      |
| 39 | 소형선박 저당권 제도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톤미만 선박은 선박등기 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톤 미만 선박도 소형선박저당법에 따라 저당권 을 설정하고 선박금융을 확보 할 수 있음</li> </ul>  | 소형선박저당법 ('08.8.1)                 | 해사기술팀<br>(02-3674-6325)    |
| 40 | 선박보안책임자 등의 자격요건 구체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괄 보안책임자 및 선박보 안책임자는 전문지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괄 보안책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경력(승선 3년이상 등)과 1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선박보안책임자는 3년이상 선박직원으로 승선하고 12시간 교육을 받아야 함</li> </ul>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08.2.4) | 해사안전 정책팀<br>(02-3674-6316) |
| 41 | 인증심사 대행 기관과의 협정 체결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이나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를 심사하는 대행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함</li> </ul>  | 해상교통안전법 ('08.상반기)                 | 해사안전 정책팀<br>(02-3674-6316) |
| 42 | 선박항행 수역의 선박침몰·좌초 구역에 안전한 침선표지 설치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 침몰, 좌초수역에 신속하게 침선 표지를 설치하여 안전 항행 확보</li> </ul>   | 항로표지법 ('08.상반기)                   | 해양교통 시설팀<br>(02-3674-6341) |
| 43 | 사설항로표지 관리원을 전문 기술자격증 보유자로 배치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로표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인 자<br/>* 연령이 60세이하인자로 제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로표지 기능사·산업기사·기사자격이 있는 자<br/>* 연령은 폐지</li> </ul>  | 항로표지법 ('08.상반기)                   | 해양교통 시설팀<br>(02-3674-6341) |
| 44 | 사설항로표지의 현황 변경을 신고제로 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허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로 완화</li> </ul>   | 항로표지법 ('08.상반기)                   | 해양교통 시설팀<br>(02-3674-6341) |

## <국가보훈처>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국립이천호국원」 개원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에 '국립이천호국원' 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및 강원권의 참전유공자 및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이 안장대상</li> <li>- 6년간 총383억 원을 투입(303,600㎡)</li> <li>- 자연친화적인 야외 납골탑 형태(5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로 15,000기 조성</li> </ul> </li> </ul> </li> </ul>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br>시행령<br>('07. 12. 6 시행) | 선양정책과<br>(02-2020-5255)  |
| 2  | 독립기념관 관람료 무료화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기념관 관람객에게 관람료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른: 2,000원</li> <li>- 청소년: 1,100원</li> <li>- 어린이 · 군경: 700원</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기념관 관람료 무료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관 20주년을 계기로 무료화와 함께 국민들이 즐겨 찾는 역사체험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활성화사업을 추진<br/>(421억 원 '06~10년)</li> <li>* 7개 전시관 중 제4관(계례의 함성)은 '07.8월 재개관</li> </ul> </li> </ul>   | 독립기념관법<br>('08. 1. 1 시행)                       | 현충시설과<br>(02-2020-5157)  |
| 3  | 고령보훈대상자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가복지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훈도우미 400명</li> <li>- 보훈복지사 25명</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가복지전문인력 증원으로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훈도우미 500명(100명 증원)</li> <li>- 보훈복지사 30명(5명 증원)</li> </ul> </li> <li>* 가사 · 간병서비스 제공</li> </ul>  |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사업규정<br>('08. 1. 1 시행)             | 복지기획과<br>(02-2020-5262)  |
| 4  | 국가유공자요양시설 개원 및 이용료 감면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 7월 수원 · 광주 국가유공자요양시설 준공 · 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년까지 3개소 추가 건립 예정</li> </ul> </li> <li>○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본인부담 이용료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대상 : 노인요양환자</li> </ul> </li> </ul>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br>('08. 7. 1 시행)                   | 복지사업과<br>(02-2020-5272)  |
| 5  | 고엽제환자 지원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성골수성백혈병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임</li> <li>○ 현행법은 '07.12.31시효 만료</li> <li>○ 고엽제2세환자 등록시 보훈병원에서 검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li> <li>○ 법의 시효를 '12.12.31까지 5년연장</li> <li>○ 고엽제2세환자 등록절차 간소화(종합전문 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 중 의학적 검토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만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침)</li> </ul>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br>('08. 1. 1 시행)        | 의료지원과<br>(02-2020-5286)<br>심사정책과<br>(02-2020-5161)<br>보상급여과<br>(02-2020-5175)<br>보훈심사위원회<br>(02-2020-5472)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p>한자<br/>및 종합전문요양기<br/>관</p> <p>최종진단서 제출자<br/>모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후<br/>법 적용 결정</p> <p>○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br/>망후<br/>에는 교육·취업지원<br/>중단</p> <p>○ 현 고엽제전우회는<br/>사단<br/>법인으로 인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시행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에게 교육·취업지원 실시</li> <li>○ 고엽제전우회를 공법단체로 인정</li> </ul>   |                                | 복지지원과<br>(02-2020-5291)   |
| 6  | 전직지원금 지급제도<br>시행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년 1월 1일부터 군인연금비대상 장기복무제대 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 지급제도 시행</li> <li>○ 지급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10년 이상~20년 미만)으로서 전역 후 6월 이내에 전직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li> <li>○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간 지급<br/>* 수급기간 중 취업·창업 시에는 잔여기간 지급분의 1/2 일시 지급</li> </ul>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br>법률('08. 1. 1 시행) | 제대군인취업과<br>(02-2020-5324) |
| 7  | 장기복무제대군인<br>주택 특별공급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주택 특별공급</li> <li>○ 공급대상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이 건립하는 국민주택 또는 85m<sup>2</sup> 이하의 민영주택</li> <li>-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이 건립하는</li> </ul> </li> </ul>   | 주택공급에 관한<br>규칙 ('07. 9. 1 시행중) | 제대군인지원과<br>(02-2020-5335)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 국민임대주택   |  |                              |
| 8  | 제대군인 학자금 대부 한도액 인상     | ○ 제대군인 학자금 대부 한도액 : 연간 500만원  | ○ 제대군인 학자금 대부 한도액 인상<br>- 연간 500만원 → 연간 1,000만원(연 4%)<br>* 대부 금융기관 위탁으로 가까운 1,000여개 국민은행에서 신속하게 대부를 받을 수 있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08. 1. 1 시행)         | 제대군인지원과 (02-2020-5335)       |
| 9  |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공법단체 출범 | <신 규>   | ○ 40여개의 특수임무수행자 단체를 통합,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라는 공법단체로 출범<br>-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호국정신 함양 및 사회공익 활동에 기여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08. 1. 27 시행) | 단체협력과 (02-2020-5187)         |
| 10 |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체계 개편        | ○ 연간 2만여건의 심사대상에 비해 조직·인력 부족<br>○ 보훈심사는 공무관련성의 의학적 판단이 중요함에도 전문직 비상임위원에게 제한적으로 서면자문만 실시<br>○ 조사인력 등 부족으로 구술심리, 현지확인·조사 미흡 | ○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3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br>○ 의사·변호사 등 회의참석, 전문성 제고<br>- 위원수 : 11명 → 30명<br>- 전문가 : 의사16명, 교 2명, 변호 2명<br>* 본회의 및 분과회의 1주 5회 개최<br>○ 사실조사 등을 통한 확인 심사, 구술심리, 대상자의 회의 출석 의견진술 등 청문제도 도입 | 국가유공자예우법 및 시행령 ('07. 3. 27 시행 중)         | 보훈심사위원회 운영기획과 (02-2020-5442) |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처                 |
|----|-------------|-------|---|---|----------------------|
| 1  | 「110」서비스 시행 | <신 규> | <p>“이제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전화민원이나 문의는 「110」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어디서나 관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민원을 상담</li> <li>○ 통상적인 민원상담은 자체 상담원이 응대·직접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원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직접 해당기관에 연결하여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함</li> </ul> </li> <li>○ 상담안내시간 : 평일 09:00~19:00,<br/>토요일 09:00~13:00</li> </ul> | 국민고충처리위원회<br>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br>법률 시행령 제4조의2<br><br>※ '07.5.10부터 시행 | 정부민원안내<br>콜센터(☎ 110) |

## < 금융감독위원회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신BIS제도<br>(Basel II)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BIS제도는 모든 은행이 단일화된 방법을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산출</li> <li>○ 은행이 거래하는 기업의 신용도에 관계 없이 동일한 수준의 자기자본을 요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BIS제도에서는 자기자본비율 산출방법을 세분화하여 은행의 영업특성과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도록 허용</li> <li>○ 은행이 거래하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기증치가 세분화되고 이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자기자본 수준이 달라짐</li> </ul>  |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완료 ('07. 6. 28 공포, '08. 1. 1 시행예정)                          | 금융감독원<br>신BIS실<br>(02-3786-8216) |
| 2  | 연결공시제도의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하고(당해 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에 관한사항 등을 작성)</li> <li>- 개별재무제표는 사업연도말 종료후 9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는 사업연도말 종료후 1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08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시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를 연결재무제표(감사인의 감사의견 포함) 기준으로 기재하여야 함</li> </ul> <p style="margin-top: 10px;">※ 당해 법인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도 함께 제출</p> | 증권거래법<br>시행령<br>제83조의3제4항<br>및 부칙<br>제4조('07.1.1.<br>이후 개시하는<br>사업연도부터<br>시행) | 금융감독원<br>공시감독국<br>(02-3786-8426) |
| 3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 폐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권상장법인등은 건전한 재무관리를 위해 이익의 일정부분을 재무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간 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등으로 인해 재무관리를 회사의 자율에 맡길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직접규제를 폐지하고 시장규율로 전환</li> <li>○ 기존 적립금의 환입(일정기간 균등환입 또는 일시적 환입)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li> </ul>   | 유가증권의발행<br>및공시등에관한<br>규정(제56조)<br>개정('07.12.27.<br>시행예정)                      | 금융감독원<br>공시감독국<br>(02-3786-8443) |
| 4  |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 폐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권상장법인등의 복수상장에 따른 불공정거래 소지를 차단하고자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를 9개로 한정하고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권상장법인등의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제도 폐지</li> <li>○ 기업의 해외거래소 선택권은 자율에 맡기되, 복수상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부실공시 등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할 계획임</li> </ul>  | 유가증권의발행<br>및공시등에관한<br>규정(제59조의2)<br>개정('07.12.27.)                            | 금융감독원<br>공시감독국<br>(02-3786-8443)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전자금융거래 시<br>보안등급별 이체<br>한도 차등화 | <p>* 전자금융업무별 이체한도<br/>(단위:천만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이체한도</th> <th>현 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인터넷<br/>뱅킹</td> <td>개인</td> <td>1회 10<br/>1일 50</td> </tr> <tr> <td>법인</td> <td>1회 50<br/>1일 500</td> </tr> <tr> <td>개인</td> <td>1회 5<br/>1일 25</td> </tr> <tr> <td>법인</td> <td>1회 10<br/>1일 50</td> </tr> </tbody> </table> | 구 분     | 이체한도       | 현 행  | 인터넷<br>뱅킹 | 개인 | 1회 10<br>1일 50 | 법인 | 1회 50<br>1일 500 | 개인 | 1회 5<br>1일 25 | 법인 | 1회 10<br>1일 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08년 1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을 통한 전자금융거래 시 거래이용수단에 따라 이체한도가 차등 적용</li> <li>- 거래이용수단의 보안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하고 보안등급에 따라 거래한도 차등화</li> </ul> <p>* 전자금융업무별 이체한도<br/>(단위:천만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이체<br/>한도</th> <th colspan="3">보안 등급</th> </tr> <tr> <th>1등급</th> <th>2등급</th> <th>3등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인터넷<br/>뱅킹</td> <td>개인</td> <td>1회 10<br/>1일 50</td> <td>5<br/>25</td> <td>1<br/>5</td> </tr> <tr> <td>법인</td> <td>1회 50<br/>1일 500</td> <td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 </tr> <tr> <td>개인</td> <td>1회 5<br/>1일 25</td> <td>2<br/>10</td> <td>1<br/>5</td> </tr> <tr> <td>법인</td> <td>1회 10<br/>1일 50</td> <td>2<br/>10</td> <td>1<br/>5</td> </tr> </tbody> </table> <p>* 전자금융업무별 이체한도</p> <table border="1"> <thead> <tr> <th>거래이용수단</th> <th>보안등급</th> </tr> </thead> <tbody> <tr> <td>OTP발생기+공인인증서</td> <td rowspan="4">1 등 급</td> </tr> <tr> <td>HSM 방식 공인인증서 + 보안카드</td> </tr> <tr> <td>보안카드 + 공인인증서 + 2 channel 인증</td> </tr> <tr> <td>보안카드 + 휴대폰 SMS(거래내역통보)</td> </tr> <tr> <td>보안카드</td> <td>2 등 급</td> </tr> <tr> <td></td> <td>3 등 급</td> </tr> </tbody> </table> | 구 분 | 이체<br>한도 | 보안 등급 |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인터넷<br>뱅킹 | 개인 | 1회 10<br>1일 50 | 5<br>25 | 1<br>5 | 법인 | 1회 50<br>1일 500 |  |  | 개인 | 1회 5<br>1일 25 | 2<br>10 | 1<br>5 | 법인 | 1회 10<br>1일 50 | 2<br>10 | 1<br>5 | 거래이용수단 | 보안등급 | OTP발생기+공인인증서 | 1 등 급 | HSM 방식 공인인증서 + 보안카드 | 보안카드 + 공인인증서 + 2 channel 인증 | 보안카드 + 휴대폰 SMS(거래내역통보) | 보안카드 | 2 등 급 |  | 3 등 급 | <p>시행예정)</p> <p>전자금융감독규정<br/>('08. 4. 1<br/>시행 예정)</p> | <p>금감위<br/>복합금융감독과<br/>(02-3771-5172)</p> <p>금감원<br/>복합금융감독실<br/>IT감독팀<br/>(02-3786-7158)</p> |
| 구 분                         | 이체한도                           |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터넷<br>뱅킹                   | 개인                             | 1회 10<br>1일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                             | 1회 50<br>1일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                             | 1회 5<br>1일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                             | 1회 10<br>1일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이체<br>한도                       | 보안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터넷<br>뱅킹                   | 개인                             | 1회 10<br>1일 50  | 5<br>25 | 1<br>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                             | 1회 50<br>1일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                             | 1회 5<br>1일 25   | 2<br>10 | 1<br>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                             | 1회 10<br>1일 50  | 2<br>10 | 1<br>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래이용수단                      | 보안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TP발생기+공인인증서                | 1 등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SM 방식 공인인증서 + 보안카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안카드 + 공인인증서 + 2 channel 인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안카드 + 휴대폰 SMS(거래내역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안카드                        | 2 등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등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6  | 현금자동화기기(CD/ATM) 운영에 대한 감독 강화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보조업자(VAN사업자) 등이 자동화기기의 설치 및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성 기준 마련</li> <li>○ 자동화기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 기기의 보안 적합성 테스트 의무화</li> <li>○ 금융회사가 VAN사업자 등의 안전성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관리실태를 금융회사의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시 반영</li> </ul> | 전자금융감독규정 ('08. 4. 1 시행 예정)  | 금감위<br>복합금융감독과 (02-3771-5172)<br>금감원<br>복합금융감독실<br>IT감독팀 (02-3786-7158) |
| 7  | 금융회사의 전자금융 거래 약관 변경 시 통지방법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할 경우 전자적 장치에 변경내용을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보하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 또는 법령 개정에 따라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할 경우 2개 이상의 전국 일간신문에도 공고</li> <li>○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 의무는 삭제하되, 이용자가 약관변경 내용을 통지받지 못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약관변경에 대해 유효하게 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의무화</li> </ul> | 전자금융감독규정 ('08. 2. 1 시행 예정)  | 금감위<br>복합금융감독과 (02-3771-5172)<br>금감원<br>복합금융감독실<br>IT감독팀 (02-3786-7158) |   |
| 8  | 채권 장외 호가집중 제도 시행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한 호가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시</li> <li>○ 채권전문딜러 호가 및 소액채권 체결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시</li> </ul>  | 증권업감독규정, 채권장외거래공시 등에 관한규칙 및 동 규칙시행세칙 ('07.12.4 시행)                      | 한국증권업협회<br>채권부 (2003-9206)  |
| 9  | 채권 장외 거래내역 공시 제도 강화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예외(증권회사간 매매, 자전 거래, 10억원 미만 거래) 이외의 모든 채권 장외거래내역을 15분 이내에 공시</li> <li>○ 채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한 거래내역을 15분 이내에 공시</li> </ul>   | 증권업감독규정, 채권장외거래공시 등에 관한규칙 및 동 규칙시행세칙 ('07.12.4 시행)  | 한국증권업협회<br>채권부 (2003-9205)  |   |

## <국가청소년위원회>

| 번호 | 제목                               |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과 기간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기간 : 5년(형 집행 종료 후)</li> <li>○ 등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강간, 강제추행)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li> </ul> </li> <li>○ 등록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성명</li> <li>②생년월일</li> <li>③현 직장 및 실제거주지주소</li> <li>④사진</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기간 : 10년(형 집행 종료 후)</li> <li>○ 등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자 또는 법원에 의해 열람 명령이 확정된 자</li> <li>- 성매수의 경우는 재범자이거나 대상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li> </ul> </li> <li>○ 등록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성명</li> <li>②주민등록번호</li> <li>③주소 및 실제거주지</li> <li>④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li> <li>⑤사진</li> <li>⑥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li> <li>⑦소유차량의 등록번호</li> </ul> </li> </ul>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08.2.4 시행) | 청소년성 보호팀<br>(02-2100-8643~7) |
| 2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 대상 및 열람권자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람기간 : 5년(형 집행 종료 후)</li> <li>○ 열람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강간, 강제추행)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li> </ul> </li> <li>○ 열람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성명 ②생년월일 ③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 주소 ④사진</li> <li>○ 열람권자</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람기간 : 5년(형 집행 종료 후)</li> <li>○ 열람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13세 미만의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li> <li>②13세 미만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li> <li>③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등</li> </ul> </li> <li>○ 열람정보</li> </ul>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08.2.4 시행) | 청소년성 보호팀<br>(02-2100-8643~7) |

|   |                               |  |   |   |
|---|-------------------------------|--|---|---|
|   |                               | <p>①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후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p> <p>②청소년관련 시설 및 교육기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li> </ul>   | <p>①성명 ②나이 ③주소 및 실제거주지 ④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사진 ⑥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p> <p>○ 열람권자</p> <p>①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p> <p>②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의 청소년관련 시설 및 교육기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추가 :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li> </ul> |   |
| 3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시설과 취업제한기간 확대 | <p>○취업제한기간 : 5년(형 확정 후)</p> <p>○취업제한대상 시설 및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li> <li>- 초·중·고등학교</li> <li>-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li> <li>-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li> <li>- 청소년활동시설(수련관, 문화의집등)</li> <li>- 청소년쉼터</li> <li>- 보육시설</li> <li>- 아동복지시설</li> </ul> | <p>○취업제한기간 : 10년(형 확정 후)</p> <p>○취업제한대상 시설 및 기관</p> <p>&lt;추가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li> <li>-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li> <li>-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li> </ul>  | <p>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08.2.4 시행)</p> <p>청소년성 보호팀<br/>(02-2100-8643~7)</p> |

|   |                             |   |   |   |                                     |
|---|-----------------------------|---|---|---|-------------------------------------|
|   |                             |   |   |   |                                     |
| 4 |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기관, 시설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li> <li>○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li> <li>○ 청소년보호센터, 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li> <li>○ 의료기관</li> </ul> | <p>(추가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li> <li>○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li> <li>○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li> <li>○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li> <li>○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기관</li> </ul> | 청소년의<br>정보호에<br>관한<br>법률("08.2.4<br>시행) | 청소년성<br>보호팀<br>(02-2100-8<br>643~7) |
| 5 |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신설)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함</li> <li>○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 내에서 홍보영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li> </ul>              |   |                                     |
| 6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별죄로 변경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친고죄가 폐지되고 반의사불별죄로 개정되어 피해청소년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의 수사개시가 가능</li> </ul>   | 청소년의<br>정보호에<br>관한<br>법률("08.2.4<br>시행) | 청소년성<br>보호팀<br>(02-2100-8<br>643~7) |
| 7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단순소지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목적은 물론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li> </ul>   |   |                                     |
| 8 | 친권상실 선고 및 후견인 변경 결정 청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친</li> </ul>   | 청소년의<br>정보호에                            | 청소년성<br>보호팀                         |

|    |                                  |       |  |   |                                     |
|----|----------------------------------|-------|--|---|-------------------------------------|
|    | 구 가능                             |       | <p>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 청구가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은 검사에게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요청이 가능</li> </ul>                                 | 관한<br>법률("08.2.4<br>시행)                 | (02-2100-8<br>643~7)                |
| 9  | 피해청소년의 보호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자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가정 구성원인 관계인 경우 동법에 의한 응급조치(제5조), 임시조치의 청구등(제8조), 임시조치(제29조), 항고(49조) ~ 집행의 부정지(53조) 규정을 준용</li> </ul> |   |                                     |
| 10 | 청소년관련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li> </ul>   | 청소년의<br>성보호에<br>관한<br>법률("08.2.4<br>시행) | 청소년성<br>보호팀<br>(02-2100-8<br>643~7) |
| 11 | 성범죄의 발생추이<br>와 동향 공표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성범죄 발생추이와 동향, 계도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공표해야 함</li> </ul>  |   |                                     |
| 12 | 취업제한 여부 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여부 점검·확인 및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li> </ul>  |   |                                     |

## <조 달 청>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불량품 신고센터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량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품질불만사항에 대한 창구일원화로 수요기관 불편해소</li> <li>○ 불량품 발생업체 정보 나라장터에 공개</li> <li>○ 불량품 제조업체에 대한 기동점검 연 2회 이상 실시</li> <li>○ ‘불량품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 시행으로 조달업체의 자발적인 품질향상 유도</li> </ul>         | 불량품<br>처리규정(조달청 훈령,<br>현재 제정검토 중)<br>- '08.1.1 시행예정   | 품질관리단<br>(031-260-8607)                                |
| 2  | 지방자체단체 자체발주<br>공사 범위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 단체의 500억 원 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도록 자율범위 확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도록 자율범위 확대</li> </ul>   | 조달사업법시행령<br>부칙<제18634호,<br>2004.12.31> 제4항<br>제2호<br><br><2008.1.1 시행>  | 시설총괄팀<br>(042-<br>481-7340)                            |
| 3  | 추정가격 1,500억원 이상<br>최저가낙찰제<br>대상공사에<br>신기술·신공법을<br>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를 인정하지 않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를 인정</li> <li>○ 이 경우 입찰금액적정성심사대상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제안한 경우에는 절감제안설계서에 대하여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대상자로 결정토록 함.</li> </ul> | “최저가낙찰제의<br>입찰금액<br>적정성심사기준”(회계<br>예규<br>2200.04-156-5,2007.10.<br>12)<br><br>“최저가낙찰제<br>대상공사에 대한<br>입찰금액의<br>적정성심사세부기준”(<br>조달청 시설총괄팀-9394 | 시설총괄팀<br>(042-481-7340)<br><br>토목환경팀<br>(042-481-7375) |

| 번호 | 제 목                               | 종 친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   | ,2007.11.21)<br>“조달청<br>설계자문위원회 설치<br>및 운영규정”(조달청<br>훈령 제1404호) 개정<br>증<br><br><2008.1.1.<br>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
| 4  | 조달청<br>감리전문회사<br>사업수행능력<br>세부평가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실적 없는 업체 기본점 수부여</li> <li>o 1억원 미만의 해외감리 실적은 하한금액 규정 없이 0.1건으로 인정</li> <li>o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기간 기준시점을 입찰공고일 현재 직전년도 말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평가하여 매 입찰마다 실적증명을 준비해야 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실적 없는 업체 기본점수 삭제</li> <li>o 1억원 미만의 해외감리실적은 여러 건을 합산하여 1 억 원 이상이 되면 1억원으로 평가</li> <li>o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기간 기준시점을 입찰공고일 현재 직전년도 말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평가하여 매 입찰마다 실적증명을 준비해야 했던 불편 해소</li> </ul>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br>칙 제13조<br>-조달청 감리전문회사<br>사업수행능력<br>세부평가기준(조달청<br>용역계약팀-5660,<br>2007.12.4)<br><2008.1.1 시행> | 용역계약팀<br>(042-481-7161) |

## <기상청>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폭염특보제도 |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름철 폭염 때문에 발생하는 재해예방을 위해 폭염특보제도 시행. (2007년 여름 시험 운영 후 2008년 여름철 본격 시행)</li> </ul> | 소방방재청과 협의 중 | 기상청<br>예보정책과<br>(02-2181-0494) |

## < 병무청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작전동원명령서 병무청 교부            | ○ 각 군에서 지역예비군부대를 통하여 대면교부                                     | ○ 병무청전자우편센터에서 작전동원명령서와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함께 교부<br>○ 반송된 작전동원명령서는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와 함께 해당 예비군부대에서 대면교부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동원) ('08.1.1 시행)                             | 동원소집본부<br>동원관리팀<br>(042-481-2791) |
| 2  | 장교, 부사관 동원훈련 재소집          | ○ 동원훈련 미참가시 지역예비군 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 참 입영훈련 실시                      | ○ 동원훈련 미참가시 다른부대로 재지정하여 훈련 실시   | 예비군교육훈련 지침 ('08.1.1 시행)                                    | 동원소집본부<br>동원관리팀<br>(042-481-2763) |
| 3  | 기간산업분야 보충역자원 인원배정 방법 개정   | ○ 보충역자원에 대해 병역지정 업체별 인원배정 없이 업체 소요대로 편입                       | ○ 보충역자원에 대해 병역지정업체별 인원배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8조('07.10.23 시행)                   | 병무청 산업지원팀<br>(042-481-2771)       |
| 4  | 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 업체 인원배정 기준 개정 | <신 규>   | ○ 종업원수 15인 미만 업체 인원배정 제한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9조('07.10.23 시행)                   |                                   |
| 5  | 복무관리 부실업체 편입 제한           | ○ 복무관리 부실업체에 대해 복무관리 부실이 확인 된 때부터 다음해부터 편입제한                  | ○ 복무관리 부실업체에 대해 복무관리 부실이 확인 된 때부터 편입제한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9조('07.10.23 시행)                   | "                                 |
| 6  | 신고의무자 본인의 질병 비공개 요청제도 마련  | ○ 수치성 질환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일정한 질병명, 심신장애 사유 등에 대하여 직계비속의 경우만 비공개 | ○ 신고의무자 본인의 경우에도 직계비속과 같이 일정한 질병명 및 심신장애 사유 등 비공개 요구 가능                                       |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완료 ('07. 12월 공포, '08. 1월 시행예정) | 동원소집본부<br>공개심사팀<br>(042-481-2777) |
| 7  | 병역사항신고시 병적증명서 첨부제도 폐지     | ○ 신고의무자가 병역사항신고시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신고 대상자의 병적증명서 첨부                 | ○ 병역사항 신고시 병적증명서 첨부제도 폐지  |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07. 5.17 공포, '07.11.17 시행)   | 동원소집본부<br>공개심사팀<br>(042-481-2777)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8  | 병역사항 변동신고 제도 개선          | o 신고의무자는 매년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변동내역을 다음해 1월 중 신고(년 1회 공개) | o 병무청장이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에 대한 변동내역을 분기별로 확인하여 공개. 다만, 직계비속이 18세가 되거나 가족관계가 변동되는 등 병무청장이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신고의무자가 신고   |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07. 5.17 공포, '07.11.17시행) | 동원소집본부<br>공개심사팀<br>(042-481-2777)         |
| 9  | 자녀있는 기혼자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 <신 규>   | o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자녀를 둔 기혼자는 원예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 졸업자, 박사학위 학력자 제외)  | 현역병입영 업무 예규('08.1.1 시행)<br>※ '07.11.13일부터 신청접수          | 현역입영본부<br>현역입영팀<br>(042-481-2716)         |
| 10 | 육군 입영부대 입영시간 변경          | o 육군 입영부대 입영시간 ⇒ 13:00                            | o 입영장정과 가족들의 여유있는 이동 및 점심식사 여건 보장을 위하여 육군 입영부대 입영시간 조정<br>- 당초 13:00 ⇒ 변경 13:30   | ('08.1.1 시행)  | 현역입영본부<br>현역입영팀<br>(042-481-2716)         |
| 11 | 해·공군병 모집일원화 시행           | 육군병만 병무청에서 모집하고 해군(해병대포함), 공군은 각 군에서 모집           | o 해군(해병대포함), 공군에서 모집하고 있었던 병모집 업무를 '08년 1월부터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08년 7월부터 병무청에서 전면 모집<br>- '08. 1.1~6.30 : 일부분야만 병무청에서 시험모집<br>• 해군 : 조리, 이발, 기관, 의무<br>• 공군 : 기계, 차량정비, 통신전자전기, 방공포<br>- '08. 7. 1. 이후 : 모든 분야를 병무청에서 모집 | 병역법제20조<br>(현역병의 모집)                                    | 현역입영본부<br>해·공군병모집일원화추진단<br>(042-481-3072) |
| 12 |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 소양 및 직무교육 실시 | o 기초군사훈련 후 별도 교육 없이 복무 개시                         | o 신규 투입되는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기초군사훈련 후 소양 및 직무교육(2~3주) 실시<br>o 소양 및 직무교육을 통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봉사정신 함양 및 현장 적응력 제고  | 병역법제33조의2<br>('07.10.1. 시행)                             | 사회복무정책본부<br>사회복무교육팀<br>(042-481-3009)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3 |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현장중심 형 복무관리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휘 · 감독권은 복무기관장에게만 있음</li> <li>○ 지방병무청장은 사후 실태조사만 실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처와 병무청 협조체계 구축,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li> <li>- 복무기관장 : 기초적인 복무관리업무 수행</li> <li>- 관계부처 : 직무관리 역할 수행</li> <li>- 병무청 : 지방병무청장에게도 복무관리 감독권 부여<br/>* 지역복무관리센터 설치 및 사회복무감독관 배치를 통한 현장관리 기능 강화 등</li> </ul> | 병역법 제31조 제5항<br>(‘07.10.1. 시행) | 사회복무정책본부<br>사회복무관리팀<br>(042-481-3010) |

## < 산 림 청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도시림 대상지역 조정       | ○ 도시림 현황통계 및 실태조사시 조사대상을 시의 '면'지역까지 포함                       | ○ 시의 '면'지 역을 제외한 모든 '읍'지 역 이상으로 변경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008. 7월)            | 도시숲정책팀<br>(042-481-4106) |
| 2  |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 ○ 도시림 조성·관리계획(10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5년)으로 구분 운영                  | ○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으로 통합 운영(10년 계획)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008. 7월)           | 도시숲정책팀<br>(042-481-4106) |
| 3  | 산림사업법인 관리 강화      | ○ 3회 이상 영업정지 후 법인 등록 취소<br>○ 산림청에서 법인 등록·관리 및 실태조사 실시        | ○ 폐업사실 확인시 즉시 등록 취소<br>○ 시·도에서 법인 등록·관리 및 실태조사 실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행령 제71조 (2008. 7월) | 경영지원팀<br>(042-481-4195)  |
| 4  | 녹색자금 사용용도 확대      | <신 규>  | ○ 녹색자금 사용용도에 해외산림자원 확보 및 해외산림기능 증진사업 추가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2008. 7월)           | 해외자원팀<br>(042-481-4088)  |
| 5  | 등산지원센터 설립·운영      | <신 규>  | ○ 등산교육, 전문산악인 양성 및 지원, 등산기술 개발,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 등을 위해 등산지원센터 설립·운영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2008. 7월)               | 등산지원팀<br>(042-481-4206)  |
| 6  |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제도 도입 | <신 규>  | ○ 사방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기본계획 및 사방사업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에 관한 타당성 평가 실시     | ○ 사방사업법 제7조의3 (2008. 2. 4)                       | 치 산 팀<br>(042-481-4271)  |
| 7  | 사방시설의 관리 강화       | ○ 사방시설 관리자 이원화<br>- 산림조합 또는 산림소유자<br>- 사방사업 시행자<br><br><신 규> | ○ 사방시설 관리자 일원화<br>- 사방사업 시행자<br><br>○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을 실시     | ○ 사방사업법 제15조 (2008. 2. 4)                        | 치 산 팀<br>(042-481-4271)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도록 안전진단제도 도입   |   |                         |
| 8  | 사방협회 신설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 사방사업과 관련한 조사·평가·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방협회' 설립·운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방사업법 제22조의2 (2008. 2. 4)</li> </ul>     | 치 산 팀<br>(042-481-4271) |
| 9  | 조림시 별채비용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불피해지 및 불량활엽수목 조림 시 예정지 정리 사업비만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정지 정리 사업비에 별채비용을 포함하여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책 (2008. 1. 1)</li> </ul>              | 산림자원팀<br>(042-481-4185) |
| 10 | 유유토지 조림비 지원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유토지 조림시 묘목대 및 식재인건비 만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림목 주위에 부직포(1m×1m) 설치 비용 추가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책 (2008. 1. 1)</li> </ul>              | 산림자원팀<br>(042-481-4185) |
| 11 | 해외조림 지원 확대 및 조림목 도입의무 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조림 융자금은 산업조림에만 지원</li> <li>○ 해외조림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해외조림목 전량 반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융자금 지원대상에 탄소배출권 조림 및 바이오에너지 조림을 추가</li> <li>○ 목재자원 수급 위기시 정부의 반입명령에 따라 반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사업시행지침 (2008. 1. 1)</li> </ul>         | 해외자원팀<br>(042-481-4088) |
| 12 | 산림경영계획 지원단가 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단가 : 10,189원/ha</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단가 : 10,800원/ha</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사업시행지침 (2008. 1. 1)</li> </ul>         | 경영지원팀<br>(042-481-4195) |
| 13 |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맹은 감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산지 5개 지역(전남 광양·영암, 경북 상주·청도, 경남 하동)</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맹은 감 재해보험 본 사업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사업시행지침 (2008. 1. 1)</li> </ul>         | 경영지원팀<br>(042-481-4191) |
| 14 | 임업인 안전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보상금 : 15백만원 (농업인의 42% 수준)</li> <li>○ 공제료 : 53,930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보상금 : 30백만원 (농업인의 67% 수준)</li> <li>○ 공제료 : 66,200원(잠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사업시행지침 (2008. 1. 1)</li> </ul>         | 경영지원팀<br>(042-481-4191) |
| 15 | 산림분야 세제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비전산지 : 종합부동산세 부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비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 수립 후 사업 중인 임야는 별도 합산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지역 제외</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2008. 1. 1)</li> </ul> | 경영지원팀<br>(042-481-4191)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6 | 전문임업인 임야매입자금 지원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야매입 면적 중 보전산지 비율 90% 이상</li> <li>- 지원단가 : 10,000원/3.3m<sup>2</sup></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야매입 면적 중 보전산지 비율 70% 이상</li> <li>- 지원단가 : 50,000원/3.3m<sup>2</sup></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업정책자금<br/>집행지침(2008. 1. 1)</li> </ul> | 경영지원팀<br>(042-481-4195) |
| 17 |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전융자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사업 사전융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림, 숲가꾸기, 단기임산물수집, 산림조합육성</li> </ul> </li> <li>○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사업완료 후 융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부담이 없는 운영자금은 모두 사전융자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산림투자, 전문임업인 육성(장기수 조림·숲가꾸기, 기타사업 중 운영자금) 추가</li> </ul> </li> <li>○ 자부담이 있는 사업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수목원 조성, 장뇌삼 생산, 단기산림소득자금, 조림용 묘목생산(묘목생산), 목가공시설 지원, 보드류시설 지원, 국산원자재, 폐목재구입, 유통센터 원료 구입, 수출원자재 구입, 임업기계화</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사업시행지침<br/>(2008. 1. 1)</li> </ul>   | 경영지원팀<br>(042-481-4195) |
| 18 | 산촌생태마을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사업 전액 보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신 규&gt;</li> </ul> </li> <li>○ 세부사업 전액 보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신 규&gt;</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소득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20%를 마을공동으로 추가 부담</li> <li>○ 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품 판매, 유통, 교육, 홍보, 운영관리 업무지원</li> <li>- 60명, 592백만원</li> </ul> </li> <li>○ 평가결과 우수마을에 대해 추가사업비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사업시행지침<br/>(2008. 1. 1)</li> </ul>   | 산촌소득팀<br>(042-481-4124)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9 | 단기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 <신 규><br><br><신 규><br><br><신 규>  | - 경영, 조성, 설계 등 3개 부문<br><br>o 임산물 지리적표시 인증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품브랜드화 추진<br>- 디자인 개발비 : 420백만원<br>- 저장·포장라인 보완 : 394백만원<br><br>o 분재재배의 유통 물류비 절감을 위해 유통차량 지원<br>- 18대, 94백만원<br><br>o 임산물유통센터의 저온 저장시설 및 선별장 시설 보완(210백만원) | o 농림사업시행지침<br>(2008. 1. 1) | 산촌소득팀<br>(042-481-4124) |
| 20 | 산지소득증대 기반 조성  | <신 규><br><br><신 규><br><br>o 밤·잣 생산장비 지원단가<br>- 굴삭기 0.17m <sup>3</sup> 기준 48백만원/ 대당<br><br>o 수설류 작업로 지원단가<br>- 3백만원/km<br><br>o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단가<br>- 40백만원/개소 | o 경제성이 없고 폐원 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대체작목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br><br>o 잣나무 조림지 등 작업로 시설을 위한 장비 지원<br><br>o 밤·잣 생산장비 지원단가<br>- 1톤 미만의 굴삭기 실소요액<br><br>o 수설류 작업로 지원단가<br>- 5백만원/km<br><br>o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단가<br>- 20백만원/개소       | o 농림사업시행지침<br>(2008. 1. 1) | 산촌소득팀<br>(042-481-4157)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중펌프 용량 : 5마력</li> <li>o 관상수 재배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트랙터, 굴삭기 등 장비 지원</li> <li>o 독립가 · 임업후계자 유실수 임지 작업로 시설</li> <li>- 단가 : 4백만원/km</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중펌프 용량 : 3마력</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독립가 · 임업후계자 유실수 임지 작업로 시설</li> <li>- 단가 : 5백만원/km</li> </ul> |   |                           |
| 21 |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화목겸용보일러 지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화목겸용보일러 지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숟가꾸기 및 목재부산물을 활용하여 펠릿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지원</li> <li>o 펠릿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보급 시범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휴양림 4개소(24대)</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농림사업시행지침<br/>(2008. 1. 1)</li> </ul>  | 목재이용팀<br>(042-481-4201)   |                           |
| 22 | 사유림 벌채운재로 시설 지원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벌기령에 도달한 입목의 벌채시 목재운송장비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시설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농림사업시행지침<br/>(2008. 1. 1)</li> </ul> | 목재이용팀<br>(042-481-4204)   |
| 23 | 목재정보 제공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목재생산, 가격정보 등을 산주, 목재업체에 제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농림사업시행지침<br/>(2008. 1. 1)</li> </ul> | 목재이용팀<br>(042-481-4204)   |
| 24 | 사립수목원 특성사업 지원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사립수목원 특성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모 : 1개소당 5억원<br/>(국비 50%, 자부담 50%)</li> <li>- 기간 : 3년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시 책<br/>(2008. 1. 1)</li> </ul>      | 산림환경보호팀<br>(042-481-4248)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25 | 자연휴양림 경쟁력 강화 | <p>&lt;신 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휴양·환경·건축·토목 등에 관한 전문가 및 주민·시민단체 대표와 관계 공무원으로 자연휴양림 설계·조성 자문 위원회 구성 운영</li> <li>○ 숲해설가를 국유 자연휴양림에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3명(공유 56명, 사유 17명)</li> </ul> </li> <li>○ 국유 자연휴양림의 사업성과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li> </ul> <p>&lt;신 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유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시설 보완 등 기초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소당 2억원 이내</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책<br/>(2008. 1. 1)</li> </ul>   | 산림휴양정책팀<br>(042-481-4211)   |                                 |
| 26 | 산림보호강화사업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부임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5천원/1인/1일</li> </ul> </li> <li>○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노숙자</li> <li>- 정기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및 연금수혜자 제외</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경비 및 조장수당 추가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부임 : 35천원/1인/1일</li> <li>- 부대경비 : 5천원/1인/1일</li> <li>- 조장수당 : 2천원/1인/1일</li> </ul> </li> <li>○ 신청자격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재해감시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책<br/>(2008. 1. 1)</li> </ul>                          | 산불방지팀<br>(042-481-4255)         |
| 27 | 재선충병 방제방법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선충병 발생지역 소나무류 조림·육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생지역에서 10km이내</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선충병 발생지역 소나무류 조림·육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생지역에서 6km이내</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br/>제7조<br/>(2007. 11. 20)</li> </ul> | 산림병해충<br>방제 팀<br>(042-481-4076)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급사업 위주로 방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영방제단 37단</li> </ul> </li> <br/> <li>○ 재선충병 설계·감리는 집단피해지 인 부산·경남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 2,000ha</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영방제 사업체제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영방제단 74단</li> </ul> </li> <br/> <li>○ 적정 피해본수가 넘는 지역까지 설계·감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 5,500ha</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8. 1. 1)</li> </ul> </li> <br/> <li>○ 시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8. 1. 1)</li> </ul> </li> </ul> |                                 |
| 28 | 산림병해충 방제 단비 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단비의 법정비용 중 산재보험료만 반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단비에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고용 보험 등을 추가 반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8. 1. 1)</li> </ul> </li> </ul>  | 산림병해충<br>방제 팀<br>(042-481-4269) |
| 29 |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방법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사목과 피해도 '심'인 감염목 위주 방제</li> <br/> <li>○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사목, 피해도 심·중·경 등 4 단계로 구분</li> </ul> </li> <br/> <li>&lt;신 규&gt;</li> <br/> <li>&lt;신 규&gt;</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목 전체 방제</li> <br/> <li>○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사목, 피해도 심·경 등 3단계로 구분</li> </ul> </li> <br/> <li>○ 훈증약제 주사방법 새로 적용</li> <br/> <li>○ 전담 예찰원 배치, 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및 지역별 방제담당(책임)자 지정·운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8. 1. 1)</li> </ul> </li> </ul>  | 산림병해충<br>방제 팀<br>(042-481-4269) |
| 30 | 밤나무병해충 항공방제 횟수 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밤나무병해충 항공방제 2회 실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밤나무병해충 항공방제 1회 실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8. 1. 1)</li> </ul> </li> </ul>  | 산림병해충<br>방제 팀<br>(042-481-4269) |
| 31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15인으로 구성·운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을 30명으로 확대·운영</li> <br/> <li>○ 위원회에 2개 분과위원회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8. 1. 1)</li> </ul> </li> </ul>  | 산지정책팀<br>(042-481-4141)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 <p>구성 ·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분과위원회 : 보전산지 지정 · 변경 · 해제, 산지에서의 구역 지정 협의 등 심의</li> <li>- 제2분과위원회 : 산지전용 · 토석채취 허가(협의) 타당성 등 심의</li> </ul>  |   |                           |
| 32 | 산지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인이 산지규제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 · 군 · 구청을 방문하여 종이도면과 대장으로 확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관리정보시스템에 산지정보 DB를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국민에게 제공</li> <li>-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li> <li>- 개별 법령에서 변경되는 지역 · 구역 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최신 정보 제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책 (2008 하반기)</li> </ul>        | 산지정책팀<br>(042-481-4145)   |
| 33 |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회관, 찜질방, 휴게소, 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li> <li>- 트랙터, 지게차 등 고가 장비</li> <li>- 주민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 ·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li> </ul> </li> <br/> <li>○ 지원 한도액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사업 : 마을별 참여 가구당 3백만원을 기준으로 총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li> <li>- 개인사업 :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li> <li>-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할 수 있음</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사업시행지침 (2008. 1. 1)</li> </ul> | 백두대간보전팀<br>(042-481-4293) |

## < 중 소 기 업 청 >

| 번호 | 제 목                | 종 친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기업승계 원활화 지원사업 시행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승계 인식제고사업 시행</li> <li>○ 기업승계 컨설팅 지원</li> <li>○ 기업승계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li> <li>○ 기업승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업승계 정보제공</li> </ul>   | 중소기업진흥및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08.3월 시행)                  | 중소기업청<br>정책총괄팀<br>(042-481-4541)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상속공제 1억원</li> <li>○ 기업상속 연부연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상속재산 50% : 15년 분납</li> <li>- 기타 : 5년분납</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상속공제 2억원 또는 기업상속재산의 20%(30억원한도) 중 큰 금액</li> <li>○ 기업상속 연부연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상속재산 50% : 3년거치 12년분납</li> <li>- 기타 : 2년거치 5년분납</li> </ul> </li> <li>○ 중소기업 주식 사전상속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주식을 사전상속(30억원한도) 시 5억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금액은 10%과세후 상속시 정산</li> </ul> </li> </ul> | 상속세 및<br>증여세법('08.1.1)<br><br>조세특례제한법('08.1.<br>1) | 재경부<br>재산세제과<br>(02-2150-9212)      |
| 2  | 기술자료<br>임차제도<br>도입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술자료임차제도 도입 근거 마련</li> </ul>   | 상생협력촉진법<br>제24조의2<br>('07.8.18 시행)                 | 중소기업정책본부<br>기업협력팀<br>(042-481-4547) |
| 3  | 기술자료<br>범위규정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기술 보호대상인 기술자료를 ①산업 재산권, ②기타 제조·생산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경영정보 등으로 규정</li> </ul>   | 상생협력촉진법 동법<br>시행령<br>제1조의2<br>('07.8.18 시행)        | 중소기업정책본부<br>기업협력팀<br>(042-481-4547) |
| 4  | 기술자료 임차기관<br>지정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 저장설비, 전문인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임차기관으로 지정</li> </ul>   | 상생협력촉진법<br>동법 시행령<br>제15조의2<br>('07.8.18 시행)       | 중소기업정책본부<br>기업협력팀<br>(042-481-4547) |
| 5  | 개성공단 진출기업<br>지원사업  | <신 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 13개 법률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개성</li> </ul>  | 개성공업지구지원에<br>관한 법률('07.8.26)                       | 조합지원팀<br>(042-481-4485)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시행               |       | 공단 진출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br>○ “특례보증제도” 및 “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설비 투자시 7% 공제)를 개성공단 진출기업에도 적용  | 시행) 및 동법 시행령('07.9.20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                        |
| 6  |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제도  | <신 규> | ○ 07.1.1일 이후 3년간 창업한 비수도권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br>-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총 투자금액의 10%(기업당 최대 10억원) 지원<br>- 5억원 이상 투자(임대공장은 3억원 이상)<br>- 5인 이상 신규고용               | 창업투자보조금 운용요령 ('08.1.1. 시행)               | 창업제도팀 (042-481-4409)   |
| 7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 <신 규> |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여성기업 지원 청구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여성기업 육성의 허브기능 수행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07. 10. 1 인가)        | 균형성장지원팀 (042-481-4596) |
| 8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 <신 규> | ○ 장애인의 창업지원 및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서비스 청구가 일원화되어 지원사업 참여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br>○ 기업경영과 관련이 많은 법률, 세무, 자금, 특허, 기술, 경영일반 등 5개 분야에 대해 전문 상담과 정보제공 등종합지원이 이루어짐 | 장애인기업활동촉진 법 ('07.12.30 예정)               | 균형성장지원팀 (042-481-4491) |
| 9  | 장애인기업 온라인 홍보관 운영 | <신 규> | ○ 장애인기업 소개와 생산제품을 알릴 수 있는 온라인 홍보가 가능하게 되어 장애인기업의 판로가 확대되고<br>○ 장애인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용이해짐                                     | 장애인기업활동촉진 법 ('08. 1. 3예정)                | 균형성장지원팀 (042-481-4491) |

## < 특 허 청 >

| 번호 | 제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디자인 도면제 출의 간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경우 사시도와 6면도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도면이 앞뒤, 좌우 또는 상하 등의 외관이 대칭 또는 동일한 경우 그 중 한 도면만 생략할 수 있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1월 1일 출원건부터는 6면도중 동일한 도면이 여러 개인 경우 동일한 도면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도면은 모두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화상디자인의 경우 정면도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li> <li>- 불필요한 도면의 생략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였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2008.1.1)</li> </ul>      | 상표디자인심사정책<br>정책팀☎<br>042-481-8602   |
| 2  | 디자인등록 무 심사 대상품목의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에는 유행성이 강하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일부 물품(의복, 침구, 인쇄물, 포장지, 직물지 등)에 대하여 무심사등록을 허용하였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에 인정되었던 무심사등록물품 외에도 모방이 용이하여 조기권리화가 요구되는 일부 품목(제조식품 및 기호품, 화상디자인)을 무심사 대상물품으로 전환하였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2008.1.1)</li> </ul>      | 상표디자인심사정책<br>정책팀☎<br>042-481-8602   |
| 3  | 등록료 인하 및 감면대상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신규&gt;</li> <li>○ 국가유공자,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학생에게만 출원료 등의 면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년차 이내의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 인하<br/>* 인하율 11%, 인하액 약 114억원</li> <li>○ 출원료 등의 면제대상 확대<br/>*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까지 확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허료 등의 정수규칙 ("08.1.1. 시행")</li> </ul>    | 고객서비스본부<br>고객서비스팀<br>(042-481-5255) |
| 4  | 출원인코드에 의 한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통합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원인코드 정보변경에 의한 등록명의인 정보의 일괄변경이 등록단계에는 적용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등록권리별로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절차를 별도 수행함으로 인해 고객불편 야기</li> <li>- 또한, 출원인코드정보와 등록원부상의 정보가 상이하여 동일인에 대해서도 진행되는 절차별로 고객정보가 상이한 문제가 발생</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단계의 출원인코드 부여 근거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원인코드 부여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등록단계에도 등록명의인 모두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도록 함</li> </ul> </li> <li>○ 출원인코드 정보변경절차로 등록원부 표시변경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원인코드 정보변경 신청에 의해 등록원부의 정보도 일괄하여 변경되도록 하여 고객의 불편을 해소함</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허 · 상표등록령시행 규칙("08.1.1. 시행")</li> </ul> | 고객서비스본부<br>고객서비스팀<br>(042-481-5097)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통합관리 신청 절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등록명의인이 출원인코드에 의하여 일괄하여 표시변경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절차도입</li> </ul> </li> </ul>   |  |                                      |
| 5 | 전자신청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정등록신청서: 신청인 · 창작자(대리인)의 서지적 사항, 반도체칩의 명칭, 창작 및 상업적 이용연월일, 반도체칩의 구조 · 기술 · 기능 및 간단한 설명</li> <li>▶ 기타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설계의 도면 또는 사진</li> <li>○ 신청인이 창작자임을 증명하는 자료</li> <li>○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li> <li>○ 외국국적증명서 또는 외국법인증명서</li> <li>○ 반도체칩적회로 샘플 4개</li> <li>○ 창작자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승계시)</li> <li>○ 제3자의 허가 · 인가 · 동의 또는 승낙서류 (승계시)               * 상업적 이용일 이전일 경우에는 반도체집적회로 샘플대신에 배치설계의 상세내용이 입력된 전자적 기록매체물을 제출할 수 있음.             </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정등록신청서: 신청인 · 창작자(대리인)의 서지적 사항, 배치설계의 명칭, 창작 및 상업적 이용연월일</li> <li>▶ 기타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설계파일</li> <li>○ 배치설계설명서 (배치설계의명칭, 기술분류, 간단한 설명)</li> <li>○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통하는 경우)</li> <li>○ 외국국적증명서 또는 외국법인증명서 (외국인인 경우)</li> <li>○ 창작자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승계시)</li> </ul> </li> </ul> | <p>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07.10.28시행)</p> | <p>반도체배치설계진흥팀<br/>(042-481-5971)</p> |
| 6 | 수수료감면  | 감면규정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 (100% 감면)</li> <li>○ 개인 또는 소기업 (70% 감면)</li> <li>○ 중기업 (50% 감면)</li> <li>○ 공공연구기관 (50% 감면)</li> <li>○ 전담조직 (50% 감면)</li> <li>○ 대기업과 중기업 또는 소기업의 공동연구 (50% 감면)</li> </ul>   | <p>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07.10.28시행)</p> | <p>반도체배치설계진흥팀<br/>(042-481-5971)</p> |

## <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식품등의 표시 기준을 합리적 으로 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의 정의에 정제수 제외</li> <li>○날짜표시 : 7포인트 이상</li> <li>○주의문구 표시 기준없음</li> <li>○영양성분 : 임의 표시(1회 분량당 또는 1인 분량당으로 표시)</li> <li>○트랜스지방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기준 없음.</li> <li>○맥주 : 제조일자 표시 의무 (제조번호, 병입연월일 표시 경우 생략가능)</li> <li>○알레르기 유발물질 : 11종</li> <li>○식품첨가물 표시의무 없음</li> <li>○방사선 조사원료 사용시 표시의무 없음.</li> <li>○이행되는 식품첨가물 : 표시 의무없음</li> <li>○경화유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표시 의무없음</li> <li>○L-글루타민산나트륨의 용도표시 의무없음.</li> <li>○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문구 표시 의무없음</li> <li>○소비자 오인.혼동표시 금지의무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의 정의에 정제수 포함</li> <li>○날짜표시 : 10포인트 이상</li> <li>○주의문구 표시 : 8포인트 이상</li> <li>○영양성분 : 1회 제공기준량에 따라 표시 (1회 제공량당 표시)</li> <li>○트랜스지방에 대한 세부표시기준 및 강조표시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g 미만 → “0”</li> <li>- 강조표시(자) : 100g당 0.5g 미만일 때</li> </ul> </li> <li>○맥주 : 유통기한 표시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품질유지기한 표시 경우 생략 가능)</li> </ul> </li> <li>○알레르기 유발물질 : 12종 (새우 추가)</li> <li>○식품첨가물 표시</li> <li>○방사한 조사원료 사용시 표시 의무화</li> <li>○이행(Carry-over)되어 효과를 발휘하는 식품첨가물 표시 의무화</li> <li>○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를 원재료 사용하는 경우 표시 의무화</li> <li>○L-글루타민산나트륨에 대한 용도 (향미증진제) 표시 의무화</li> <li>○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문구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레르기 유발물질, 선도유지제</li> </ul> </li> <li>○소비자 오인.혼동표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래없는 영양성분 표시</li> <li>- “무가당” 및 “무가염” 표시</li> </ul> </li> </ul> | ○식품위생법<br>식품등의<br>표시기준<br>(2007. 12. 1) | 식품안전<br>정책팀<br>380-1726 |
| 2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업장 면적 300m'이상인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구이용) 및 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업장 면적 100m'이상인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구이용) 및 쌀</li> <li>○영업장 면적 100m'이상인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구이)</li> </ul>  | ○식품위생법<br>제10조의3<br>(‘08년 6월 경)         | 식품관리팀<br>380-1633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 용), 쌀 및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                                    | ○ 식품위생법 제10조의3 ('08년 말 경) |      |
| 3 ○ 위생규격 중심으로 식품 공전 개편 | ○컵모양 젤리제품의 제조·가공 기준 및 규격<br>- 컵모양젤리 내경 4.5cm 이상, 젤리 압착강도 12N 이하 | ○컵모양젤리의 원료로서 곤약 및 글루코만난 사용금지<br>○컵모양젤리제품 뚜껑과 접촉하는면 5.5cm 이상이어야 하 고 높이와 바닥면이 최소 3.5cm 이상, 압착강도는 5N 이하가 되도록 제조                         | ○ 식품위생법 제7조<br>- 고시 제2007-68호('07. 10.18)<br>- '08.1.1 시행 | 위해기준팀<br>352-4797         |      |
|                        | ○식육 중 다이옥신 기준<br>- 없음   | ○안전한 식육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다소비 식육에 다이옥신 규격 신설<br>- 쇠고기 : 4.0 pg TEQ/g fat 이하<br>- 돼지고기 : 2.0 pg TEQ/g fat 이하<br>- 닭고기 : 3.0 pg TEQ/g fat 이하 | ○ 식품위생법 제7조<br>- '08.1.1 시행                               |                           |      |
|                        | ○고춧가루 제조·가공기준<br>- 금속성 이물제거 장치 설치 권장                            | ○고춧가루 제조공정에 금속성이물제거 장치(자석) 설치 의무화 하고 이물 규정에 금속성이물 기준 추가<br>- 금속성이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무게 10.0 mg/kg 이상, 크기 2.0 mm 이상인 금속성이물 검출되어서는 안됨    | ○ 식품위생법 제7조<br>- '07.12.1 시행                              |                           |      |
|                        |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규격<br>- 올리브유에 2.0 µg/kg 이하 규정                       | ○열처리과정을 거치는 모든 식용유지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될 개연성이 있어 벤조피렌 규격을 확대<br>- 식용유지 : 2.0 µg/kg 이하   | ○ 식품위생법 제7조<br>- '07.10.18 시행                             |                           |      |
|                        | ○6개월 미만의 영·유아 섭취식품에 대한 기준·규격<br>- 영유아용조제식 등 특수용도식품에 한하여 규격 설정   | ○특수용도식품 이외의 6개월 미만의 영·유아섭취식품에 대하여 미생물, 타르색소 기준을 강화<br>-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대장균군, 타르색소 불검출   | ○ 식품위생법 제7조<br>- '07.10.18 시행                             |                           |      |
|                        | ○수족관물의 미생물 권장규격<br>- 세균수  | ○활어횟집 등의 비위생적인 수조관리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장균군 규격 추가 신설<br>- 대장균군 : 1,000 이하/mL  | ○ 식품위생법 제7조<br>- '07.10.18 시행                             |                           |      |
|                        | ○천일염의 식염 불인정  | ○식품위생법에서 관리  | ○ 식품위생법 제7조   |                           |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염관리법에서 관리<br>-천일염은 원료의 전처리시에만 사용하도록 규정              | ○천일염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 “천일염” 추가 및 기준·규격 마련<br>- 불용분, 황산이온, 사분, 중금속, 폐로시안화이온 등 규격 설정<br>- 식용 천일염을 수입할 경우에는 생산국가에서 천일염이 식염으로 분류·인증된 것만 가능 | 조<br>- '08.3.<br>시행예정<br>-개정된 염관리법<br>시행일과 연계                         |                       |
| 4  | ○건강기능식품공전전면 개정                  | ○제품 중심의 분류체계<br>- 다양한 제품 생산 저해<br>○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기능성 | ○분류체계를 기능성 원료 중심으로 개편<br>- 다양한 유형 제품 생산 가능<br><br>○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재평가<br>-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기반 마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br>(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br>('08. 6. 시행예정)                 | 건강기능식품규격팀<br>380-1317 |
| 5  |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사용금지              |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 ○발기부전치료제와 화학구조가 유사한 합성물질 등재<br>- 실데나필(Sildenafil), 타다라필(Tadalafil), 바데나필(Vardenafil), 유데나필(Udenafil), 미로데나필(Mirodenafil)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br>(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br>('08. 1월 입안예고 예정) | 건강기능식품규격팀<br>380-1317 |
| 6  | ○‘다대기’ 안전 관리를 위한 적색계열색소 사용기준 강화 | ○적색계열 천연색소(16품목)가 모든 향신료가공품에 사용가능 하였음                | ○적색계열 천연색소(16품목)를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제품에 한함)에만 사용가능도록 기준강화  | ○식품위생법(제7조 기준과 규격)<br>-개정고시('07. 11.9)<br><br>-시행예정('08. 5.10)        | 식품첨가물팀<br>380-16879   |

| 번호 | 제 목                   | 총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7  | ○ 유전자 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 표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콩, 옥수수, 콩나물을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li> </ul> </li> <br/> <li>○ 표시의무자에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이 포함되지 않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이를 쪄되어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포함)을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li> </ul> </li> <br/> <li>○ 표시의무자에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이 포함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07.12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표시대상 확대는 '08.4월 시행</li> </ul> </li> </ul> | 신소재식품팀<br>380-1332    |
| 8  | ○ 의약품 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분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품목허가를 같이 받아야 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도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하고 품목허가를 받아 판매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한 품목은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 가능</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사법 제31조('08.4.18 시행)</li> </ul>  | 의약품안전정책팀<br>3156-8006 |
| 9  | ○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제도 도입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 시판후 안전관리책임자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는 신약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의약품 부작용보고 등 시판후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 의약품 안전관리업무를 하도록 함.</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사법 개정 ('07.1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4.17. 시행</li> </ul> </li> </ul>                     | 의약품관리팀<br>3156-8065   |
| 10 | ○ 의약품 낱알식별 표시 적용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낱알상태에서는 식별 불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적용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별표시 대상 의약품을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일반의약품”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함.</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낱알식별표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07.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1.1시행</li> </ul> </li> </ul>            | 의약품관리팀<br>3156-8065   |